

2026

경남특수교육 운영계획

2026. 1.



Contents

2026년 경남특수교육 운영계획(안)

I	경남특수교육의 기저	1. 경남교육 정책 방향 2. 경남특수교육 방향 3. 2026년 달라지는 경남특수교육 정책사업	
II	중점과제 추진 계획	II-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3. 특수학교(급) 다양화 4. 특수교육 교원 역량 강화 II-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1.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2.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3.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4. 장애학생 인권 강화 II-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1.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2.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4. 순회교육 지원 강화 5. 문화예술·체육·체험 활동 지원 6.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7. 돌봄·방과후교육 지원체계 강화 8.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9.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10.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3 7 9 1 1 4 6 9 4 4 6 9 24 4 8 5 9 6 8
III	주요업무 추진 계획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업무 처리 2.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 3.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4.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및 순회학급 운영 5.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7 6 0 4 8
IV	부록	1. 일반 현황 2. 연간 주요 일정	12 13

I

경남특수교육의 기저

1. 경남교육 정책 방향
2. 경남특수교육 방향
3. 2026년 달라지는 경남특수교육 정책사업

1 경남교육 정책 방향

교육 비전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학교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존중하여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한 배움터가 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으로 교사와 학생이 배움을 통해 함께 역량을 키워가는 꿈터가 되며, 소통과 공감으로 교육공동체가 협력하여 학생의 내일을 열어가는 시공간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육 지표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

경남교육은 개개인의 다양한 성장을 돕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에 더욱 내실을 기하면서 공간혁신을 통한 참여와 협력의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교육생태계 확장으로 미래교육을 향한 더 큰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2 경남특수교육 방향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목표

- ☑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 ☑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중점추진과제



2026 경남특수교육 중점추진과제

중점추진과제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❶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❷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❸ 특수학교(급) 다양화
- ❹ 특수교육 교원 역량 강화



중점추진과제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❶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❷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❸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❹ 장애학생 인권 강화



중점추진과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❶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❷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❸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❹ 순회교육 지원 강화
- ❺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체험 활동 지원
- ❻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❼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❽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 ❾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 ❿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3

2026년 달라지는 경남특수교육 정책사업

사업명	주요 내용
통합교육 지원 강화	• 유치원 단계부터 완전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통합유치원’ 시범 운영 – 운영기관: 신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 통합교육 ‘모델학교’ 운영 – [연구학교] 진주누리유치원, 신어초등학교 – [더함께하기(The+)교실] 유·초·중학교 5교 • 통합교육 협력교수 도움자료 개발 – 일반·특수교사 협력 교수 도움 개발 및 보급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 강화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지원을 위한 도움자료 개발 –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을 위한 도움자료 개발 및 보급 – 학교(급)별, 교과 영역, 생활지원 영역 등 다양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사례 제시
교육과정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학업설계 지원을 위한 도움자료 개발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진로정보 도움자료 개발 및 보급 – 진로 유형별, 사례별 진로 정보 제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개소 – 시기: 2026. 4.(예정) – 장소: 내서중학교 별관동(1~2층) – 내용: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진학 상담, 학교복귀프로그램 지원 등
특수교육대상유아 이음교육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유아 이음교육 시범 운영 – 유치원-초등(특수)학교, 어린이집-초등(특수)학교 연계를 통한 이음교육 시범 운영 – 이음교육 시범 기관 대상 현장 컨설팅 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 대상 입학 전 상담 및 설명회 개최
특수학교 초등 돌봄·교육(늘봄학교) 지원 확대	• 특수학교 초등 돌봄·교육(늘봄학교) 지원 확대 – (초1~2) 매일 2시간 이내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초3) 희망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지원
수업지원강사 운영	• 과밀 학급 및 현장 맞춤형 수업지원강사 운영 – 과밀학급 및 학교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운영 – 주당 14시간 이내, 주2~5일 시간제 근무(25교 지원)
특수교육 교원연수 (특수교육원)	• 특수교육교원 연수 운영 확대 – 학교로 찾아가는 AAC 활용 연수 운영 –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운영 –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자율 기획형 수업능력 향상 연수 운영
특수교육 수련활동 (특수교육원)	• 수련 활동 영역 추가 – 특수교육대상학생 1일 체험형 및 1박 2일 숙박형 수련 활동 운영 –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하는 1일형 어울림 수련활동 추가 운영

II

중점과제 추진 계획

II-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3. 특수학교(급) 다양화
4. 특수교육 교원 역량 강화

II-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1.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2.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3.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4. 장애학생 인권 강화

II-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1.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2.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4. 순회교육 지원 강화
5. 문화예술·체육·체험 활동 지원
6.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7. 돌봄·방과후교육 지원체계 강화
8.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9.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10.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II-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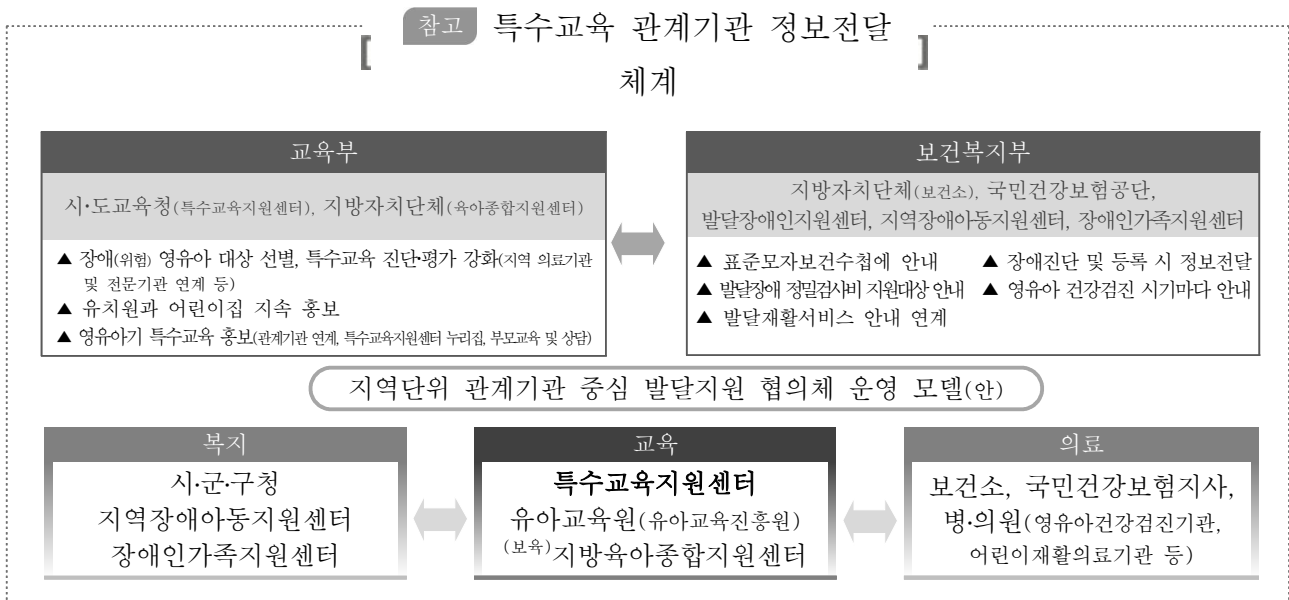
추진목적

- ▶ 장애영유아의 조기발견·맞춤형 지원에 대한 연속적·종합적 접근을 통해 영유아 단계부터 체계적인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1)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지원체계 강화

-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를 통한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확립
 - 장애(위험)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중심 발달지원 협의체* 운영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 *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지역단위의 네트워크 구축



-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특수교육 진단·평가 체계 강화
 - 장애영유아 조기발견을 위해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상 홍보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담당자 전문가 연수 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유아 진단.평가 도구 및 검사 기록지 지원 확대
- 특수교육 정보전달 및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제도 홍보 강화
 - 장애영유아 조기교육을 위한 보호자 수시 상담 및 특수교육 지원 안내
 - 취학 의무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적령에 취학할 수 있도록 독려
 -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원아모집 기간(11월, 유보통합포털(유치원입학) 시스템) 이전에 유치원 입급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별도 계획 수립.운영(9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명단은 별도 송부, 보건복지부 제공)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영아는 수업일수 150일 미만이라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특수교육대상영아는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지원 가능(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호,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0. 8. 7. 시행)
 - 의료기관, 복지시설, 가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아 대상 순회교육 제공
 - 영아기 발달특성을 고려한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수립.실행으로 특수교육대상영아 가족지원 강화
 - 영아지원실 특수교육대상영아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교재.교구 확충

영아지원실 운영

- 목적: 장애영아의 발달 촉진 및 학습권 보장
- 운영기관: 창원, 김해, 거제 특수교육지원센터(3개)
- 대상: 3세 미만 특수교육대상 영아
- 방법: 특수교육과 치료지원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특수교육, 치료지원, 부모상담)

-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지원 강화
 - 단설유치원 개원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 시 유치원 특수학급 의무 설치 추진
 - 유치원 특수학급 입급 수요에 따른 수용계획 수립 및 특수학급 신설
 - '유보통합포털(유치원입학)' 원아모집 이전 특수학급 신.증설 준비 업무 완료
 - 특수학급 신·증설 확정 시 환경 개선 및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 신설 특수학급 환경개선 및 학급 운영에 대한 컨설팅 강화
- 교육·보육기관 간 교육격차 단계적 해소를 위해 특수교육 지원 강화
 - 2026년 전국 장애영유아교육 워크숍 실시(6월)
 - 장애영유아 담당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연수 확대
 -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대상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운영

【 참고 장애영유아 지원강화 시범사업 】

진단·평가	·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을 위한 진단·평가 실시
치료지원	·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대상 맞춤형 치료지원 제공 시범사업 운영
통학비 지원	·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및 보호자 중 원거리 통학자에게 통학비 지원 시범사업 운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이음교육 지원 강화

-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여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치원-초등학교 이음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초등학교를 적령에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반·특수교사-학부모 간 특수교육대상유아 관련 정보공유, 초등학교 방문 등 초등학교 입학 전 및 입학 초기 프로그램 운영
 - 유치원-초등(특수)학교, 어린이집-초등(특수)학교 연계를 통한 이음교육 시범 운영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운영

- 운영목적: 특수교육대상자 초등 입학적응 능력 향상 및 학부모 심리적 불안 최소화
- 운영시기: 초등학교 입학 전, 입학 초기
- 운영대상: 초등학교 입학예정 특수교육대상자 및 입학생, 학부모
- 운영방법: 체험활동, 간담회, 가정통신문, 전화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운영내용: 등교 지도, 입학식, 학교탐방, 학급배정, 자리배치, 수업체험, 안전교육, 귀가 지도 등 입학 초기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참고자료
 - 초등학교 입학초기 적응 활동 지원자료(2022., 국립특수교육원)
 - 초등학교 입학 전 학부모를 위한 특수교육 가이드북(2023., 충북특수교육원)
 - 2025 5세 이음교육 표준안(2025., 교육부)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취학유예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 취학 의무 유예 후에는 재취학 시까지 특수교육 지원 보류
- ✎ 장애를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 유예를 반복하지 않도록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강화 및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등 홍보

■ 유보통합포털(유치원입학) 시스템 개통 이전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유치원 정원에 포함시켜 최우선 배치하고, 이후에 추가 선정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도 교육지원청에서 정원과 무관하게 우선 배치 가능

- ✎ 국, 공립 유치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정원에 관계없이 100% 우선 배치(국가인권위원회,2017)

추진 업무	대상자 파악 및 입학신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원아모집기간 [유보통합포털 시스템]
시기	8월~9월	9월 중	11월 중
준비 사항	• 원아모집 안내 • 대상자 파악 및 대상자 신청 • 입학생 및 졸업자 현황 파악 • 신설학급·학교 모색 등	• 학교별, 연령별 대상자 배치 • 학급신설 시 가배치 후 학급 개설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배치 • 부모 임의로 직접 등록 주의	• 특수교육대상자는 유보 • 통합포털 시스템에 정원 내 등록

[유치원 관련 2학기 일정]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및 유치원 특수학급 소속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학적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등록 및 관리

- 유치원 나이스 사용 관련 「유아 나이스 업무안내서」 참고
- 나이스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은 이전의 전자기록생산 시스템을 사용하여 처리

(「[부록]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3쪽 참조)

학교 및 교육지원청 협조사항

 학교	☑ 영유아의 특수교육적 필요를 고려한 선정·배치 신청 ☑ 특수교육대상유아 이음교육 운영 실적 조사 협조('26.1.) ☑ 상급학교 진학 시 장애인편의시설,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배치 안내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특수교육 관련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책자 제작 및 적극 홍보 ☑ 상급학교 진학 설명회 및 희망조사 실시(6~7월) ☑ 유치원 입급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별도의 계획 수립 ☑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철저(관련서비스정보, 진학정보 제공) ☑ 입소입학신청사이트 '유보통합포털' 개통 이전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 우선 배치 및 추가 선정 시 정원에 관계없이 추가 배치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특수교육 만족도 조사 협조('26.11.)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추진목적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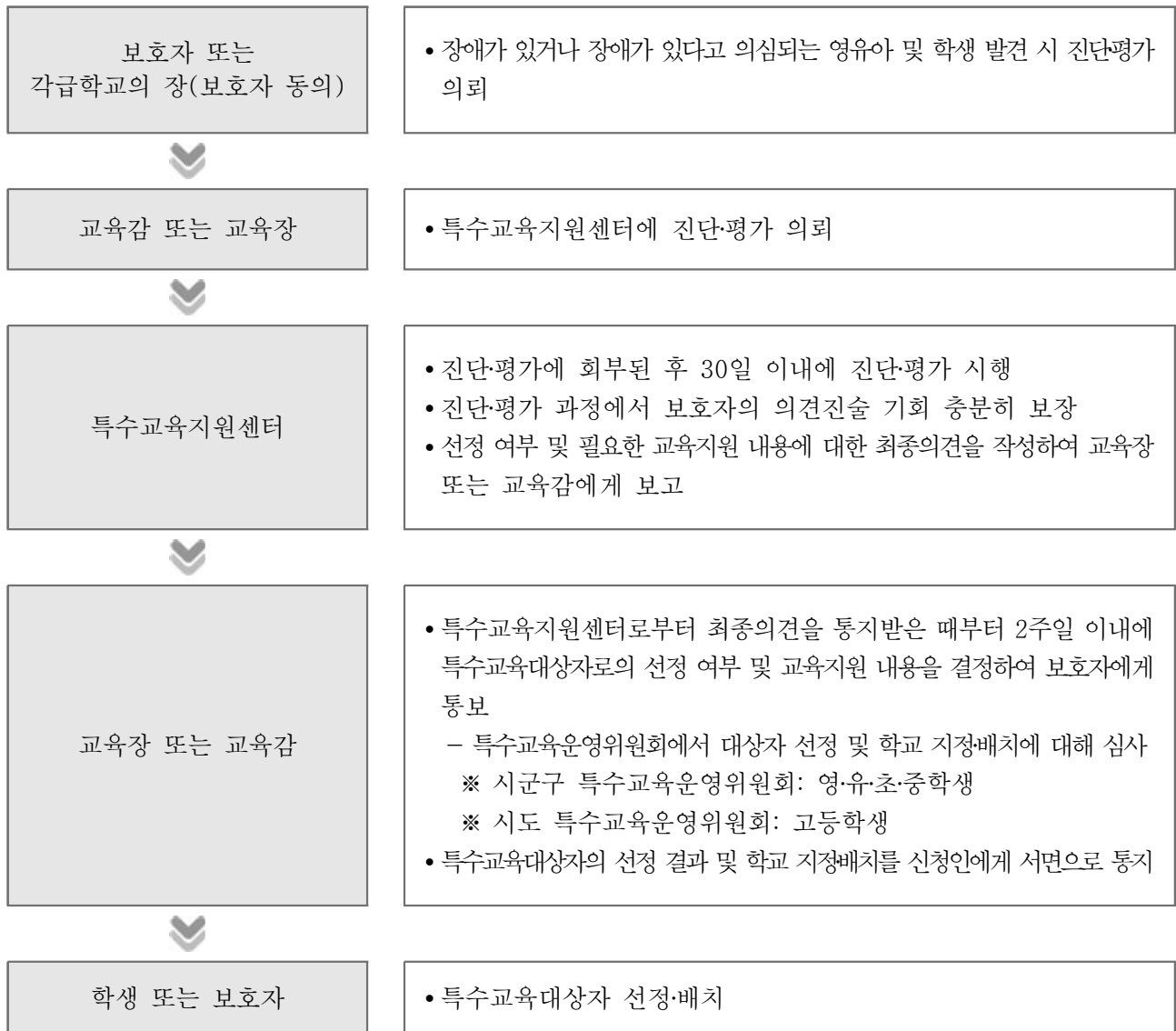
- 장애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를 위한 진단·평가 의뢰 전후 상담 제공
 - 선정·배치 절차, 관내 특수교육 기관 정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가족 지원 등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 진단·평가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진단·평가도구 활용 및 심리검사 결과 분석 등 연수 운영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보호자 상담 및 면담·관찰 등을 통해 진단·평가 대상자에 대한 교육적 진단 강화

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 취학의무 유예·면제 및 재취학, 유예기간 연장, 특수교육대상학생 재선정 등 심의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보호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 법령에 규정한 재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실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 연계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교육·보육·직업 관련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병원, 보건소,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행정복지센터, 어린이집, 복지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 교육지원청 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 업무 지원센터(Wee센터, 교육복지우선사업 업무 등)와 협업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강화

관계기관 협력체제 구축 대상

사업 내용	관계기관	협력 내용
순회교육	주민센터	대상자 파악
	장애인복지시설, 병원, 학교	홍보, 대상자 파악
장애영아 교육	건강검진센터	영아 무상 검진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대상 영아 파악
치료지원	시·군청 장애인복지팀	관련 사업 협력
	병원, 복지관, 치료지원 제공기관	프로그램 지원
통합교육	지역시설 (공공기관, 문화센터, 극장, 마트, 백화점, 은행 등)	현장학습 등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센터	맞춤형 보조공학 상담
	대학 보조공학 관련 학과	보조공학 상담
가족상담 및 가족지원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 상담 등
	wee센터	상담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보조공학센터	보조공학지원
	특수학교 전공과	직업교육지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진로, 직업교육지원
	복지관 직업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자활센터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고용공단	지원고용프로그램, 직업능력 개발프로그램
장애진단 및 치료전문 의료기관 의뢰(선별검사)	건강검진센터	영아무상진단
	병원	장애진단
조기발견, 정보관리	장애인복지시설, 병원, 학교	대상자파악
	시·군청 장애인복지팀	관련 사업 협력
	주민센터	대상자 파악
기타 (연수, 장애인식개선, 홍보 등)	특수학교,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특수교육 관련 대학	연수, 홍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부모회,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홍보, 연수, 장애인식개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리구제, 공공후견
	신문사, 방송국	홍보, 장애인식개선

4)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 특수교육 전문인력 배치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순회교사 배치 조정: 155명(25년)→150명(26년)
 -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배치 조정 (특수교육지원센터 5명→학교 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등 담당인력의 맞춤형 연수 강화
 - 진단·평가, 보조공학, 의사소통, 부모상담, 시·청각장애교육 등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을 포함한 특수교육 지원계획 수립·운영 내실화
 -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지원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치료지원) 활동비

- 순회교육(치료지원) 활동비: 1일 20,000원(도서지역은 탄력운영)
- 순회교육(치료지원) 활동비는 여비지급 규정과 관계없이 지급(1일 20,000원)
- 순회교육(치료지원) 활동 외 진단평가, 상담 등의 출장 시 여비지급 규정에 따름
- 순회교육(치료지원)과 다른 출장이 겹칠 때 중복지급 불가

5)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전문적 교육지원을 위한 권역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거점지원센터 운영 현황

- 장애영아 거점센터: 창원, 김해, 거제(3개 센터)
- 전환교육지원실: 창원, 진주, 사천, 김해, 거제, 양산, 함안, 거창(8개 센터)
- 시·청각장애 거점센터: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창원, 김해, 함안(4개 센터)



학교 및 교육지원청 협조사항



교육지원청

-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26. 3월)
- ☒ 일반학교 교직원 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 홍보, 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및 협조 체계 구축
- ☒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현황 조사('26. 4월)
-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장애인학대,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및 결과 보고('26. 하반기)

3 특수학교(급) 다양화

추진목적

- 특수학교(급)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특수교육기관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선택권 확대
- 특수학교(급) 교육환경 개선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1조(통합교육) ▲특수학교시설설비 기준령 제2조(교지), 제4조(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1) 특수학교(급) 확충으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거리 통학 부담 완화 및 학습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하는 정원초과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급) 신·증설 추진
 - 특수학급(31학급 증가): 25년(1,109학급)→26년(1,140학급)
 - 학기 단위 학급 신증설 추진(3월, 9월)
 - 특수학교(급) 급당 인원에 맞게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배치 노력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2017) 국·공립 유치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정원에 관계없이 100% 우선 배치

- 특수학급 교실 기준 면적 확보를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
- 거대과밀 특수학교 해소 및 다양화·특성화·전문화 특수학교 신설 추진
 - 지역 균형 및 거대과밀 해소를 위한 권역별 특수학교 설립 추진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및 과정별 특수학교 설립 추진
 - 직업교육 및 예술 분야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 추진
 - 연령과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유·초·중·고 과정 분리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 추진
- 대학 부속 또는 병원 내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급) 설립 추진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내 특수학급 설치 추진(2027학년도 설립 예정)
-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및 통합유치원 설립 추진
 -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을 위한 공립 유치원(단설·병설) 특수학급 설치 확대
 - 통합교육 우수 모델 개발을 위한 통합유치원 개원(신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1개원)

2) 신·증설 특수학교(급) 환경개선·교재교구비 지원

- 신·증설 특수학급 환경개선·교재교구비 지원
 - 금액: 학급당 20,000천원 내외(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용도: 장애학생의 학습 및 편의를 위한 학급 내 시설 보완, 교재 교구 구입
(학급증설에 따른 공통적 지원 교구 제외, 예: 컴퓨터, TV 등)

 「특수학급 환경개선 길라잡이」(경남교육 2017-303) 참고



학교 및 교육지원청 협조사항



- ☒ 신·증설 특수학급 환경개선에 대한 컨설팅 지원
- ☒ 특수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과 학급편성 담당 부서 간 협력하여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한 학교 내 시설(공간) 확인 및 업무 추진
- ☒ 공립 유치원(단설·병설) 특수학급 설치 확대 노력

4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추진목적

- 특수교육교원 연수 확대를 통한 전문성 신장으로 특수교육 성과 제고
-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을 통한 수업 개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항 제5호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특수교육 교원의 교과별 수업 및 장애특성별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활용을 위한 연수 확대 운영

✎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과지도, 교육과정 운영, 진로직업교육, 예체능 교과교육, 긍정적 행동 지원 등
 - 장애학생 행동 지원을 위한 행동중재 전문교사 연수(30명, 120시간)
 - 학교로 찾아가는 AAC 활용 연수 운영(특수학교)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확대
 - 특수교육대상유아 담당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유아 담당 교사,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어린이집) 연수 실시
- 특수교육교원 국외 연수 실시
 - 특수교육교원의 배움 중심 수업, 행동중재 지원 전문성 및 통합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뉴질랜드 탐방 연수(17명, 8월 예정)
-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단위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조직.운영하여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연구하는 학교문화 조성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 지원대상: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특수교육교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은 소속학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예산에 포함)
- 지원금액: 교원 1인당 1만원
- 수업혁신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및 도서 구입, 강사료(원고료), 협의회 등

- 자율적 특수교육 수업연구회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및 교사 간 정보와 자료 공유를 활성화하고, 연구 성과 확산 등에 기여

2)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 운영 및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
-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23.9.1.)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24.4.) ▲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24.10.)
 교육부 누리집 > 정책 > 교원 > 2022.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학교 및 교육지원청 협조사항



- ☒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참여
- ☒ 소속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 지원



Ⅱ-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1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추진목적

-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통합교육 내실화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통합교육 운영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유아 통합교육 여건 개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제26조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 【국정과제 101-4】 (통합·특수교육 강화로 모두의 학습권 보장)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특수교육 관련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도단위 및 교육지원청 단위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19개)

예시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역할

- ◆ (위원 구성) 지역 내 인력풀을 활용하여 특수교육 전문가*로 위원 구성
 - * 대학교수, 특수교사, 통합학급담당교원,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보호자, 학교관리자, 행동지원전문가, 교육전문직 등
 - * 현장 특수교사 1명 이상 반드시 포함
- ◆ (역할) 통합교육 관련 컨설팅상담, 특수교육 교원 연수, 개별화교육, 행동중재지원 컨설팅, 통합교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 통합교육 관련 연구 프로젝트 등
 -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진단평가 기능,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 학습정보 지원 기능과 연계 운영 가능
 - ※ 솔루션팀 구성 및 지원 내용(예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팀구성	영역	지원 내용	전문가그룹
개별화교육 지원팀	교육과정 및 학급경영 지원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별화 교육계획,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상담, 정보지원 등	교수, 교장(감), 특수교사 등
진단평가 지원팀	진단·중재 연계 지원	진단평가, 진로 연계 프로그램 운영,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교수, 교장(감), 특수교사, 진로상담교사 등
행동중재 지원팀	긍정적 행동지원	행동 기능평가 및 문제행동 대처 지원, 정보 제공 및 상담 등	행동지원 전문가, 특수교사, 치료사 등
가족지원팀	가족 지원	가족 환경 영향 평가, 가족 상담, 형제자매 프로그램 지원 등	의사,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전문가 등
법률지원팀	각종 법률에 관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의 각종 가피해 사건에 대한 연계 지원 등	변호사, 경찰,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도단위 '유아통합교육자문단' 구성.운영(1개)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완전통합)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 순회교사를 배치하여 교육과정 조정, 상담 등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컨설팅 강화
 - 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학급 학생 수 1~3명 감축 조정(교육부고시 제2023-34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2023.9.1. 시행)
- 일반학교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

통합학급 적응기간 운영

■ 운영 목적

- 학년 초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적응 및 교우관계 형성 기회 보장
- 통합학급에서 적응평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절한 통합교육 목표 설정

■ 운영대상: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 운영기간: 학기 초 2주(권장)

■ 운영방법: 학교별 사전협의를 통해 통합학급 적응 기간 적용 유무 결정

■ 참고자료: 통합교육 실행가이드북 I (2017, 교육부)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교육 여건 개선

-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인력 지원 확대
-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 배치 및 지원인력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유치원 일반학급의 정원 내 편성(2017, 국가인권위원회)
-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 연구학교 지원

2)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 장애이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생과 교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학교장애인식지수’ 및 연계프로그램 활용

- ‘학교장애인식지수’ 지표별 결과에 따른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활용 및 학교 과정별 쇼츠 콘텐츠 활용 권장

【 '학교장애인식지수' 기본 구성 내용 】

구분	내용		
대상	• 일반학교 초등학생(3~6학년)용, 중·고등학생용, 교사용 각 5종		
구성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교사용
	• (지표) 관점, 지식, 정서, 실천 • (문항) 6가지 상황 34문항	• (지표) 관점, 지식, 정서, 실천 • (문항) 7가지 상황 41문항	• (지표) 관점, 지식, 실천 • (문항) 6가지 상황 35문항
활용	1 장애인식수준 진단	2 지표별 수준 확인	3 결과 활용
	온라인 검사 시스템* 활용 대상자별 인식지수 진단	• (상) ACES • (중) MIDD • (하) RASE	지표별 인식 수준 결과에 따라 연계프로그램 적용 ※ 예) '실천' 지수 낮을 경우, '장애·비장애 상호작용 프로그램 적용' 등

※ 연계 프로그램: 학교장애인식지수 지표별·학교과정별 40개 쇼츠 콘텐츠



학교 및 교육지원청 협조사항



학교

- ☒ 통합교육지원단 컨설팅 신청
- ☒ 통합학급 적응기간 운영
- ☒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교육지원청

- ☒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및 운영계획 제출
- ☒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운영계획서 제출
- ☒ 통합교육 지원 현황 조사

2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추진목적

- 교원의 통합교육 연수 확대를 통해 통합교육에 대한 현장 역량 강화
-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의 협력 체계 강화로 통합교육 활성화 도모

※ ▲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21조(통합교육)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국정과제 101-4」 (통합특수교육 강화로 모두의 학습권 보장)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일반학교 교원(관리자, 통합학급 교사 등)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집합(원격)연수 참석 적극 권장
 - (교(원)장·교(원)감 연수) 협력적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통합)교육 관련 연수 3시간 이상 이수*
 - * 2026 시도교육청 평가지표(3-3) 포함. 단, 법정 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등)은 연수 실적에 미포함
 - ※ 2026년부터 교(원)감 연수 실적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산정
 -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수 권장(최근 10년 이내 누적) 특히, 순회 교육대상자와 건강장애학생 관련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연수 강화

✎ 통합학급 담당교사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이수자 우선 배치 권장
 - (특수학급 교사) 학교과정별·장애유형별 협력교수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추진

2)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 강화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협력(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 교수 등)을 강화하여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통합교육 모델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협력체제 강화
 - 2026. 통합유치원 시범 운영

○ (운영목적) 경남형 통합유치원 모델 구축을 위한 통합교육 운영 지원 강화
 ○ (운영기관) 신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운영방법) 모든 일과를 완전 통합하여 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사가 공동 담임 및 협력교수 형태 운영

■ 2026. 통합교육 연구학교 운영(2년차)

- (진주누리유치원)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다름유치원’
- (신어초등학교) 다름다운 협력 교수 한팀(Team)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 결정역량 기르기

■ 2026. 통합교육 중점학교(더함께하기교실) 운영

- (운영학교) 유치원(2원), 초등학교(2교), 중학교(1교) 총 5교 운영
- (운영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통합학급에서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통합교육 추진
- (운영방법)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학교 내 2~3개 학급에서 협력교수 운영



더(함께)하기교실이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공적 통합교육을 위해 2~3개 내외 통합학급에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협력하여, 교육과정 통합교육을 운영하는 경상남도형 통합교육 중점학교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 통합교육 모델학교 운영 및 일반화를 위한 성과공유회 운영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 가이드북(교육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7)」, 통합교육 연구학교 「정다운학교 운영 사례 콘텐츠(에듀넷 티-클리어, 에듀에이블)」 참고

● 유치원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협력 강화 및 관련 자료 활용

【 참고 유치원 통합교육 관련 자료 】

- 통합유치원 운영 모델(2018, 국립특수교육원)
- 유치원 통합교육 장학자료 ‘함께 실천하는 유치원 통합교육’ (2020, 경남특수교육원)
- 유치원 통합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2021,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유아용)(2021,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유아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2022, 국립특수교육원)
- 유치원 통합교육 길라잡이(2025, 경상남도교육청)

● 2026년 유치원 통합교육 안내자료 개발 및 보급(1종)



학교 및 교육지원청 협조사항



학교

- ☒ 일반학교 교(원)장, 교(원)감 연 3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참여
- ☒ 통합학급 담당교사 배치 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연수 이수자 등 우선 배치
- ☒ 특수교육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조직 및 공모 신청

3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추진목적

- ▶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조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장애인식개선 교육)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조례 제6조(교육의 실시)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모든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직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유치원 및 각급학교 연간교육계획에 장애이해교육을 반영하여 수립·추진

✓ 장애이해교육: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프로그램 참여, 장애체험활동, 교내외 전문강사 강의, 장애이해 문화·예술행사 참여 등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장애인의 날' 특별 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 지속 실시
 - * 유(유아용 3D 애니메이션), 초(대한민국 1교시), 중·고(장애이해교육 드라마)
 - ※ 초·중·고교 특별기획방송 활용 수업 시 2차시 분량의 시간 확보 권장
- 인권지원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교육 실시
 -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인력(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장애인 예술가 등) 활용
 - (장애체험활동 및 관련 행사 참여 등) 체험중심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
-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장애공감체험 프로그램」 운영
 - (대상) 초·중학교 중 희망학교
 - (기간) 2026. 3. ~ 12.
 - (교육 내용) 장애공감 체험
 - (운영 방법) 2025년 11월에 2026학년도 체험 학교 선정 완료

●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적 제출

-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시현황 조사(11월 예정): 연 2회 실시 결과 제출
-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www.able-edu.or.kr) 입력

3)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자 확대

●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소속 산하기관 포함)직원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의무 실시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4항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 기관별 직장교육 연간계획에 장애 인식개선교육 일정 포함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시 대면 교육 1회 이상 포함 실시
- 전문강사(장애인 당사자 등), 교육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교육 실시
- 장애인식개선 분야별 연수이수 내용(표내용 참조)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 실시

- 학교(기관) 자체 집합교육 및 개인별 온라인교육(연수 등) 이수 필요
- 매년 교직원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예정

교육명 내용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대상	교직원 전체	국공립 각급학교(유치원) 및 기관 기간제 교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교직원 전체
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대면교육 포함)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시간 이상
결과제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입력 (www.able-edu.or.kr)	결과 제출 (2026년 9월 이후 별도 안내) 고용노동부 안내 공문 관련 자료 자체 보관(3년) (전자문서로 작성,보존 가능)	26년 12월(예정)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교 공개의 날, 학부모 연수 등 학교 자체 행사 시 전문 강사 초청, 우수 콘텐츠, 문화예술공연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을 활용한 학부모 교육 적극 실시

【 활용 안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자료 】

-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공감 자료 활용(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 > 에듀에이블 > 장애공감)
-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튜브 장애인식개선 관련 콘텐츠 활용
- 장애인 공연단 문화공연 행사 콘텐츠 등(예: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뽀꼬 아 뽀꼬’ 음악회 등)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humanrights.go.kr>) 교재·교육자료실 내 인권 자료 활용 등

4)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 인터넷, 방송 및 인쇄물 등을 활용한 장애공감문화 캠페인 지속 실시
- 장애공감문화 확산 메타버스 활용
 - (대상) 도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 (내용) 장애공감문화 확산 메타버스 “평평한 세계” 이용
 - (주소) <https://zep.us/play/DE7EVG>
-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관련 행사 개최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학교 및 교육지원청 협조사항

 학교	☑ 학생대상 장애이해(인권)교육 계획 수립 및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교직원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대면교육 1회 포함)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연 1시간 이상) 의무 실시 ☑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실시 ☑ 매년 11월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장애공감체험 신청
 교육지원청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직원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대면교육 1회 포함)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장애인식 개선 콘텐츠 활용 교육 홍보

4 장애학생 인권 강화

추진목적

- 장애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성)교육 내실화

※ ▲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3항,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3항,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주요 내용 (2018) 】

- ◆ (목표) 장애학생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구축 및 사회문화 조성
- ◆ (추진과제) 장애학생 인권침해 감지 및 대응, 예방체계 구축(5대 분야 16개 중점과제)
 - ① (인권침해 대응체계 강화) 인권침해 실태점검 내실화, 행동지원체계 구축 등
 - ②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지원 강화, 인권지원단 역할 강화 등
 - ③ (인권보호 여건 개선) 장애학생 담당 인력 확충, 취약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 등
 - ④ (인권보호 역량 강화) 학교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및 교육 강화 등
 - ⑤ (사회적 예방체계 구축)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강화 등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강화

-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https://www.nise.go.kr/onmap>) 운영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사용자 위치 기반(GPS) 기관 정보(법률, 폭력피해 지원, 상담, 교육, 의료 등) 제공 및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신고·제보 시스템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장애학생 인권침해 관련 사안 접수 및 조치
- 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신고함을 설치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등이 직접 인권침해 사안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 점검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 실태조사 매년 실시

- 관계부처(청) 주관, 장애학생 인권 관련 실태 점검 협조

2026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조사

- 대상: 실태조사 참여에 동의한 특수교육대상자(초4~전공과), 보호자, 교원
- 시기: 2026. 5. ~ 10. (예정)
- 내용: 2025년 2학기부터 2026년 1학기 동안 학교생활 내 인권침해 경험 및 인식 등
- 방법: 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대면조사 실시
- 결과 활용: 조사 결과를 반영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지원
- 주관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역할 강화

- 분야별 전문가 집단으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역할 강화
 - 도 단위 및 시·군 교육지원청 단위 ‘인권지원단’ 구성·운영(21개)
 - 인권지원단 구성 및 역할

구성 (8명 이상)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사회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필수 인원> 특수교육지원센터장(국/과장), 장학사(연구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학교관리자, 경찰서 성폭력담당자(여성청소년 수사팀장 또는 계장), 학교폭력·성교육전문가, 상담전문가 장애학생 보호자
주요 역할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지원(정기/특별) 더봄학생 지원 및 관리,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 및 연수 지원 인권지원단 협의회 운영, 우수사례 발굴·홍보, 인권침해 실태조사 지원 등

- 현장 지원 강화로 인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지원체계 마련
 - (정기현장지원)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 방문 지원, 특수학교는 연 2회 이상 방문 지원(특수학교는 경찰 위원 필수 동반)
 - (특별지원)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지원
 - 매월 1회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활동(정기현장지원 및 특별지원) 결과 보고

✎ 인권지원단 전월 현장지원 결과 시스템 입력제출(매월 5일까지)→특수교육원 결과 승인 처리(매월 15일까지)→국립특수교육원 시도별 취합·점검(매월 30일까지)→교육부 보고(매월)

- 각급학교 장애학생 대상 학교(성)폭력 발생 시, 사안처리는 학교폭력담당에서 처리하고,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2차 피해예방은 인권지원단에서 지원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보고 절차

구 분		보고 주체	1차 보고 (2차 보고주체)	2차 보고	
정기현장지원보고 (시스템 보고)		교육지원청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연구기획과)	국립특수교육원	
일반사안	사안발생 보고	학교 (학교폭력 업무담당)	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특수교육 담당)		
	특별지원 결과보고 (시스템 보고)	교육지원청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연구기획과)	국립특수교육원	
중대 사안	집단,언론, 교직원, 기타	사안발생 보고	학교 (학교폭력 담당)	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특수교육 담당)	
				②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피해자가 18세미만 학생] 사안보고	학교 (아동학대 담당)	③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연구기획과)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①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담당) (특수교육 담당)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② 도교육청 (감사관 및 유아특수교육과)		
			③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연구기획과)		
	성사안	[피해자가 18세이상 학생] 사안보고	학교 (학교폭력 담당)	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특수교육 담당)	
				②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 피신고인이 교직원인 경우 감사관 추가 보고	
				③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연구기획과)	
특별지원 결과보고		교육지원청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연구기획과)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시,

장애학생의 진술 조력 역할 담당

 장애학생 학교(성)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전담기구 사안조사 과정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이 자문위원 또는 참고인으로 참여

-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협업체 구축, 정기간담회 실시 등)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활동 강화

 예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해바라기아동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협업체 구성 시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https://www.nise.go.kr/onmap>)’ 활용

- 더봄학생 지원
 -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 경험이 있거나 다양한 외부적 환경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더봄학생으로 선정 및 지원
 - 인권지원단 경찰위원 및 지역 내 경찰서 관련 부서에 정보를 제공하여 교외 관리 지원
- 특수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언어폭력·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포함) 실시(연간 3시간 이상)

3) 장애인권교육 강화

-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유·초·중등 학교 과정별 관리자·교원을 대상으로 장애공감문화 확산 연수를 집중 확대하여 교내 장애학생 인권보호 풍토 조성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자기권리인식, 자기보호 등)을 함양하고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장은 학교(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 참고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참고 자료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humanrights.go.kr>) 교재·교육자료실: 별별이야기 등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www.eduable.net) 진로·인권교육: 인권 교육 자료, 장애공감 교육자료 및 장애공감 공모전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등 인권 관련 자료
 -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자료(시각, 청각, 지체, 지적, 정서·학습장애)

●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신설·강화

【 예시 장애학생 인권 보호 관련 학칙 】

-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권 감수성 교육 실시 규정
-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사안 처리 특별 지원 사항
-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우수학생에 대한 ‘포상’ 조항

● 학교 단위 장애 공감 문화 조성 프로그램 운영

■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권 동아리 운영

- ✓ 장애인 인권 UCC 제작,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인권 관련 공모전 및 행사 참가 등

■ 학교 구성원 간 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한 1교 1 특화 프로그램 운영

- ✓ (예시)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급) 규칙 만들기 ▲생활수칙 실천 운동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자료 신규 보급

*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중·고) 기반 성 인권 교육 콘텐츠(‘26., 국립특수교육원)



학교 및 교육지원청 협조사항



학교

- ☑ 2026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조사 참여
 - ※ 「특수교육법」 제13조에 따라 교육감이 매년 실시하는 법정 조사
- ☑ 장애학생 대상 성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아동학대(만18세 미만) 또는 학교폭력(만18세 이상)담당 부서에 보고
- ☑ 교내외 교육활동 시 장애학생을 배제하거나 착석 유지를 위해 물리적인 도구나 위력으로 통제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교육지원청

-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계획 및 인권보호 관련 교육 계획 수립(‘26. 3월)
- ☑ 학교(성)폭력 발생 시 사안처리는 학교폭력 담당에서,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2차 피해예방은 인권지원단에서 지원하도록 조치



II-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1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추진목적

-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및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디지털 핵심 역량 강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7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2(교육자료)

1) 에듀테크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조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AI교육 중심의 활용 환경 구축* 및 관련 기기** 보급 확대
 - * 스마트 패드, 노트북, AI 스피커 등
 - ** SW교육 교구(코딩봇, 모듈형 교구 등), AI형 스마트 기기 등
-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 미래교육 준비를 위해 첨단기술 연계 복합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거제애광학교, 밀양아리솔학교) 운영
- 특수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과지도, AI 활용 특수교육 수업하기, AI형 에듀테크 활용하기 등 연수 운영

2) 장애학생 온라인 교육 지원

-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등 특수교육 수업 혁신을 위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 ‘열린배움터’ 활용(<https://class.nise.go.kr/>)
 - * 실시간 음성 인식·자막 지원, 개별 화상수업 등 기능 지원하는 교육 플랫폼

【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플랫폼(열린배움터) 】

		
열린배움터 메인화면	열린배움터 소개 (기능 및 주요 서비스)	사용자별 기능 안내 (교사, 학생, 학부모)

- 특수교육대상자 아이톡톡 활용 지원: 교수학습자료, 수업나눔,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 지원
(아이톡톡: 웨일클래스-톡톡나눔터-특수교육)

【 아이톡톡을 통한 특수교육 지원 】

	
(교수학습자료) 수업 영상 콘텐츠	(수업나눔) 수업 및 자료 나눔

3) 에듀테크 신기술 체험 확대

- 체험·실습 중심의 SW·AI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학체험관(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운영

- 이용 대상: 특수학교(급) 초·중·고등학생
- 참여 인원: 1일 30명 이내
- 참여 방법: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으로 신청(매년 11월 다음 학년도 체험 신청)

2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추진목적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지원 확대

※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호 일부개정 포함),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1)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학교의 특성 및 여건, 교원·보호자·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 【초1~6, 중1~2, 고1~2】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학점)를 감축하여 일상생활 활동 편성 가능
 - * 【중3, 고3】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군)별 30%, 공통 교육과정은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가능
(※ 다만 체육, 예술(음악, 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 감축 불가)
- 고등학교 과정에 교과중점학교(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운영 지원
 - * 【고1~2】 (기본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학점의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중점교과로 편성하도록 권장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선택 중심 교육과정) 자율 이수 학점의 30% 이상을 해당 교과(군)의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권장
 - * 【고3】 (기본 교육과정)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중점 교과로 편성 가능
- 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설계와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확대
 - *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원 및 질 관리,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등
 - ※ 경상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참고(자료탐재: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고시/글번호171)

2)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확대

-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장애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통합교육용 교수·학습자료 등 활용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통합교육 계획 포함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권장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교수·학습자료 활용 지원
- 특수교육 온·오프라인 수업을 위한 동영상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시각장애학생·교사용 교과용도서 지원

- 대상: 초·중·고 시각장애학생, 시각장애교사
 - 대상도서: 국정, 검정, 인정도서(학기 구분이 있는 책자는 학기별 신청)
 - 신청시기: 1학기용(전년도 10월), 2학기용(4월)
 - 유형: 점자교과서, 점역파일, 확대교과서(B4, A3), 음성파일
 - 신청 시 유의사항
 - 과목당 1가지 유형의 교과용도서만 신청 가능함
 - NEIS에서 신청 가능한 저시력확대교과서는 NEIS를 통한 신청이 원칙
 - 시각장애인 교사의 경우 담당 교과와 교과서와 지도서만 신청 가능
- ※ 시각장애 대체자료(참고서, 문제집, EBS교재 등) 지원은 별도 안내

4)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후속 지원

-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용도서 활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에 대한 컨설팅 실시
-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학교(급) 우수 운영 사례 발굴·확산
- 경상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이해력 제고를 위한 현장 연수 운영
- 기본 교육과정 성취수준 개발 자료* 활용

* 고등학교 성취수준 개발 자료 1종 보급, 중학교 성취수준 자료 개발('26., 국립특수교육원)

5) 고교학점제 운영 내실화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 지원 확대
 -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으로 단위학교 안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및 컨설팅 지원
 - *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단을 통한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권역별 컨설팅
 -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학생 고교학점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 학생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따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 학생의 진로·흥미를 고려한 학점제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 및 교육지원청 협조사항



학교

-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일반학교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확대 권장
- ☒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육자료 보급 노력
- ☒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운영
- ☒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단 컨설팅 신청
- ☒ 시각장애학생·교사용 교과용도서 신청: 1학기용(전년도 10월), 2학기용(4월)
- ☒ 특수학교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운영 내실화



교육지원청

- ☒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컨설팅 실시
- ☒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용도서 활용,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등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 실시
-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활용 연수 강화
- ☒ 특수교육 관련 연구 및 현장 지원 활성화
-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내 및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

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추진목적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특수교육 성과 제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직업교육 담당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매 학년 시작 2주 이내 구성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해서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지원(단,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의 책임은 단위 학교장에 있음)

※ 국립특수교육원(<http://nise.go.kr>): ‘개별화교육운영가이드북’ 참고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개별화교육계획 포함 사항 】

- 특수교육대상학생 인적사항
-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 계획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제공할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일반교육교원과 보호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 준수

※ 학교별·학년별 개별화교육 관련 부모교육 강화

-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는 학기마다 실시
-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결과는 학생 또는 보호자, 통합학급 교사와 공유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전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 상급학교 진학: 사본, 재배치 및 전출입: 원본

※ [출처] ‘나이스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운영 지원’ (2022, 국립특수교육원)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지원을 위한 도움자료 개발 및 보급
 - 학교(급)별, 교과 영역, 생활지원 영역 등 다양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사례

2) 다양한 학교 구성원과 함께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특수교사,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을 포함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 제공
- 교육과정과 교과의 특성,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학생집단을 편성하여 개별화교육에 활용
- 유치원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안내 및 운영 사례 활용
 - ※ 유치원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을 위한 교육진단 및 평가 방안 연구('25. 국립특수교육원)
- 교과 또는 생활 지원 중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예시 등 현장성 강화 자료* 활용
 - ※ 개별화교육계획 현장성 강화 방안 연구('25. 국립특수교육원)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 실행 방안 모색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및 안내 자료 개발·보급
 - ※ (참고) 「나이스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운영지원 자료 개발 연구(국립특수교육원, 2022)」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 방안 모색
 - ※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교육부고시 제2023-34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온라인 연수

온라인 연수 지원

- 대상: 특수교사, 통합학급 담임교사, 개별화교육지원팀 참여자 등
- 내용: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에 대한 절차 및 방법 안내
- 시기: 2026. 3월 ~ 4월
- 방법: 온라인 연수(경상남도교육청 온라인 전달연수)



학교 및 교육지원청 협조사항



학교

-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일반교육교원, 학부모의 의견 수립 절차 준수
-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운영 온라인 연수 수강 적극 권장
-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행동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행동지원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의료지원 사항 포함(나이스 개별화교육계획관리 내 ‘제공서비스’ 항목에 ‘의료적 지원’ 항목)
-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용



교육지원청

- ☑ 각급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현황 점검 강화
-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과 관련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관련 연수·컨설팅 장학

4 순회교육 지원 강화

추진목적

-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장애 정도와 교육 요구 등에 대한 진단·평가 및 적절한 교육 지원으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5조(순회교육 등)

1) 순회교육 대상과 지원 범위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해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필요시 순회교육 실시(순회학급 운영)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통합교육 협력교사)
-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필요시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실시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공포 '20.10.20., 시행 '21.4.21.)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근거 마련
- ✎ 순회교육대상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 가능(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 심의 결과, 규제개혁 법무담당관-5681, '20.7.14.)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순회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을 반영하여 순회교육 계획 수립·운영(학생당 주 3회 이상 운영 가능)
 - ✎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개인 내 차를 고려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공통 및 선택교육과정을 근거로 교육과정 편성·운영
- 순회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가족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연수 강화
- 배치 환경 및 학교급에 따른 맞춤형 순회교육 지원
- 순회교육 담당 교사에게 순회교육 활동비 1일 20,000원 지급(출장비와 중복지급 금지)



학교 및 교육지원청 협조사항



학교

- ☒ 교재·교구 구입 등을 위한 순회학급 운영비 지원 및 담임 역할 수행
- ☒ 순회교육대상학생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순회 교사 배치
- ☒ 이동 곤란 등 특별한 사유를 지닌 학생에 한해 선정하고, 통학 지원 등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학교 출석 권장



교육지원청

- ☒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되어 가정, 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아 순회교육 제공
- ☒ 순회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연수 지원

5 문화예술·체육·체험 활동 지원

추진목적

- ▶ 장애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체육·체험 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 실현

※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 동법 「시행규칙」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사업)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1)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예술동아리 및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질 높은 여가와 재능 발굴 기회 제공
- 예술 영재 특수교육대상학생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 특화교실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로 문화향유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문화예술제 및 전시회 개최
 -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 우수사례 발굴·보급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 대상: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희망하는 특수학교(급) 문화예술 동아리
- 지원 영역
 - 공연: 앙상블, 오케스트라 합주, 아카펠라, 합창, 국악, 퍼포먼스, 댄스 등
 - 전시: 회화, 도예, 목공예, 사진 등
- 동아리 활동 운영비 및 문화예술제 참가비 지원

문화예술 특화교실 지원

- 대상: 문화예술 분야에 재능을 가진 특수교육대상학생
- 신청방법: 문화예술 분야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
- 지원영역: 피아노, 플룻, 바이올린, 성악, 가야금, 회화(동양화, 서양화), 공예 등
- 지원방법: 문화예술 특화교실 운영비 지원

문화예술 특화교실(「예술로 꿈이음 교실」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이 있는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개별맞춤형 문화예술 역량 함양을 위한 지도 교실(특화교실은 개인 또는 2인 이하로 구성)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제<슈퍼스타 YOU!> 개최

- 시기: 2026. 10. 29.(예정)
- 장소: 국립창원대학교 가온홀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특별 전시회 개최

- 기간: 2026. 4. 20. ~ 5. 1.
- 장소: 경상남도교육청 제2청사 갤러리홀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미래 체육 인재 육성·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 특기와 역량 발휘를 위한 기회 제공 확대
 - 체육 진로 희망 학생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학습코칭 및 체육분야 진로 체험 등 인재 발굴 프로그램 운영
 - 체육 인재 발굴 기회 확대를 위한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참여 적극 권장
- 체계적인 건강·체력 관리를 위한 체력평가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학생 건강증진 도모
 -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체력 회복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및 스포츠 강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 지역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체력인증센터*('25. 20개소) 등과 연계·협력
- 장애 유형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 2026.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p133, 2026. 사학기관예산및결산지침 p173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2026)

- 일시: 2026. 5. 12. ~ 5. 15.
- 장소: 부산광역시 일원
- 경기종목: 골볼, 보치아, 수영, 씨름, 육상, 축구, 탁구, e스포츠, 실내조정 등
- 참석대상: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
- 예산지원: 참가비, 훈련비 등 지원

제11회 경상남도교육감기 장애학생 체육대회(2026)

- 시기: 2026. 10. 15.(예정)
- 장소: 창원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 경기종목: 17개 종목(육성 3, 보급 8, 체험 6)
- 참석대상: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및 기타 장애, 특수교육대상자 등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2026)

- 일시: 2026. 9. 11. ~ 9. 16.
- 대상: 고등학교과정 이상의 장애인
- 장소/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대한장애인체육회
- 경기종목: 골볼, 보치아, 수영, 씨름, 육상, 축구, 탁구, e스포츠, 실 내조정 등

2026년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 목적: 장애학생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여가생활 개발을 위해 정보경진 대회 및 e스포츠 대회 운영
- 대상: 특수학교(급) 학생, 일반학생, 지도교사, 학부모
- 일시: 예선 2026. 6. 10. ~ 6. 12. / 본선 2026. 9. 8. ~ 9. 9.
- 장소: 예선(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 본선(미정)
-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참가 및 지원
 - 경남 장애학생 정보경진 대회 및 e스포츠 대회를 통해 선발된 학생이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참가
 - 전국 정보경진대회, e스포츠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 및 특별공연 참여

3) 특수교육대상학생 체험·수련 활동 지원 강화

● 체험 활동 지원 강화

-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시설을 이용한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 활동 운영
- 장애공감체험을 통해 비장애학생의 장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개선

● 수련 활동 지원 강화

-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시설을 이용한 1일 체험형 수련 활동, 1박 2일 숙박형 수련 활동, 어울림 수련 활동 운영
- 단체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및 협동심을 함양

※ 체험활동 실시 등으로 인한 출결 처리(추가)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장 허가를 받은 체험활동: 출석 처리

－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출석인정 처리

*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

체험·수련 활동 지원

■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비장애학생(장애공감체험에 한함)

■ 장소: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 체험 활동: 안전생활체험, 진로체험, 공학체험, 찾아가는 체험, 장애공감체험

■ 수련 활동: 1일 체험형 수련 활동, 1박 2일 숙박형 수련 활동, 어울림 수련 활동

4)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체험활동 실시 등으로 교원 연수 운영

● 특수교사 대상 문화예술·체육 관련 직무연수 운영

■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특수교사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 능력 신장을 위한 연수 운영



학교 및 교육지원청 협조사항



학교

☑ 장애학생체육대회 적극 참여 권장

☑ 장애·비장애 통합 문화예술동아리 및 특화교실 운영에 적극 노력

☑ 특수학교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자용 신체능력검사(PAPS-D) 활용 권장

☑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체험·수련 활동에 적극 신청
(26년 11월 신청 공문 참고)

☑ 국립특수교육원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통합체육 직무연수 과정에 일반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교육지원청

☑ 관계기관(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의 장애학생 지원 사업 적극 활용 및 홍보

☑ 장애학생 문화예술 우수사례 발굴·보급

☑ 특수교사 대상 문화예술·체육 관련 직무연수 운영 권장

☑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체험·수련 활동에 적극 신청
(26년 11월 신청 공문 참고)

6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추진목적

- 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건강장애 등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개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학생 의료적 지원 및 행동중재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 강화로 학생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2조(개별화교육),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별표(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보조인력의 역할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공간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교실, 실습실 등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신체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22.6.)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유형에 추가된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진단·평가 및 선정
 - ※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관련 「2025.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처리 지침 (K-에듀파인 업무지원-일림관-일반계시관-기본계획알림방-도교육청 25-139216)」 참고
-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특수학교 학급 및 각급학교 특수학급은 1/2 범위내에서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가능
-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 교육과정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보조공학 관련 지원 등
- 교사 대상 중도중복장애학생 지도 전문성 향상 연수 운영
 - ※ 【국립특수교육원】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이해와 지도(원격)

 (특수교육법 제27조)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가능

※ 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필요함

2)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학생 의료적 지원 강화

-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지역 내 의료기관 선정 및 업무협약(MOU) 추진(학교 내 전문의료인 배치 3교)
- 단위학교는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지원시 치료지원, 가족지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지원 등 관련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에서는 치료지원전담팀을 구성하고, 치료지원 전담팀을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 제공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서 의사, 관련학과 교수, 치료사, 특수교사 등으로 구성운영

-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관련 내용 포함하여 작성

✓ 의료적 지원(예시): 가래흡인(석션) 지원 시간과 횟수 ▲섭식 지원 형태와 방법 ▲호흡 상태 ▲복용 약물 종류 및 방법 ▲의료적 지원 제공자 등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 의사, 간호사, 치료사, 특수교사 등의 참여나 소견 반영

【 제도 개선 사항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4948(2022.9.8.),725('24.2.28.) 참조) 】

- ① 의료기관과의 계약 간소화
 - (애로사항) 교내 의료적 지원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절대 부족하며, 공익적인 관점에서 수요를 이끌어도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절차'에 대한 부담으로 계약 난항
 - (제도개선)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제123회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22.8.31.)'에 따라 교육청(학교)에서 의료기관과 계약 시 수의계약 적용 검토 가능
- ② 교내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처리
 - (애로사항) 의료인력의 교내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주체 불명확
 - (제도개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법률 검토 결과('22.8.4.)에 따라 교내 의료행위 중 사고 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 검토 가능
- ③ 교내 의료행위가 가능한 의료인력의 범위 확대
 - (애로사항) 「의료법」상 의사, 간호사 등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교내 배치에 한계
 - (제도개선) 복지부 유권해석('22.3.17.)에 따라 간호사 보조수행 시 간호조무사도 의료행위 가능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시청각장애학생 교육활동 및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위해 시청각 거점센터 운영 (4개 센터)
- 시각장애학생.교사용 교과용도서 및 대체자료 활용 및 홍보 강화

-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추진
 - 한국수어, 보행지도, 시각(청각)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역량강화, 뇌성(피질) 시각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 역량 강화 등(국립특수교육원)
- 지역의 관계기관(보조기기센터, 장애인단체, 수어통역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통합교육 지원인력 운용 강화
- 보조공학기기 지원 통합시스템을 통한 시.청각장애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 보조공학기기 구입 예산, 교육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4)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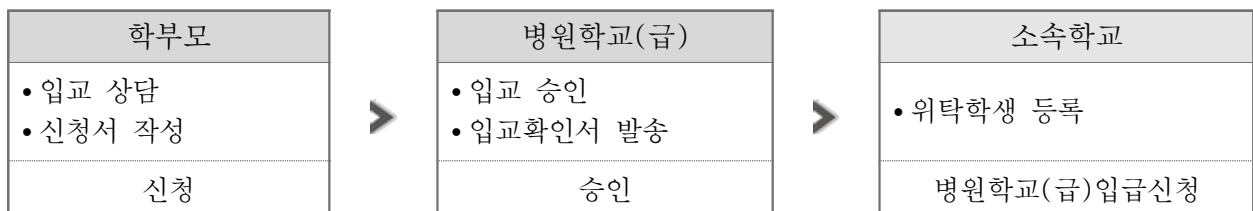
- 건강장애학생의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으로 학업 중단이 우려되는 학생으로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나 진단서 등 필요
※ 정신질환 학생은 대상이 아님

-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병원학교, 원격수업, 학교복귀프로그램 지원
- 건강장애학생의 조기 교육지원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적극 안내
- 건강장애학생의 원격학교 복귀 및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연수 강화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건강장애학생 관련 통합학급 교사 연수 실시

-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개소
 - 시기 및 장소: 2026. 4월(예정), 내서중학교 별관동 1, 2층
 - 건강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원격수업 및 진학 상담, 학교복귀프로그램 지원
 -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문적인 건강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급) 운영
 - 병원학교(급) 입교는 지역에 상관없이 가능하며 보호자가 병원학교 입교 상담 후 신청



[병원학교(급) 신청 절차]

- 학생의 건강상태와 치료 상황에 따라 병원학교와 원격수업 병행 가능
- 병원학교 입교 학생은 건강장애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필요

 건강장애학생 선정 의뢰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에 따름

- 양산부산대병원(2학급) 및 진주경상대병원(1학급) 병원학급 운영 강화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창원) 내 특수학급(병원학급) 설치 추진(2027년 예정)
- 병원학교 입교 신청서는 최초 및 상급학교 진학시 제출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지원

- 건강장애장애 또는 기타 외상적 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과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이 어려운 학생 지원
- 건강장애학생의 건강 특성과 희망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과 관련된 교육 선택권 보장(공공기관위탁 및 민간위탁 원격수업시스템 활용)

원격수업 신청 방법

■ 최초 신청(신규/상급학교 진학 시)

【제출처】 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초·중·고등학교 모두 해당)

【제출서류】 ①진단서, ②원격수업 신청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재신청(2026. 3. 13.(금)까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 1년마다 재신청】

【제출처】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초·중·고등학교 모두 해당)

【제출서류】 원격수업 신청서

- 원격수업 수강 학생은 매 학년마다(상급학교 진학 포함) 원격수업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신청해야 함.(위탁교육은 1년 단위이며 새 학년도에 재신청 필요)
- 동일 학교급에서 재신청시 진단서는 필요 없음(상급학교 진학 시는 필요)
- 수강 신청 완료 후 별도 확인 공문은 없으며,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기관의 별도 연락 후 원격수업 접속이 되면 수강 신청 완료된 것으로 간주

■ 원격수업 제공 기관

제공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신청대상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https://www.s4u.kr/	1544-1640	초,중,고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https://www.nanura.org	055-266-4416	초,중,고

소속학교	도교육청	원격수업기관	학생
원격수업 신청 (진단서, 원격수업 수강신청서, 정보이용 동의서)	- 원격수업신청 접수 및 검토 - 원격수업 의뢰	- 수강승인 - 학교 및 학부모 통보	원격수업 수강
신청	접수·의뢰	승인·통보	수강

[원격수업 신청 절차]

●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2026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준수)

- (학적처리) 소속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서 학적 처리
- (출결) 출결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소속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와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은 해당 기관의 출결확인서를 따름
 (초등) 1일 1시간 이상, (중등) 1일 2시간 이상 위탁교육기관 수업에 참여 시 출석 인정

- (평가)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병원학교 및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 대상자 등 포함)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비교과영역의 경우 위탁교육기관 자료 인정 가능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학습격차를 최소화하여 안정적 학교 복귀 지원
- 건강장애학생의 소속학교 교원과 또래 친구를 포함하여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권장
- (예시)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학교 출석, 체험프로그램 등
- 학교복귀 프로그램 지원 신청(4월), 결과보고(12월): 1,000천원/교

5)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중재 및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교사 양성연수
 - 대상: 특수교사
 - 연수시수: 총 120시간(이론과정: 60시간/실습과정: 60시간)
 - 내용: 행동중재 계획.실행.평가 단계의 이론과 행동분석전문가에 의한 실습지도
- 장애학생 개별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 대상: 장애학생 중 교내에서 심각한 위기행동을 하는 학생
 - 방법: 행동중재전문가 또는 행동중재 순회교사의 행동중재 지원
 - 내용: 학생 학교생활 관찰 및 분석, 학생별 행동중재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지원, 학급단위 컨설팅, 가정과 연계한 행동지원 방안 등 상담 제공
- 장애학생 행동중재지원센터 운영
 - 특수교육원 내 행동중재지원센터(상담실, 원격지원실, 행동분석실) 운영
 - 구성: 행동중재지원을 위한 행동중재지원단 구성 및 운영
 - 역할: 상담, 행동분석, 컨설팅 제공, 교재교구 및 관련 물품 지원, 우수사례 공유 등
- 특수학교 행동중재 지원 강화
 - '학교행동중재지원계획'을 포함한 특수학교별 행동중재 지원 다각적 운영
 - 행동중재전담교사 지정: 50학급 이상 특수학교 1명(천광, 혜림, 은혜, 희망)
 - 행동중재전담교사는 학생 개별 행동중재 계획 수립.실행.평가 등을 담당
 - 특수학교 행동중재 지원 관련 컨설팅 실시 및 학교(학급)차원의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 행동 중재 프로그램 운영 예시 】

- (대상) 학교 내 심각한 위기행동이 있는 학생
- (중재회기) 중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학생 개인별 총 3~6회기
- (프로그램내용) 행동의 기능분석, ABA, 팀사례회의, 교사 및 학부모 상담, 약물치료, 가족지원, 쉼휴식힐링 등 학생 중심의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모든 중재 프로그램 포함

【 참고 장애학생 행동중재 참고자료 】

- 「장애학생 위기상황별 대처 행동 매뉴얼」 인천교육청, 2019
-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운영 매뉴얼」 국립특수교육원, 2020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중재 매뉴얼」 국립특수교육원, 2020
- 「장애학생 행동중재 도구 개발」 서울시교육청, 2021
- 「장애학생 행동중재를 위한 가이드북(특수학교용)」 교육부, 충북특수교육원, 2025
- 「장애학생 행동중재를 위한 가이드북(일반학교용)」 교육부, 충북특수교육원, 2025



학교 및 교육지원청 협조사항



-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수준(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 ☑ 건강장애학생 또는 기타 외상학생이 학업중단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원격수업 안내 및 상담 철저
- ☑ 건강장애학생이 학교 복귀가 예상될 경우 학교복귀프로그램 적극 활용
- ☑ 학교행동중재지원계획 수립: 행동중재가 필요한 학생이 있을 경우 상황별 지원 절차 및 교내외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위한 「학교행동중재지원계획」을 수립
- ☑ 위기행동에 대해 체계적 중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을 경우, 개별 학생행동중재계획을 수립하여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
- ☑ 50학급 이상의 특수학교는 행동중재전담교사 지정·운영



- ☑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 내 ‘치료지원전담팀’ 구성·운영
- ☑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사업 가이드북」 보급 및 활용 안내(‘22. 3월)
- ☑ 통합교육지원단 내 행동중재지원팀 구성 및 특수학교(급) 컨설팅 지원

7 돌봄·방과후교육 지원체계 강화

추진목적

- ▶ 돌봄·방과후교육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부모의 사회 활동 참여도도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1)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특수학교 교내강좌 운영,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 지원(영수증 청구)
 -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전공과 학생 제외, 특수교육대상자 미선정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지원불가)
 - 지원과목: 예·체능 및 직업교육 관련 과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월 12만원 이내

2) 특수학교(급)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특수학교 유치원 방과후 과정, 특수학교 방과후 과정(돌봄)으로 운영
- 방과후 과정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 유치원 특수학급대상유아 3명 이상 신청 시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개설
(중증장애유아 참여 시 2명으로도 신청 가능)
- 방과후 과정 운영: 통합교육 중심의 방과후 과정 운영
 - 유아발달에 적합한 놀이중심활동, 기본생활 습관 형성 등
-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미개설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는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또는 일반학급 방과후 과정에 참여(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인력 지원 가능)
-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일반학급 방과후 과정 포함)에 참여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 특수학교(급)종일반강사의 역할: (오전) 특수학급 지원, (오후) 방과후 과정 운영
- 시간제근무기간제교사의 역할: (오후) 방과후 과정 운영

특수학교 유치원 방과후 과정

- 대상: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 개설 인원: 1명 이상
- 전담인력: 시간제근무기간제교사(4시간)
-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의 역할: (오후) 방과후과정 운영

특수학교 방과후 과정(돌봄)

- 대상: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과정
- 개설인원: 학급당 6명
- 특수학교(급)종일반 강사의 역할: (오전)교육과정 지원, (오후)방과후 과정 운영
- 특수학교 방과후 과정(돌봄)은 저소득층, 맞벌이, 한부모가정 중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함
- 특수학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자 선정은 교내선정위원회에서 학교장이 결정

3) 돌봄 지원 체계 강화**초등학교 돌봄교실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지원인력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 돌봄교실 참여학생의 선정은 학교 돌봄교실 운영계획에 따름
 - 지원인력 배치여부는 학생의 장애정도, 돌봄교실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교협의회에서 결정함
 - 특수교육실무원이 배치된 경우, 특수교육실무원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학기 중 초등돌봄교실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여부는 학교협의회를 통해 결정(추가인력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 활동비 신청)
 -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여하는 경우, 방학 중 근무자인 특수교육실무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지원
-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 공문 참고

특수학교 초등 돌봄·교육(늘봄학교) 지원

- 대상: 특수학교 초1,2,3
- 과정: 맞춤형 프로그램(초1,2),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돌봄(오후돌봄, 저녁돌봄)
- (초1~2) 희망학생 대상 정규수업 시간외 매일 2시간 이내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초3) 희망하는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참여

【 참고 장애인 학생 방과후 교외 교육·복지 서비스 】

부처	서비스	돌봄 등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대상 월 66시간(월~토요일 09시~21시) 여가활동 및 자립준비활동 등 제공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 대상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장애아동가족 양육지원	돌봄서비스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과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연간 1,080시간 이내 기준
		휴식지원 프로그램 :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대상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 ※ 거주지 해당지역 사업 시행기관에 개별 신청
	발달재활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음악·행동발달재활심리감각발달운동발달심리운동 등 재활영역 서비스(바우처) 지원 ※ 9세 미만 아동은 의뢰서 및 소견서가 있을 경우 장애미등록 아동도 이용 가능

4) 특수학급 미설치 공·사립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

- 특수학급 미설치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유아 중 지원인력이 꼭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 운영비 지원
 - 지원인력은 자원봉사자로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모집

5) 방학 중 희망나눔학교 운영(지방보조금)

- 지역사회 관련 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희망학생(전공과 제외)

■ 운영 방법

- 운영주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보조사업자
- 운영기간: 방학 중 2주 이상, 1일 2시간 이상
- 운영프로그램: 미술, 음악, 체육활동 및 체험활동 등
- 지원금액: 1학급당 1,200천원 지원(학급당 5~7명 범위 내 편성)

6) 토요프로그램 운영(민간위탁)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활동 촉진
- 지원대상: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 운영 기간: 매주 토요일 운영(방학기간 제외)
 - 1학기: 2026. 3. 1. ~ 2026. 7. 31.(20회)
 - 2학기: 2026. 9. 1. ~ 2027. 2. 28.(16회)
- 운영 단체 수: 교육지원청별 1개 단체 원칙(운영 단체 모집 결과에 따라 복수 단체 운영 가능)
-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1학급당 학생 5~7명 편성 원칙
 - 1학급 편성 후 잔여 학생이 3명 이상 남을 경우에는 1학급 추가 편성 가능(9명일 경우 2학급 편성 가능)
 - 2학급 이상 편성 후 남은 학생이 4명 이상일 경우 1학급 편성 가능

학교 및 교육지원청 협조사항

 학교	☒ 학생과 학부모 희망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구성·운영 ☒ 초등 돌봄교육 또는 유·중등 방과후돌봄 참여시, 이동시간 전후 안전지도 체계 마련 ☒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교육지원청	☒ 특기적성교육 가맹점, 희망나눔학교, 토요프로그램 현장 점검 실시 ☒ 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 초등 돌봄·교육 및 유·중등 방과후돌봄 운영 현황 조사 ('26. 5월, 10월) ☒ 26학년도 특수학교 늘봄지원실 만족도 조사 실시

8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추진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각급학교의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강화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참여 보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제25조(지원인력),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1) 특수교육실무원 배치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실무원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 특수교육실무원 배치 및 지원방법

- 특수학급 설치교: 특수학급에 우선 배치하고 통합학급에 탄력적으로 지원
-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학급에 배치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 주요 업무

-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및 학교활동에 대한 지원 역할 담당

✎ 특수교육실무원 업무

- (교수학습활동)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 지원, 교실과 운동장에서 학생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개인육구) 식사지도,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의복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 등
- (적응행동)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행동 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등
- 기타 학교장이 분장한 업무(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업무 최우선)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함한 특수교육실무원 학생 지원계획 수립

특수교육실무원 방과후과정 지원

-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포함_2020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교육부) 지원은 특수교육실무원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해당(법제처법령해석 결과 안내_[특수교육 정책과-4022(2018.8.20.)])
- 특수교육실무원의 학기 중 방과후과정 지원: 학교협의회(관리자, 부장교사, 특수교사, 특수교육실무원 등)를 거쳐 특수교육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며, 자원봉사자를 추가 요청하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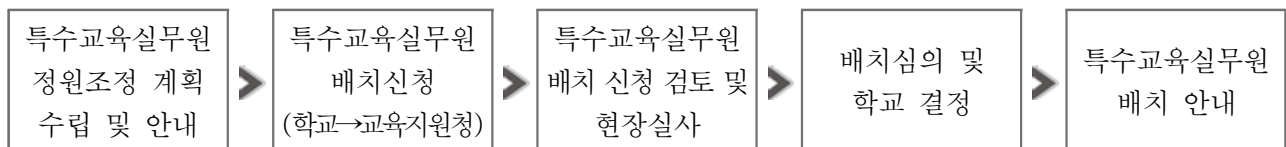
● 연수

- (신규인력)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30*시간 이상 이수
 - * 국립특수교육원 기본과정 연수 이수 또는 학교 단위 연수 실시
- (직무연수) 방학 중 각 5일 직무연수 운영 (특수교육원 4일, 교육지원청 1일)
- (학교자체연수) 2023년 이후 학교 자체연수 3일 이상 실시
- (연수 내용) 장애학생인권보호, 장애유형별 일상생활보조방법, 복무규정 등

● 근무성적 평정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준하며 연 1회 이상 실시
- 근무성적평정 업무 담당자(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25조 참조)

● 특수교육실무원 정원조정



특수교육실무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 특수교육실무원이 교무실 및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특수교육대상자 교육 및 학교 활동과 관련된 장소에서 근무)
- 호칭은 「특수교육실무원 또는 선생님」으로 함
- 수련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 법정수당 지급
- 특수교육실무원의 원활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책상과 컴퓨터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
- 학생 특성파악 및 독특한 개인적 욕구지도, 생활 및 신변처리 등 학생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학부모, 학교장 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음

2) 사회복무요원 배치

- 사회복무요원 전공 및 적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 및 특성과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남학생 우선 지원)

- 주요 역할

- 학교장 및 교사의 지도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활동, 일상생활지원, 보행 및 이동 지원, 운동 및 재활 지원, 차량 승하차 지도.식사 등 교육활동 참여 지원

-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 장애학생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재배치 금지
 - 제35조(복무기관 재지정) 11항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복무 기관 및 복무 분야(이하 이 항에서 "복무기관"이라 한다)로 재지정할 수 없으며,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복무기관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
 5. 장애학생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특수학교(「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초·중·고등학교

-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내실화

- (기본방향) 국립특수교육원의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강화(기본, 고급)' 과정 수강
- (신규요원)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기본)' 과정 수강(배치 3개월 이내 완료)
- (기존요원)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고급)' 과정 수강 또는 학교 자체 직무연수 가능(연 2회, 장애 인권교육, 장애학생 활동지원 업무 관련 교육 포함)
- (연수기간 보장)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기본, 고급)'과정 수강 시 별도의 연수 기간 지정*, 연수기간 근무 인정 및 각종 임무에서 제외 가능

* 기본 과정 수강 시 최대 5일, 고급 과정 수강 시 최대 3일

- (이수관리) 이수증은 학교에서 보관

3) 치료지원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 특성 및 요구에 적합한 치료지원서비스의 적기 제공
 - 지원 대상: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전공과 제외)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 지원 방법: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치료지원비 지원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재활, 심리행동적응훈련
- 지원방법: 개별치료 및 그룹치료
- 지원시간
 - 특수학교: 치료사 1인당 20명(주 2회 이하_1인 40분 기준)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1인당 12명 이하(주 22시수 이하)

치료지원비 지원

- 지원기관: 병.의원 및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설치료실
- 지원영역
 - 병.의원: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 치료지원제공기관: 언어재활, 미술·음악·놀이재활, 청능재활, 심리운동, 감각재활, 운동재활, 재활심리, 행동재활, 보행·시기능훈련
- 지원방법: 치료지원 전자카드, 영수증 청구(병.의원 중 가맹점 미등록 이용자)

- 치료지원 제공 가능 기관 지정 및 관리로 치료지원 관련서비스 질 강화
 - 치료지원 관련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선정
 - 지정권자: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장
 - 지정조건: 물리.작업치료, 청능훈련이 가능한 병.의원 및 치료지원 관련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중 지정기준을 만족한 기관
 - 행정점검을 통한 제공기관 질 관리(지정기간 중 1회 이상 현장점검)

치료지원 제공기관 주요 점검내용

- (기관현황) 기관 유형, 승인 영역에 대한 치료사 보유 현황, 관리 방안 등
- (제공환경) 위치 적정성, 시설환경의 쾌적성,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시설 적합성 등
- (제공인력) 제공인력의 전문자격 소지, 범죄 경력 유무 등
- (기 타) 이용계획서 및 제공 기록지 작성, 치료지원비 부정 사용 여부

4) 특수교육대상학생(장애학생) 평가조정 및 대안평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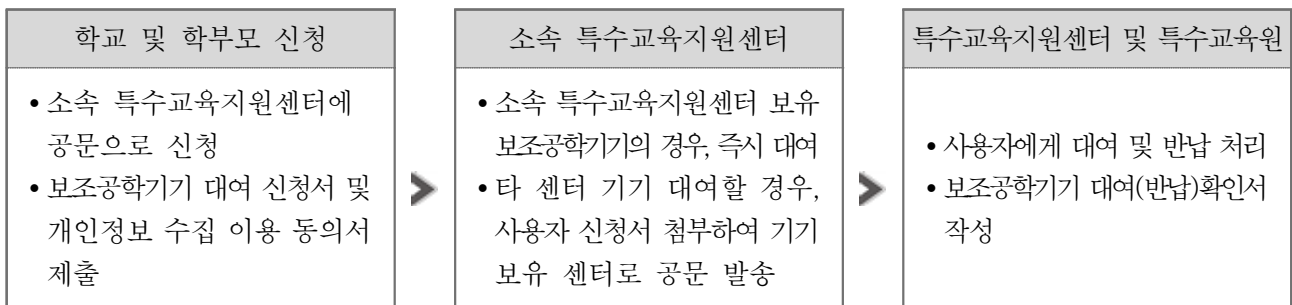
-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이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각급학교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
 - * 평가의 본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항의 제시 형태, 반응 형태, 검사 시간, 검사 환경 등을 조정하는 것과 같이 평가 전·중·후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노력
 - ※ ‘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2016, 국립특수교육원)’ 참고
 - 평가조정으로도 학교 단위 평가에 참여가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한 평가 지원방안 강구
 - ※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평가 도움자료(2025, 교육부)’ 참고

5)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 보조공학기기 통합지원시스템 운영으로 관리·검색·대여 편의성 제고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운영 매뉴얼(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2017)’ 활용

- 보조공학기기 통합지원시스템을 활용한 보조공학기기 검색 및 확인
-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로 학생 요구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신청



[보조공학기기 신청 절차]

- 보조공학기기 지원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 전시 체험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실 운영(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 시·군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보조공학기기 구비

6)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지원

● 특수학교 기숙사 운영비, 숙식비 지원

- 특수학교 기숙사에 입사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기숙사 운영비 및 숙식비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통학버스 용역비 지원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 시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에 따라 운영자(학교장), 운전자, 통학보조인력의 안전교육 의무 이수

- 통학비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취학한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통학비 지원 대상

- 원거리 거주에 따라 도보 통학이 불가하여 자비로 통학하는 학생
- 근거리 거주자 중 중증장애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스스로 통학할 수 없어 동행하는 보호자

순	설립별	학교명	현황	순	설립별	학교명	현황
1	공립	창원천광학교	3	7	공립	의령은광학교	3
2	공립	경남혜림학교	6	8	공립	거창나래학교	3
3	공립	진주혜광학교	6	9	공립	밀양아리솔학교	5
4	공립	통영잠포학교	4	10	사립	창원동백학교	3
5	공립	김해은혜학교	6	11	사립	거제애광학교	4
6	공립	양산희망학교	8	합계			51대

[2026. 특수학교 통학차량 현황]



학교 및 교육지원청 협조사항



학교

- ☑ 특수교육실무원 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복무관리 철저
- ☑ 기간제 특수교육실무원 채용 시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등 이력 조사
- ☑ 방학 중 업무지원 및 학교 자체 연수(연 3일 이상)를 위한 계획 수립
- ☑ 사회복지요원 신규 요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3개월 이내)
- ☑ 치료지원서비스 홍보 및 안내
-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평가조정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9(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지원
- ☑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와 평가조정 지원을 위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 ☑ 사군 지자체별 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통학비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 사천, 거제, 산청, 함양 등 학생 학생 요금 무료 지역 확인 후 통학비 신청



교육지원청

- ☑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 운영 관리 철저
 - 특수교육지원인력 수요조사 및 조정 협의회 개최를 통한 합리적 재배치
 -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지침(연수계획 포함) 수립
- ☑ 사회복지요원 배치 및 관리, 교육 강화
 - 남학생 지원을 담당하도록 배치하여 여학생 지원에 따른 민원 발생 예방
 - 사회복지요원 배치 관련 규정 준수 확인 철저
 - ※ 사회복지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4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 제한)
- ☑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 내 ‘치료지원전담팀’ 구성·운영
- ☑ 치료지원 제공기관 행정점검(연 1회 이상 실시)
- ☑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9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추진목적

- 특수학교(급)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의식 고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학생 안전교육),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1)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학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학교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학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안전생활교육(2014,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참고
✎ 「2021.학교안전교육 안내 자료」(경남교육2021-087) 참고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

- 재난 상황별(교통사고.화재.지진 등) 안전 대피 훈련 실시
 - 소방서, 경찰서 등 지역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안전 훈련 실시 권장

안전생활체험관(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운영

- 이용 대상: 특수학교(급) 유.초등학생
- 참여 인원: 1일 30명 이내
- 참여 방법: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으로 신청(매년 11월 다음 학년도 체험 신청)

- 안전 대피 훈련으로 파악한 학교별 재난상황별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학생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학교 단위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

✎ 「장애학생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2016.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 「학교 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2025. 교육부
✎ 「학교안전지원시스템(교육부)」, 국민재난안전포털(행정안전부) 누리집의 참고자료 활용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에 따라 안전 점검 연 2회 이상 실시
-  「장애학생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2016,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  「2021.학교안전사고 예방 안내 자료」 (경남교육 2021-169) 참고
 -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안전총괄과-411, 2025.1.16.)
 -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 (경남교육 2021-144) 참고
-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시행
 -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 예방·관리 철저

학교 및 교육지원청 협조사항

 학교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애학생 학년별 안전교육 (교육시간,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등)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 결과 보고 ☒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병 발생 시 보고 철저
 교육지원청	☒ 장애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와 관계기관(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협의체 구성 지원

10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추진목적

- 장애학생 미래생활 역량(자립생활 및 직업재활역량 등) 강화
- 개인의 진로희망에 따른 사회참여기회(진학, 취업, 평생교육참여 등) 확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제19조(전공과의 설치·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6조(학교기업),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등)~제41조(학교기업 운영 세칙)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제25조(지도·점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현장실습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진로전담교사)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 교육과정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꿈길’ 등을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활동 지원 강화
- 교실수업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학업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정보 도움자료 개발·보급
(2026. 경상남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정보 도움자료)

● 학생 맞춤형 진로 역량 개발 지원 강화

- 다양한 현장 중심의 진로직업 교육과정 및 학교급 간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 진로설계 지원

※ ▲특수학교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예술·체육분야 교육과정 등

특수학교 학교기업

- 특수학교 내에 일반 사업장과 유사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장애학생의 현장실습, 지원고용, 지역사회연계 등 직업교육 부서를 운영하는 학교
- 운영 학교: 창원천광학교
- 직업교육 및 현장실습 등을 위한 스페셜코디네이터 배치(3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 장애학생에게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인근 특수학급에 직업교육 및 진로 컨설팅 제공 등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
- 운영 학교: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내실화를 위한 스페셜코디네이터 배치(1명)

예술·체육분야 중점 교육과정 운영

-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예술·체육분야 재능 발굴 및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예술·체육분야 중점 교육과정 운영
- 운영 학교: 특수학교 4교(예술분야 3교, 체육분야 1교)
- 운영비 지원: 10,000천원/교

●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협의체*를 운영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지원 강화

* 특수교육기관, 지역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으로 구성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현장 컨설팅 운영('26.4.~12.)

● 지역사회 연계 전공과 과정 운영

-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공과 과정을 운영하여 전문적인 직업훈련 시스템을 활용한 장애학생 맞춤 직업교육 제공

※ 대학 내 실습실 및 캠퍼스 편의시설 등 인적·물적 인프라 적극 활용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내실화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 연구회 및 연수 운영

2) 관계부처(기관) 협력 취업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일자리 사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포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된 현장실습 지원
 - * ▲학교 내 일자리사업 ▲대학 및 공공기관 일자리사업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사업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적시 제공 및 이력 관리를 위해 범부처(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운영
 - ※ 장애학생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강화
-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을 통한 지역 취업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대학(산학협력단),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장애학생 대학생할 체험 지원

- 목적: 장애학생 진로진학 지원
- 지원대상: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25명 예정)
- 지원내용: 장애학생 대학생할 체험 지원(체험형, 입시형)
- 예산지원: 60만원/명

2026년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 일시: 2026. 10. 7. ~ 10. 8.
- 장소/주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대상영역: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

3)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직업교육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현장실습을 조기취업이 아닌 직무체험을 통한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하고, 직업평가 결과 토대로 학생의 적성과 요구에 맞는 현장실습 지원

- 현장실습 유형별 운영 절차 및 실시 시기 등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 방안 안내
- 현장실습 사전교육 자료* 보급을 통해 현장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보호 역량 강화

* 산업안전보건교육, 노동인권교육,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업윤리 등

- 산업체, 장애 맞춤 훈련기관과 학교 등이 협업하여 장애학생 현장적응역량 강화

✓ 장애 맞춤 훈련기관: 장애인표준사업장,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등

- 관계부처(관계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효율화 도모

-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일자리 사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포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된 현장실습 지원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장애인일자리사업, 대학 및 학교 내 일자리사업 등

- 현장실습 참여 기간 3주 이상, 학교에서 산업체로 직접 현장실습 참여하는 경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

- 일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채용 시기 탄력적 조정

- 경상남도교육청 승인 우수산업체 또는 정부주도 취업연계형 현장실습 참여 시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전환 가능

✓ 교육청 자체 기준(장애학생의 안전 확보,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 따라 학교와 교육청이 협의 선정한 산업체 등

✓ 장애학생 전문 취업지원 관계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 장애학생의 인권과 안전이 강화된 현장실습 운영 철저

✓ 2026.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2026.2.)

✓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길잡이(2025, 경상남도교육청)

4)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진로진학상담' 자격이 있는 교사 또는 연수대상자 1명 이상 의무 배치
 - 경상남도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 진로상담 시간 시수 인정 및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상담실 확보

【 참고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①항 】

제4조(진로전담교사) ①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

5)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체계 강화

-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One-stop)통합서비스지원 협의체를 운영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연계·협력 강화
 - ✓ 원스톱(One-stop)통합서비스지원 협의체: 특수교육기관, 지역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으로 구성
- 장애학생 현장실습과 취업처 발굴·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 스페셜코디네이터 배치(12명): 특수교육지원센터(8명), 특수학교 학교기업(3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1명)

스페셜코디네이터 역할

- | | |
|-----------------------------|---------------------------|
| ■ 직업(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 | ■ 학생·학부모·교사에 대한 취업상담 및 연수 |
| ■ 장애학생 취업가능 사업체 발굴 | ■ 장애학생 취업 관련 관계기관 협력체제 구축 |
| ■ 취업알선 및 관련 제반 업무 | ■ 바리스타 과정 현장실습 운영 |
| ■ 현장실습 및 지원고용 학생의 직무지도 | ■ 기타 장애학생 취업 전반에 관한 업무 |
| ■ 장애인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고용주 상담 | ■ 전환교육지원실 운영 지원 |

전환교육지원실 운영

■ 전환교육지원실 역할

-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 사업체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 및 사업체 개발, 사업체 견학 및 실습 지원, 학생·학부모·교사 연수 실시
- 고용지원을 위한 직업평가 활동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및 평가 지원
- 직업기능교육 프로그램 운영, 직업적응 지원 업무
- 특수학교(급) 취업자 사후관리
- 지역 내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와 연계하여 운영

■ 전환교육지원실 운영 지원

- 전환교육지원실 운영비 지원
- 스페셜코디네이터 또는 직업관련 교사 배치
- 전환교육지원실 운영 관련 컨설팅 연 1회 이상 실시

권역	설치장소	연락처	비고
창원	창원교육지원청	283-8028	창원천광학교 학교기업과 연계 운영
진주, 산청	진주교육지원청	740-2090	
사천, 하동, 남해	사천교육지원청	830-1760	
김해, 밀양	김해교육지원청	337-9415	김해생명과학고와 연계 운영
거제, 통영, 고성	거제교육지원청	636-9651	
양산	양산교육지원청	070-4640-6170	
함안, 의령, 창녕	함안교육지원청	585-0971	
거창, 함양, 함천	거창교육지원청	940-6180	

[전환교육지원실 운영 현황]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육 실습비 지원

-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금액: 700천원/학급

- 학부모에게 진로·취업 등 자녀의 미래 설계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
 - 국립특수교육원의 부모지원 온라인 종합시스템 '온맘'과 학부모용 '진로레터' 적극 활용



학교 및 교육지원청 협조사항



학교

- ☒ 개별화교육계획에 학생의 진학 및 성인생활 준비를 위한 '개별화 진로 및 직업교육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권장
- ☒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자 진로 현황 파악('26. 4월) 및 취업자의 직업유지 현황 제출('26. 4월, '27. 2월)
- ☒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시 실습지도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26. 3월)
- ☒ 전공과 운영계획 수립 및 수익금 관리 철저
- ☒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점검 결과 제출('26.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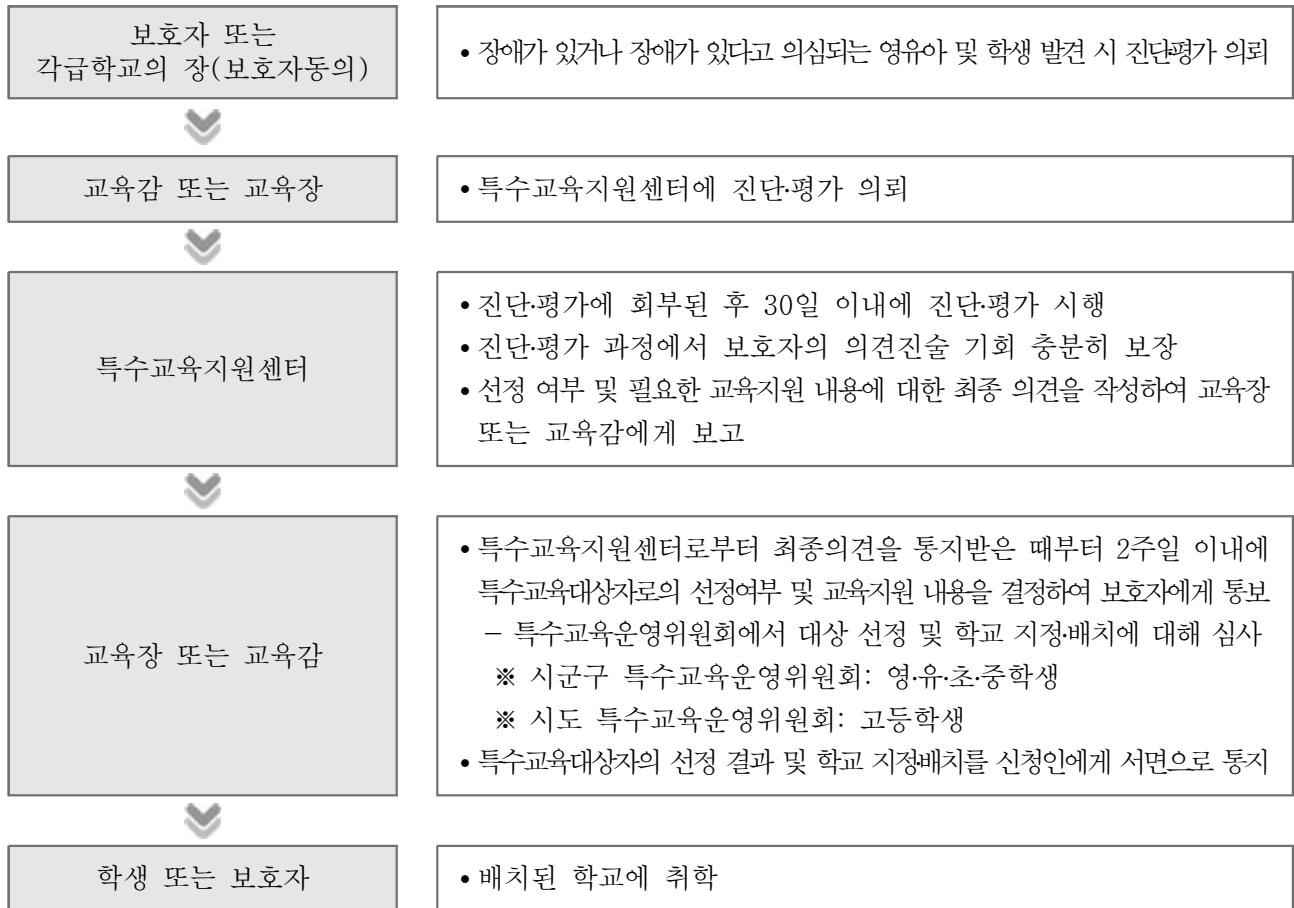
Ⅲ

주요업무 추진 계획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업무 처리
2.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
3.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4.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및 순회학급 운영
5.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업무 처리

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 자세한 사항은 '2026.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처리 지침' 참고

(K에듀파인-업무지원-알림판-일반게시판-기본계획알림방-도교육청-게시번호 26-161704)

제출서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신규 신청자】⇒ ① ~ ⑨ 장애영역(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 < 서식 1-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자 명단 (엑셀 서식)
- < 서식 2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 서식 3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보호자용)
- < 서식 4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담임교사용)
- < 서식 5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학습장애_담임교사용) ※ 학습장애 의뢰자용
- < 서식 7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 < 서식 12 > 학교장의견서, 장애등급 결정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중 택 1
- < 서식 1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학습장애 선정 의뢰 시 충분한 개별적 지원의 기회를 거친 후 신청할 것

제출서류

【건강장애 신청자】⇒ ⑩ 장애영역(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 < 서식 1-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자 명단 엑셀 서식
- < 서식 2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 서식 6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건강장애) ※ 병명, 출결상황 반드시 기재
- < 서식 7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 < 서식 12 > 학교장의견서, 장애등급 결정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중 택 1
- < 서식 1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의사진단서(3개월 이내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

-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한 경우 건강장애 선정에서 제외
- ※ 발급된 의사진단서 소견에 '3개월 이상의 장기의료처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제출서류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신청자】 ⇒ ⑪ 장애영역(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 < 서식 1-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자 명단 엑셀 서식
- < 서식 2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 서식 3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보호자용)
- < 서식 4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담임교사용)
- < 서식 7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 < 서식 11 > 학교장의견서, 장애등급 결정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중 택 1
- < 서식 1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중도중복장애 요건 중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경우 기초조사서(일반) 기타란에 의학적 처치, 지속적 상담 내역, 관련 치료 경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

제출서류

【전자문서 발송】

- < 서식 1-① > 의뢰자 명단은 엑셀 서식 사용하여 공문에 첨부
- 그 외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학생 한 명당 하나의 파일로 공문에 첨부
- (※ 원본 서류는 학교에서 반드시 보관할 것)
- 미취원 및 어린이집 재원 중인 영유아의 경우 모든 서류 인편 제출

제출서류

- 【영 아】 ⇒ 해당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 【유·초·중】 ⇒ 지역교육지원청
- 【고등학교】 ⇒ 지역교육지원청(진단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관련 용어

용어 구분	전학유형	예시	비 고
재배치	동일 유형으로 전입학	특수학급 → 특수학급 일반학급 → 일반학급 특수학교 → 특수학교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배치변경	다른 유형으로 전입학	특수학급 ↔ 일반학급 일반학급 ↔ 특수학교 특수학급 ↔ 특수학교 (동일학교 내 배치유형 변경 포함)	
유예 (취학유예)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무교육대상자)로서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면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재취학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유예’, ‘면제’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특수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 ‘거주지 이전’에 의한 재배치는 심의 불필요

※ 학년유예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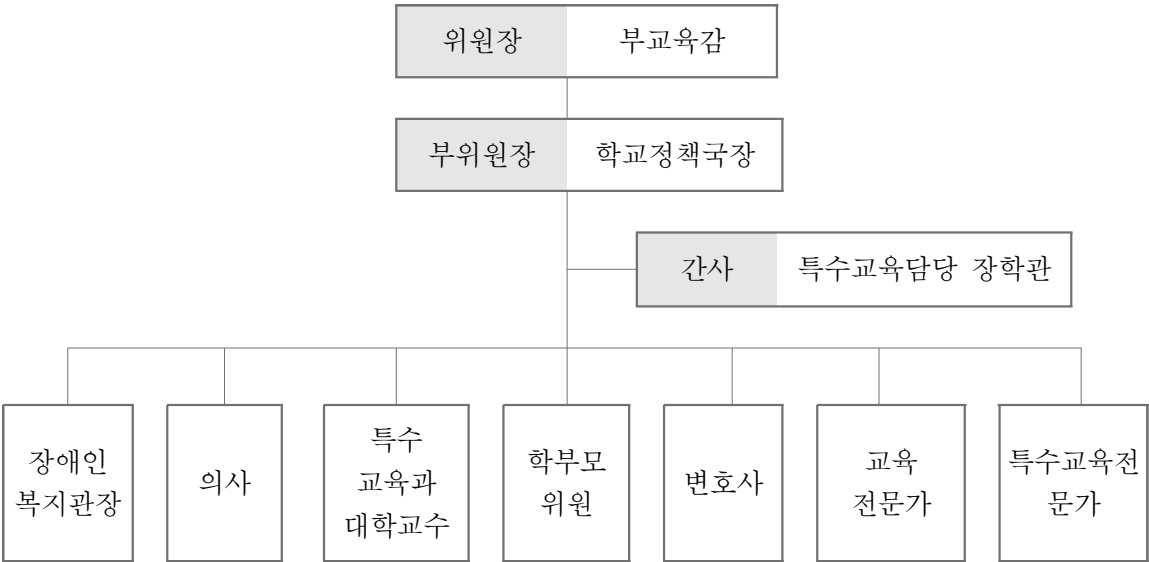
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0조)

구분	장애영역	선정 기준
①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②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③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④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구분	장애영역	선정 기준
⑤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⑥	자폐성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⑦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⑧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⑨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 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⑩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⑪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다.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역할】

- 연 5회 이상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서면심의 포함)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조직 구성 및 기능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준수
- 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조례 준수
-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위원회)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일정】

순	개최 일자	심의 내용	비고
1	2026. 2. 4.	선정·배치, 유예, 면제, 재취학	
2	2026. 4. 8.	선정·배치, 유예, 배치변경(재배치)	
3	2026. 6. 10.	선정·배치, 유예, 재취학	
4	2026. 10. 15.	고등학교 입학관련, 선정·배치	별도 안내
5	2026. 12. 3.	고등학교 입학관련(추가), 선정·배치	

※ 개최일 10일 전까지 공문 및 관련 서류 제출 【제출처: 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개최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관련 행정사항 및 유의사항

정서·행동장애 선정조건(선정 시 유의사항)

장기간에 걸쳐 정서 또는 행동 문제로 부적응을 겪고 있는 학생 중 아래의 1), 2), 3)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병리적 진단과 처치 : 정서·행동의 부적응 문제로 진단 및 처치를 받은 학생
 - 병리적 진단 : 병원 의사의 진단(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참고), 심리상담클리닉 등에서 진단
 - 처치 : 복용 약물(이름 또는 특성 - 예 : 항우울제 ○○), 복용 기간, Wee클래스 등 상담센터 상담 실시 등
- 2) 처치의 지속기간 : 병원에서 장기간 진단이나 Wee클래스 또는 기타 상담기관(치료실 등)에서 장기간 상담 및 처치를 받은 학생 (6개월이상, 상담 주1회 24회기 이상, 일회성 또는 치료중단기간 있는 경우 기간인정 안함)
- 3) 진단평가 검사도구 : ①적응행동검사 ②성격진단검사, 행동발달평가 ③학습준비도검사(기초학습검사), ④지능검사(배제요인) 중 임상범위에 있는 자

학습장애 선정조건(4가지)

【1조건:선별 및 의뢰】

□ 선별기준

① 선별검사 실시 및 대상자 확인

-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진단평가, 교과학습 진단평가, 학습장애 선별검사(LDST) 중 하나의 검사 결과로 대상자 선별 및 확인
- 학습장애에 대한 정신의학과 진단서가 있는 경우 선별검사 대체 가능

② 집중지도 실시 확인

- 최근 3개월 동안(24회기 이상) 학생의 학업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집중지도 실시(방학 등 제외) : 집중지도 실시 결과 자료 첨부(지도계획 관련 자료, 학습종합클리닉 지도 실적, 두드림학교 실적 등)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진단평가 의뢰

□ 진단·평가 의뢰

- 진단·평가 의뢰서 공문 작성→교육(지원)청 제출

- 선별검사 결과 제출
- 정신의학과 의 장애진단서, 또는 학습클리닉 진단서가 있는 경우 제출

※ 충분한 관찰 및 선별을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의뢰할 것 (단순한 학교 부적응 문제로 의뢰하지 않도록 주의)

【2조건:지능】 표준화된 개인별 지능검사 결과에서 전체 지능지수가 70 이상인 학생

【3조건:학력】 표준화된 학업성취도검사별 결과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4조건:배제요인】 다른 장애(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감각장애)나 외적요인(가정환경, 문화적 기회결핍)이 학습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 또는 학습부진아 제외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선정조건

【법적근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선정조건】

1. 중도중복장애는 지적장애(또는 자폐성장애)를 지니면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학생(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며, 총 8가지 세부 유형 있음)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장애영역별(제1~6호) 선정 조건에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 진단·평가 결과, 아래 표의 요건1과 요건2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1 \ 요건2	시각	청각	지체	정서행동	의사소통	학습	건강	발달지체
지적·자폐성	○	○	○	○	×	×	×	×

- 정서·행동장애를 수반하는 중도중복장애의 경우 다각적으로 분석(표준화검사(교차), 적응행동검사, 행동발달평가, 처지 지속기간, 면담관찰기록, 전문가 의견, 각종 협의록 등)
- 2. 시청각장애는 시각과 청각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학습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학생 (1가지 유형만 존재)
- ※ 중학교 진학 시 정서·행동장애를 수반하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은 재진단평가를 실시함 (단, 당해 연도 선정된 학생은 재진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참고자료】

1. 장애의 정도 판별: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등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장애1~3급' 표기된 자(중복장애로 판별된 자)
2. 등록 장애인이 아닌 경우 의사의 진단서

※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2026.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처리 지침' 참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절차 준수】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진단·평가 결과를 심사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
- 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및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

※ 배치 결과 통지 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계획 수립, 통합교육계획 수립 등 안내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정서·행동장애를 수반한 중도중복장애 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진단·평가로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중도중복장애 적격성 판단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진단·평가 비용 예산 집행 가능
- 중학교 진학 시 재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여부 결정

✎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발달지체, 건강장애, 정서·행동장애를 수반하는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재진단 및 평가 후 재선정

【발달지체 특수교육대상자】 만 9세 될 때 재선정

※ 재선정 불가시, 미선정시 해당 학년도까지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정서·행동장애를 수반하는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중학교 진학 시 재선정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 시 재선정

당해 학년도에 선정된 학생은 재진단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의료적·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 출결상황, 건강상태, 담임의견, 학교생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건강장애학생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 상급학교 진학 시 재진단·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여부 결정
- 산정특례장애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증명서의 '장애(예상)기간' 인정함.

✓ 산정특례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서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을 5%~10%까지 경감시켜주는 제도로써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5년간 특례기간이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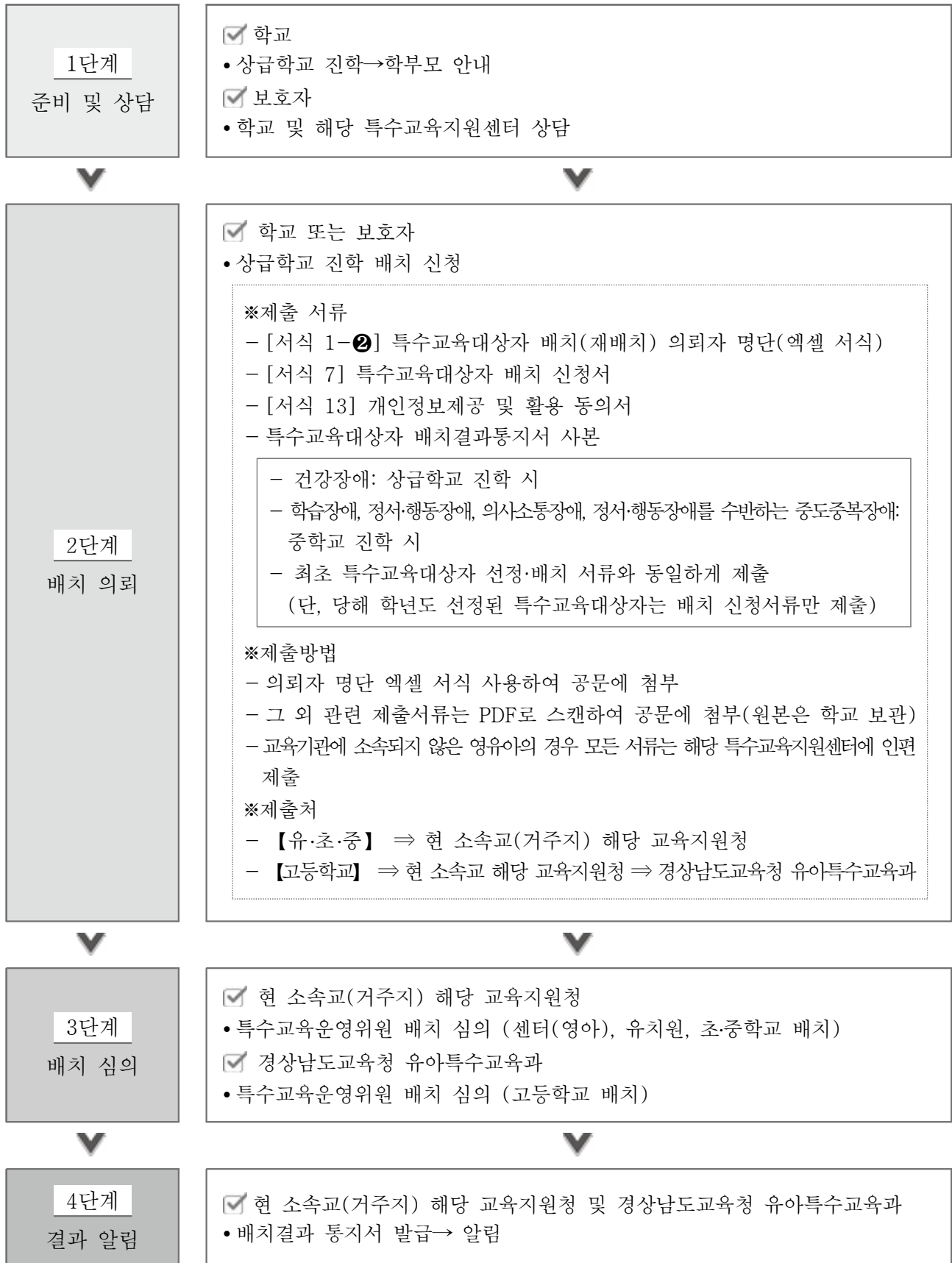
【과연령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지 않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의무교육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과연령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및 지자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안내

【그 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시 유의사항】

- 학습부진아가 학습장애 아동으로 선정·배치되지 않도록 지침 준수
- 장애인 편의시설,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배치 신청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
-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유무 및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을 미리 파악하여 학부모 상담 시에 충분한 안내를 하여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
- 관내 적극적 안내 및 홍보를 통하여 신규 대상자 및 상급학교 진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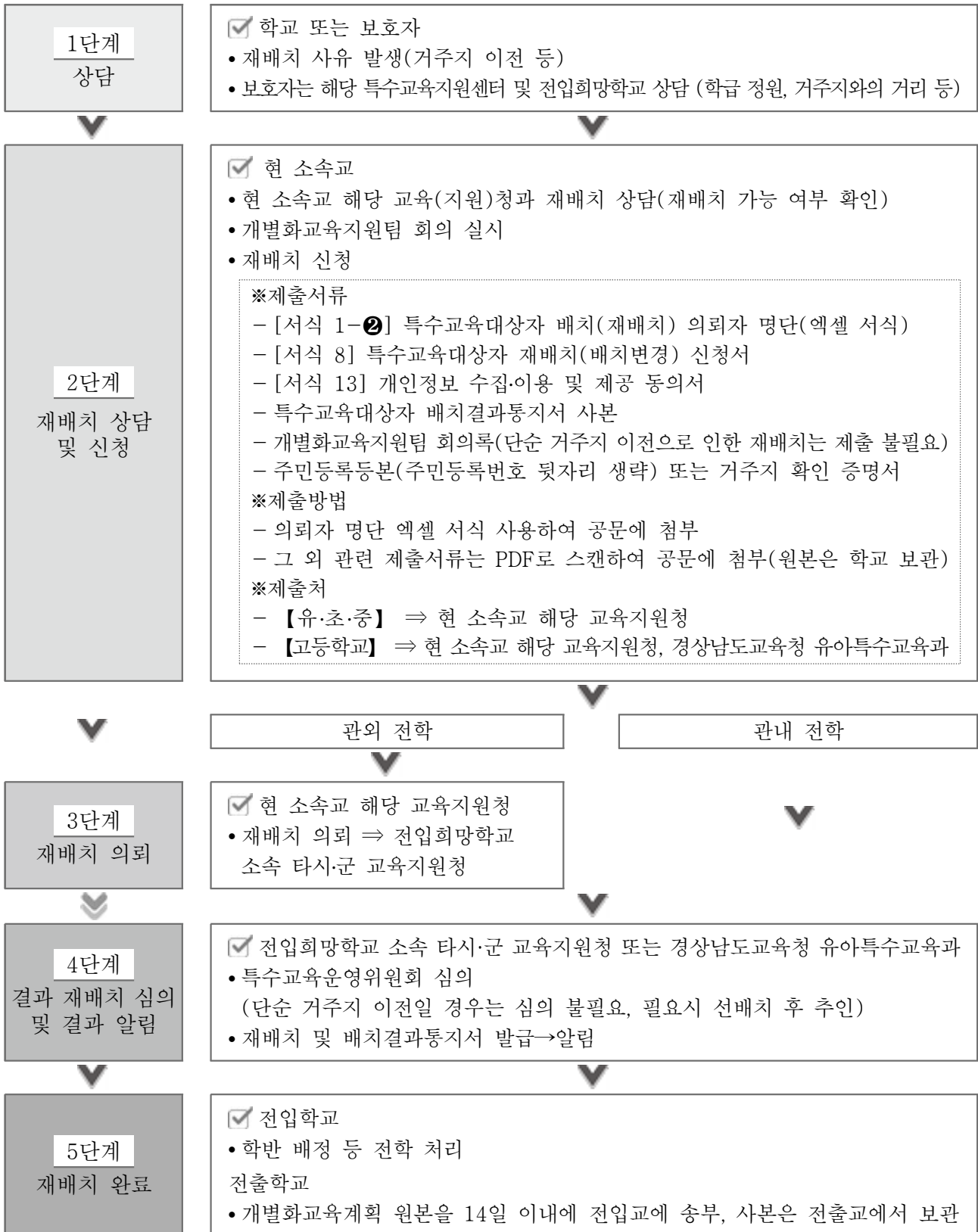
마. 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 배치



바.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및 배치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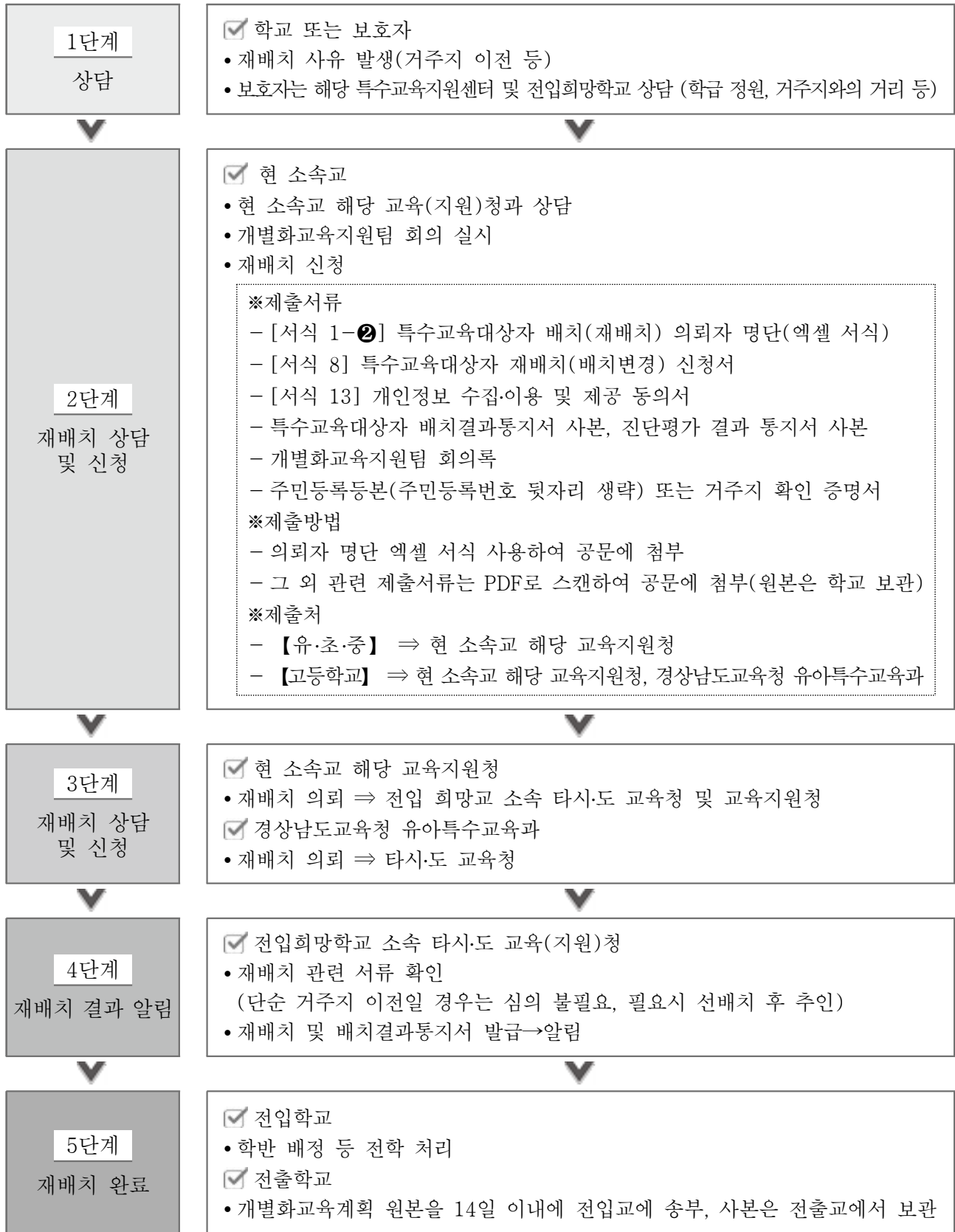
【재배치】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경상남도 내 시·군 전입학 절차 및 제출서류

특수학급 ⇔ 특수학급, 일반학급 ⇔ 일반학급, 특수학교 ⇔ 특수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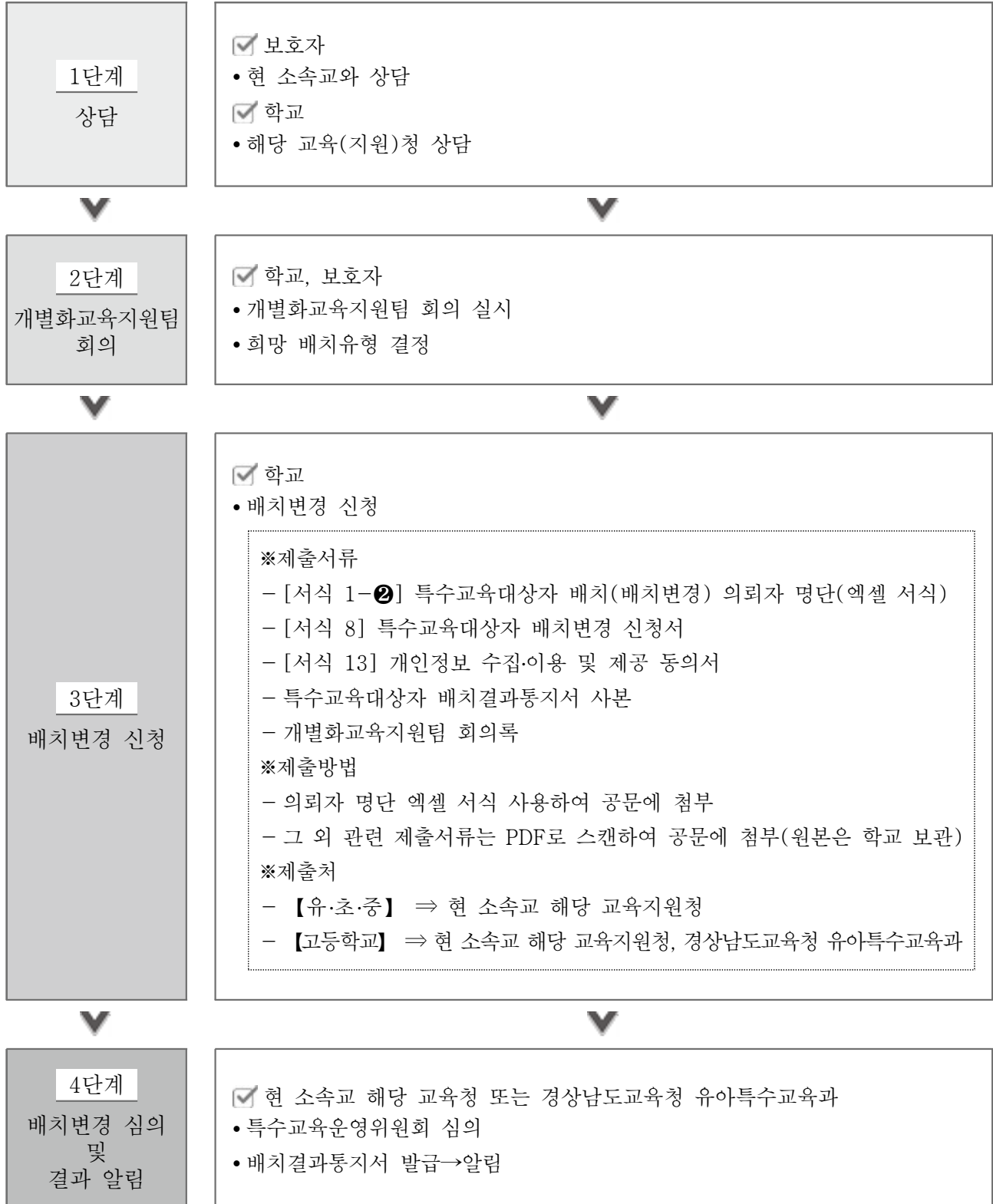
【재배치】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타시·도 전입학 절차 및 제출서류

특수학급 ⇔ 타시·도 특수학급, 일반학급 ⇔ 타시·도 일반학급, 특수학교 ⇔
타시·도 특수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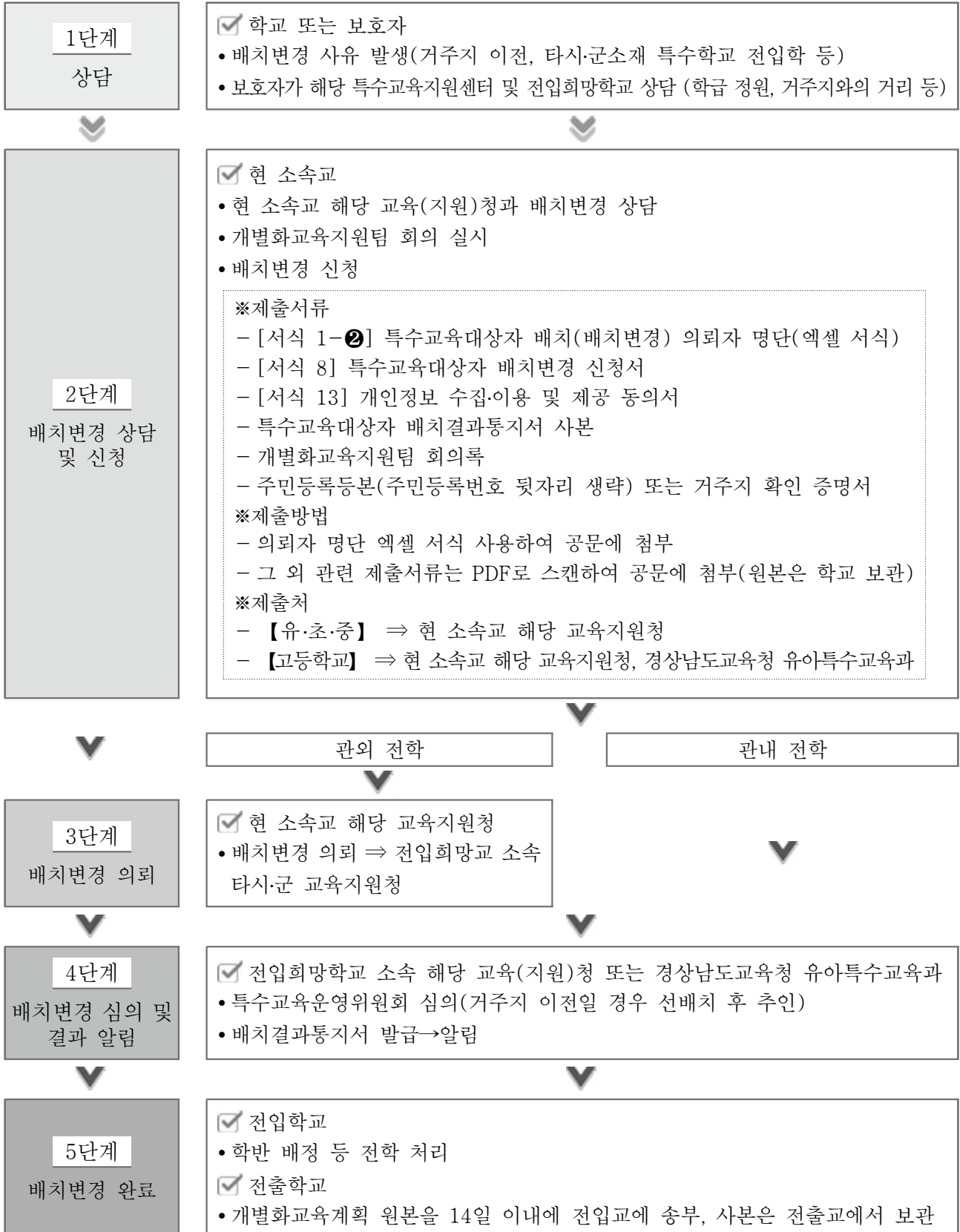
【배치변경】 동일교 내 배치 변경 절차 및 제출서류

동일 교내 특수학급 ⇔ 일반학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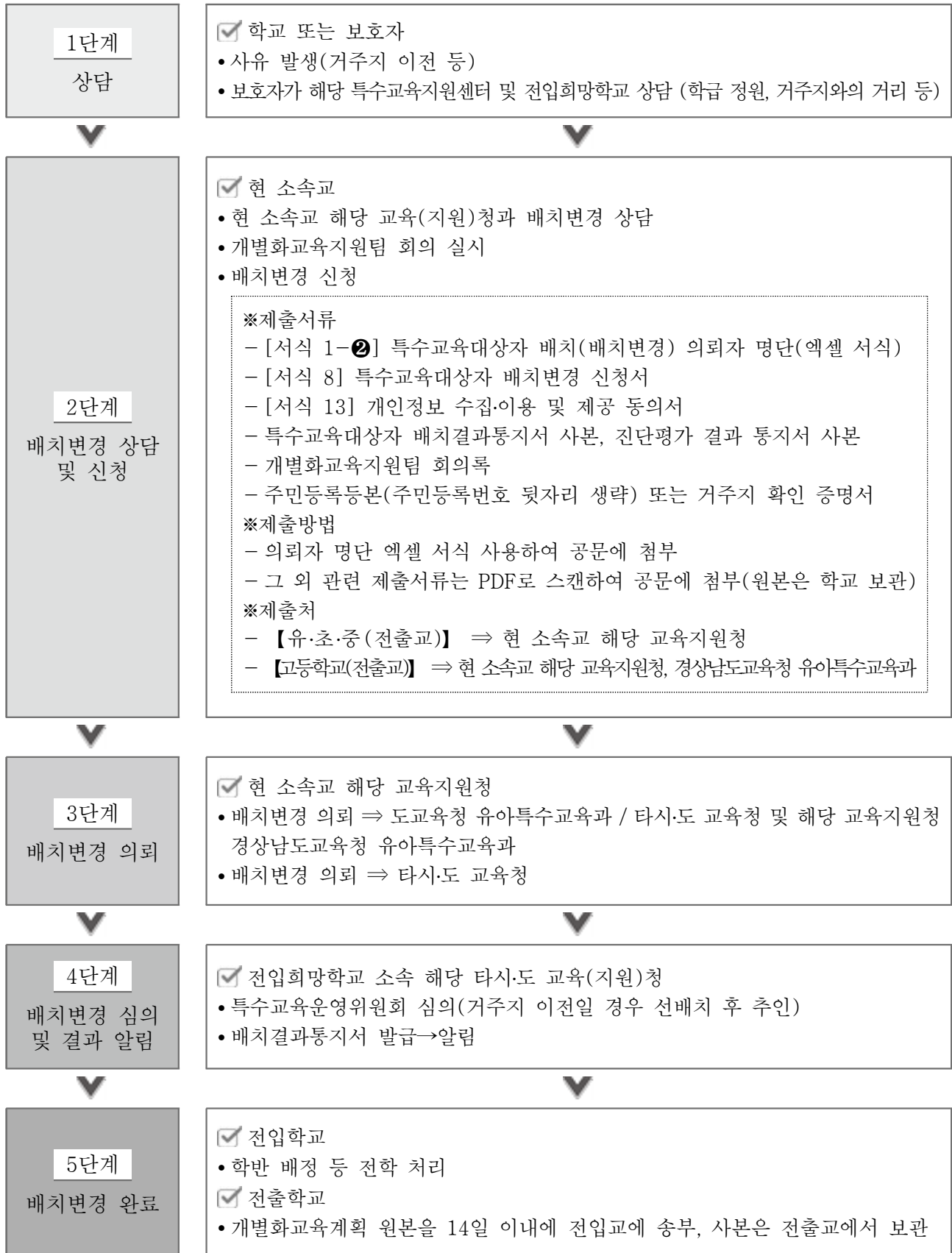
【배치변경】 배치유형을 변경한 경상남도 내 시·군 전입학 절차 및 제출서류

특수학급 ⇔ 일반학급, 일반학급 ⇔ 특수학교, 특수학급 ⇔ 특수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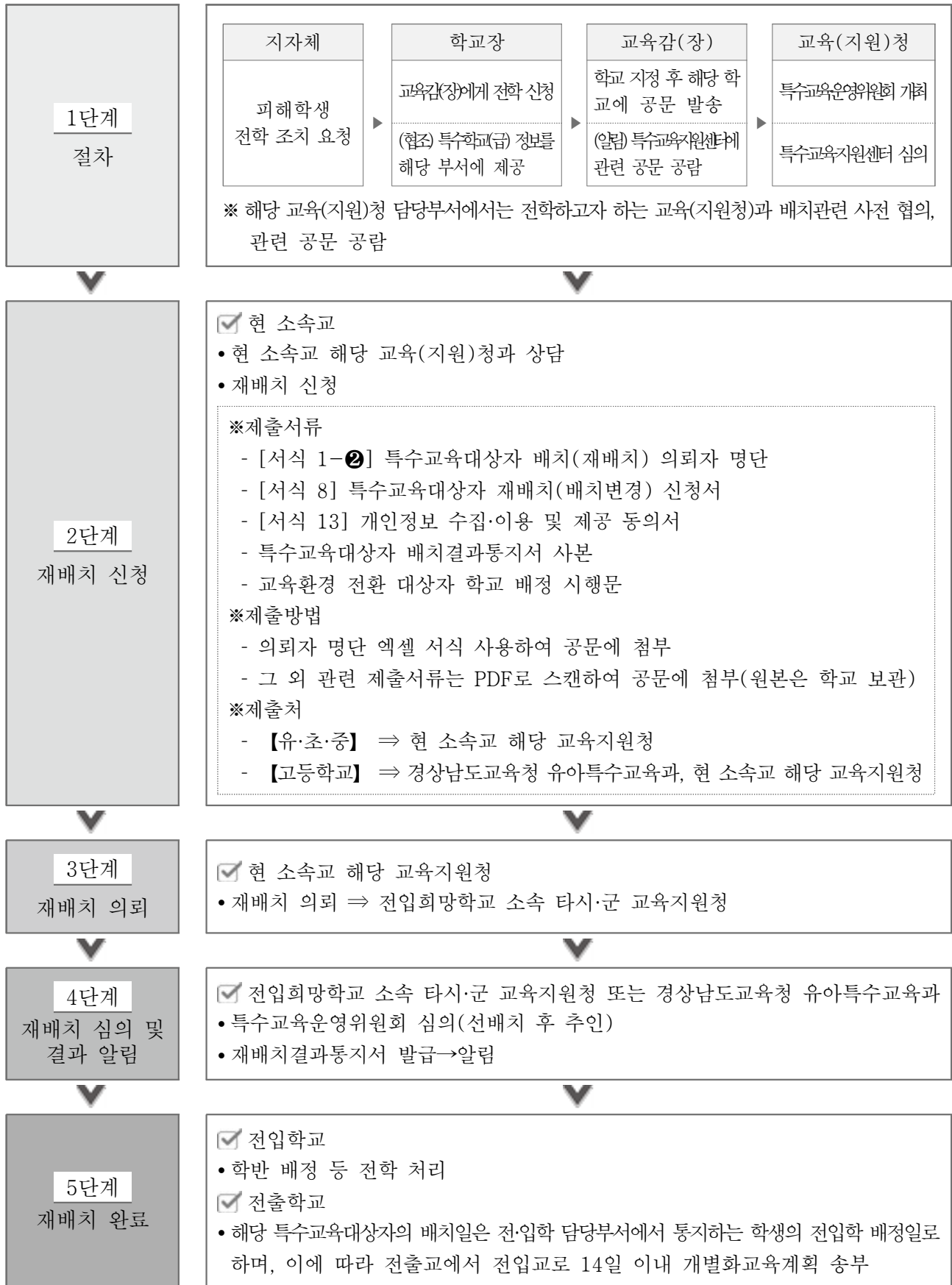


【배치변경】 배치 유형을 변경한 타시·도 전입학 절차 및 제출서류

특수학급 ⇔ 타시·도 일반학급, 일반학급 ⇔ 타시·도 특수학급, 특수학급 ⇔ 타시·도
특수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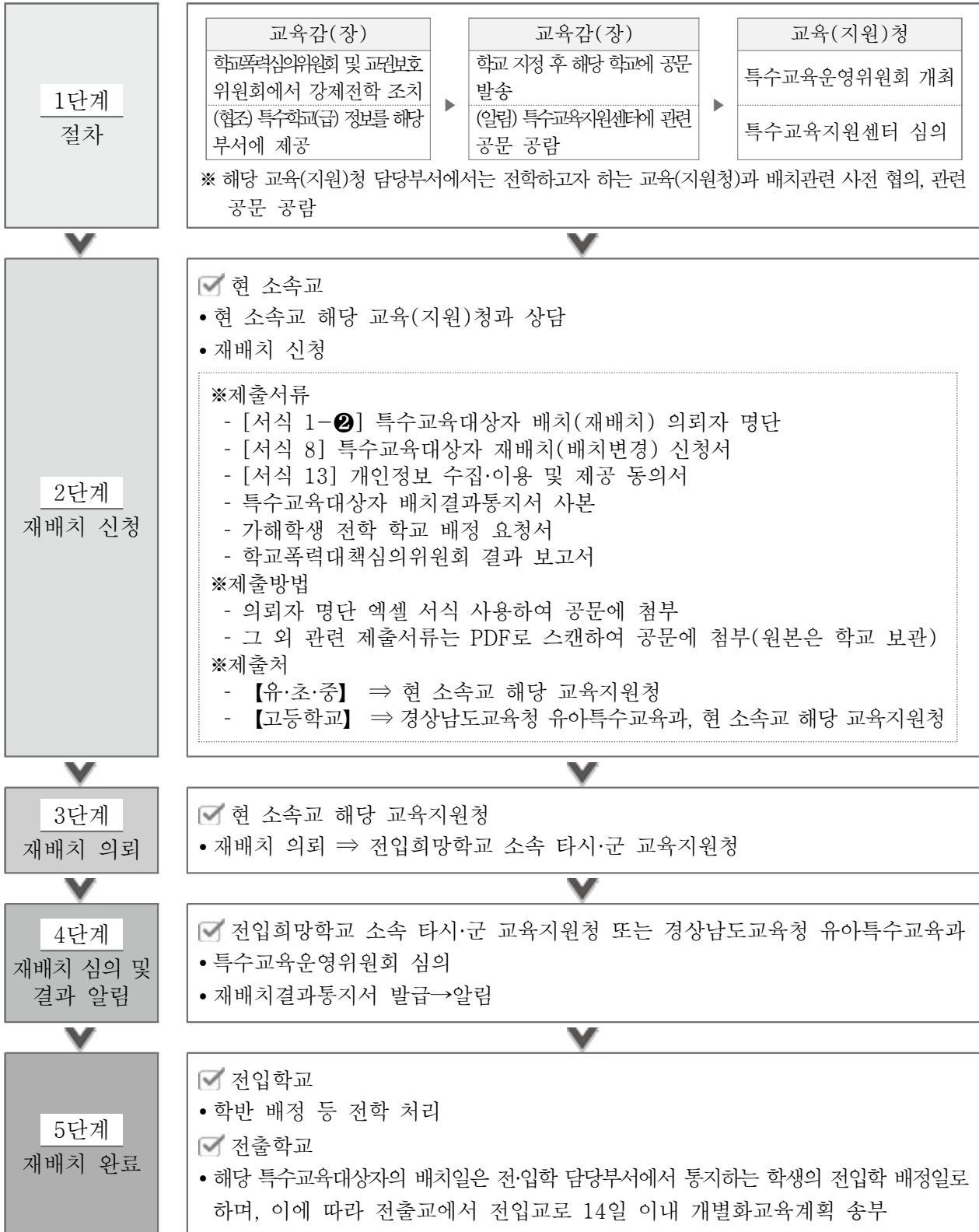


[재배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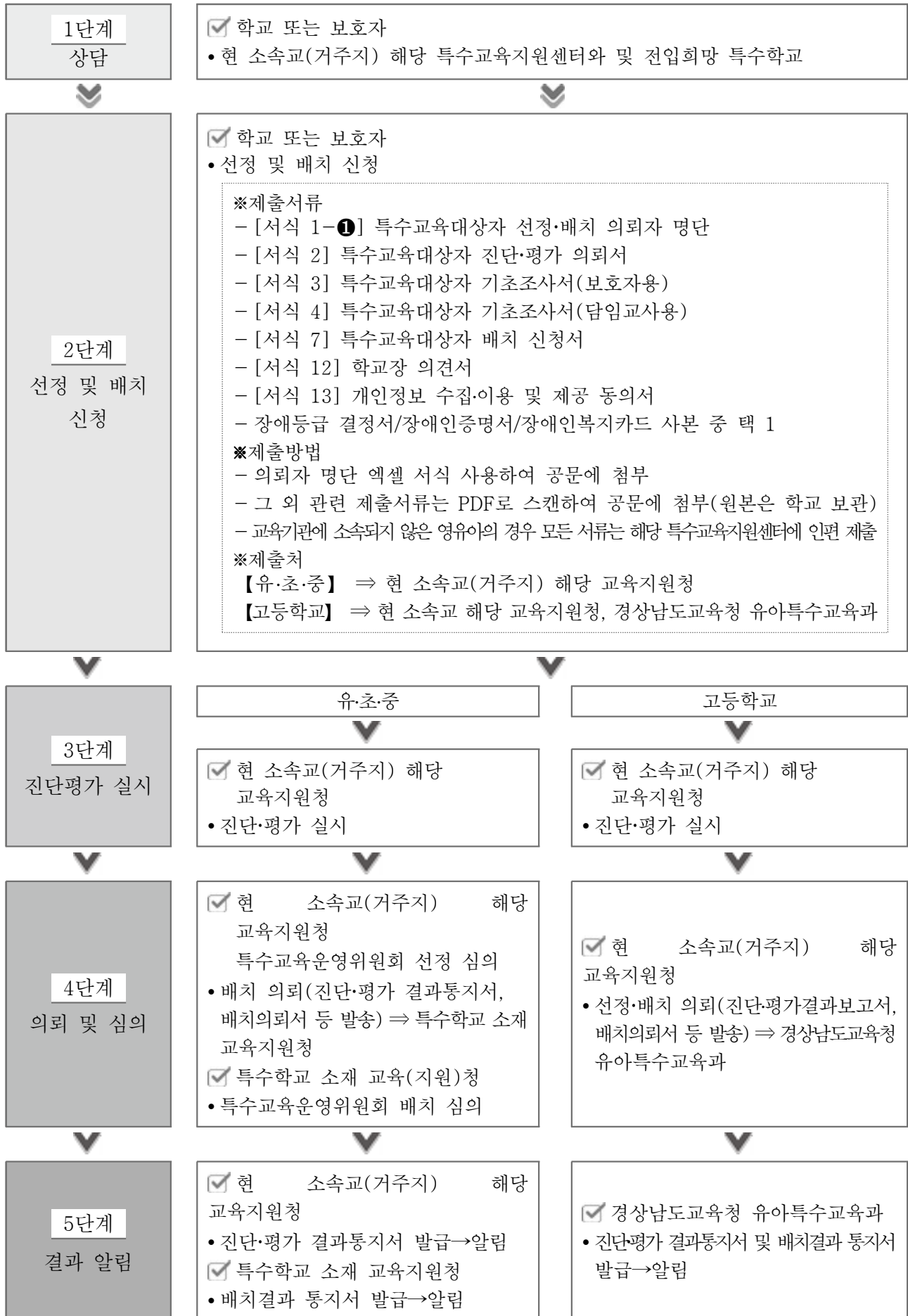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 해당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철저

[재배치]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강제전학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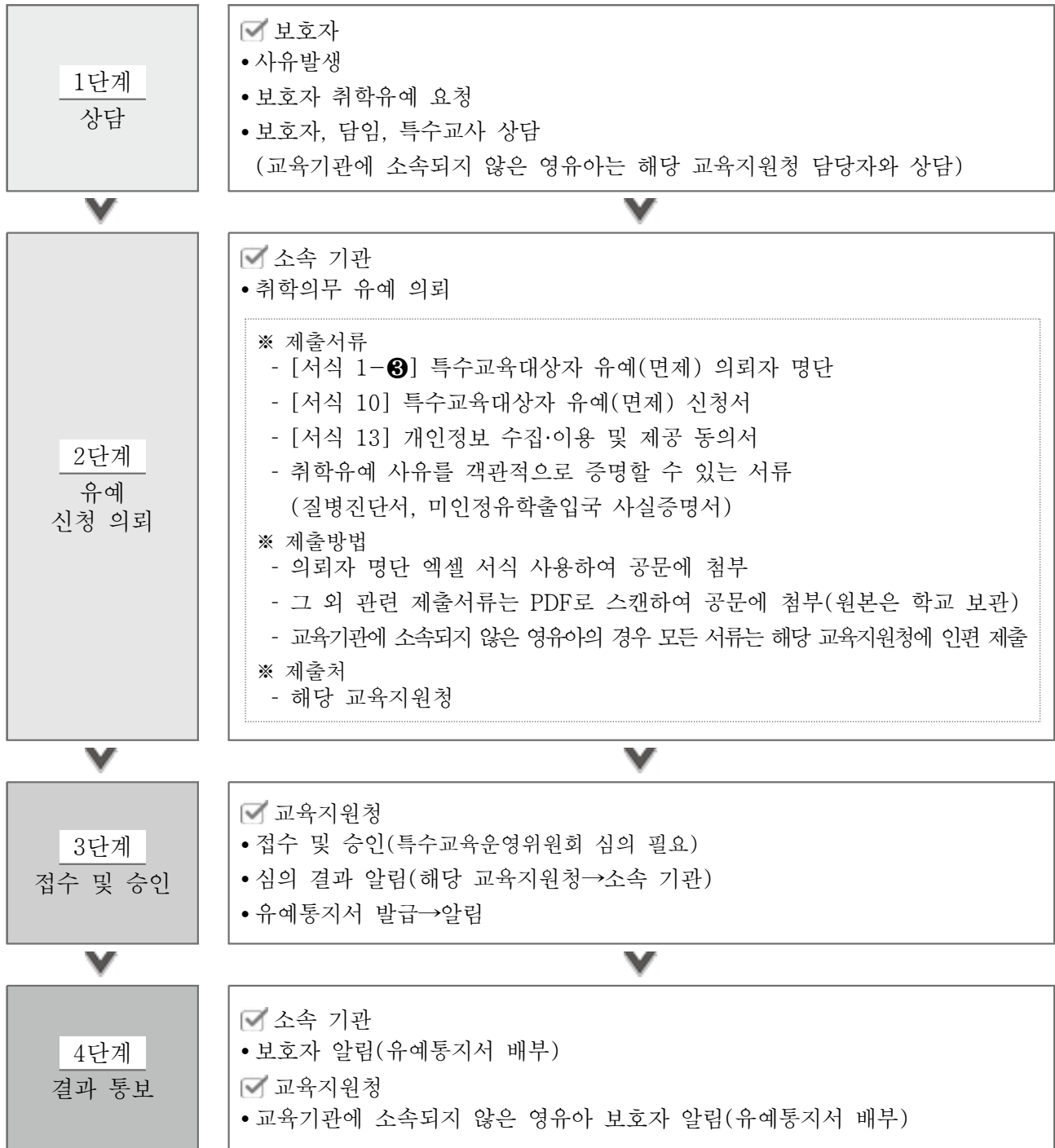
- ※ 특수교육대상자 거주지 및 통학방법, 재배치 학교 정원, 고등학교의 경우 전학 후 졸업가능 여부 등을 전·입학배정협의회(해당 전·입학 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배치학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학교에 대한 사항 심의)
- ※ 특수교육대상자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므로 가해학생 및 학적위반으로 인한 퇴학조치 불가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교육활동 침해 관련 사안 조사) 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행동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 또는 특수교사를 심의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진술 기회 부여(진술조력 필요시 참석)

사. 타 시·군 소재 특수학교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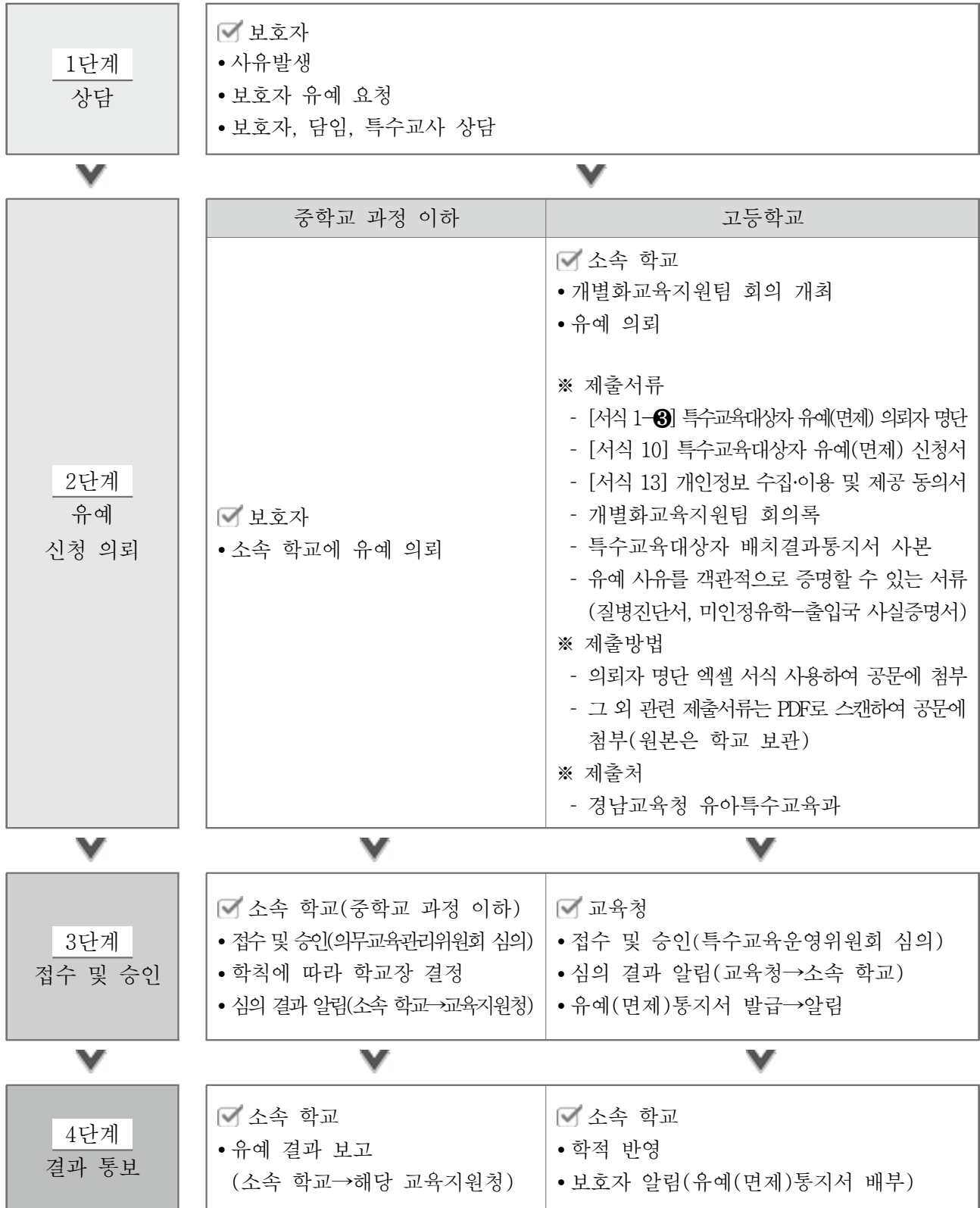


아. 특수교육대상자 유예(취학유예, 학년유예) 및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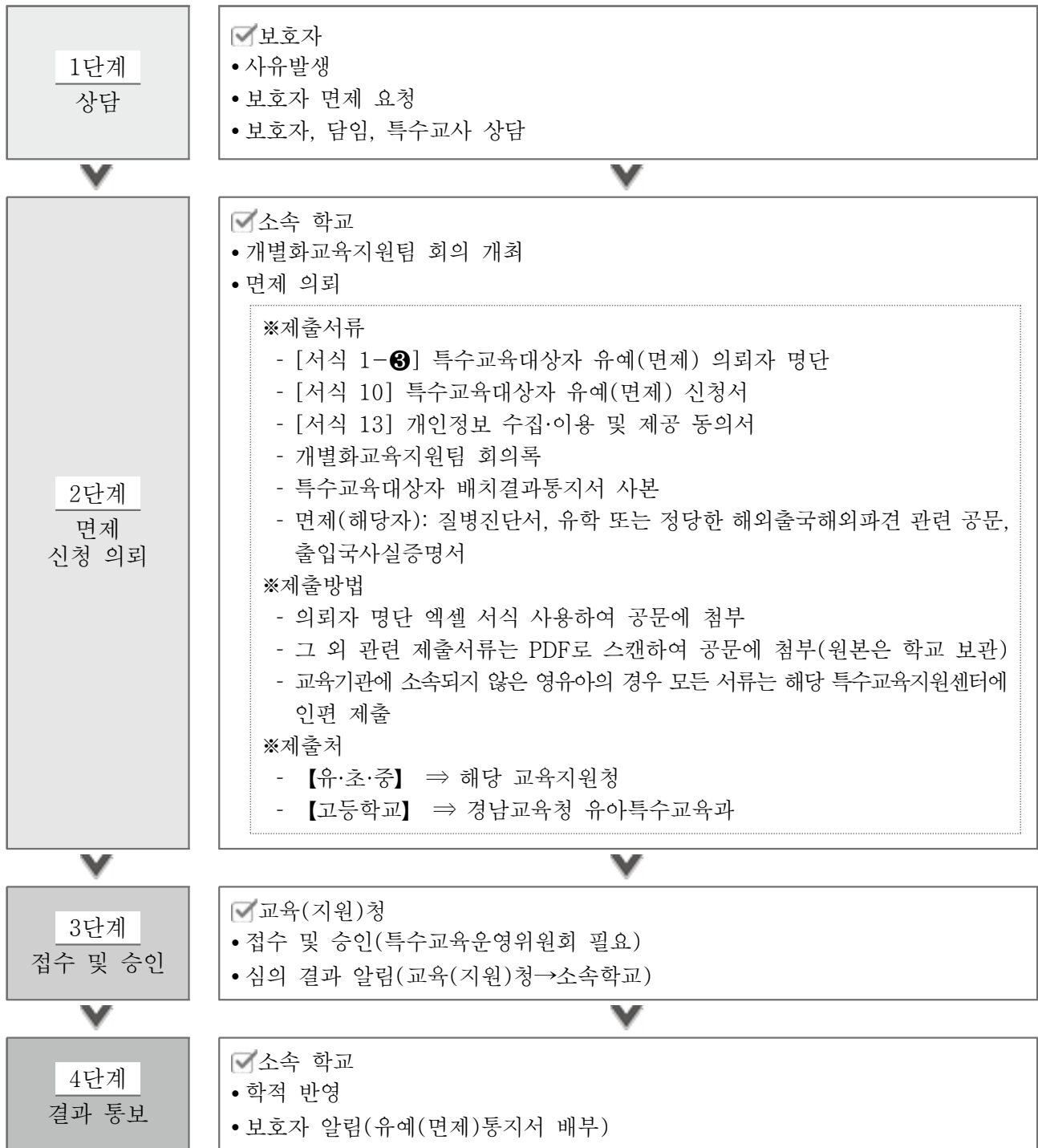
1) 유예 처리 절차



2) 학년유예 처리 절차



3) 면제 처리 절차



4) 유의사항

- 의무교육대상자는 퇴학(자퇴 포함)이 없으며 사유에 따라 유예(면제) 처리함.
-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예(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가 필요함(단, 학년유예는 특수교육 운영위 심의 없이 학교 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보고)

- 특수교육대상자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보호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유예(면제) 결정
- 사망으로 인한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에서 처리 후 보고
【유·초·중】⇒ 해당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경남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학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유예(면제)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이 종료됨을 사전에 안내하고 내용을 숙지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 초등학교 취학유예 후 유치원 교육을 받을 경우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 불가

- *취학유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유예(학년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5) 참고자료

[참고자료] 의무교육단계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9-31호(2019.12.12.)】

- 취학의무의 면제 허가는 다음 사유를 고려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1. 사망한 자
 2.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뇌사, 식물인간 등)으로 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
 3.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
 4. 6개월이상의 인정유학
-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연수하는 것이며,
- 인정유학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 제2호 또는 3호에 의거한 경우만 해당됨.
【2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학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사람
 - 가. 예·체능계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 나.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연과학기술 및 예·체능 분야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다.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3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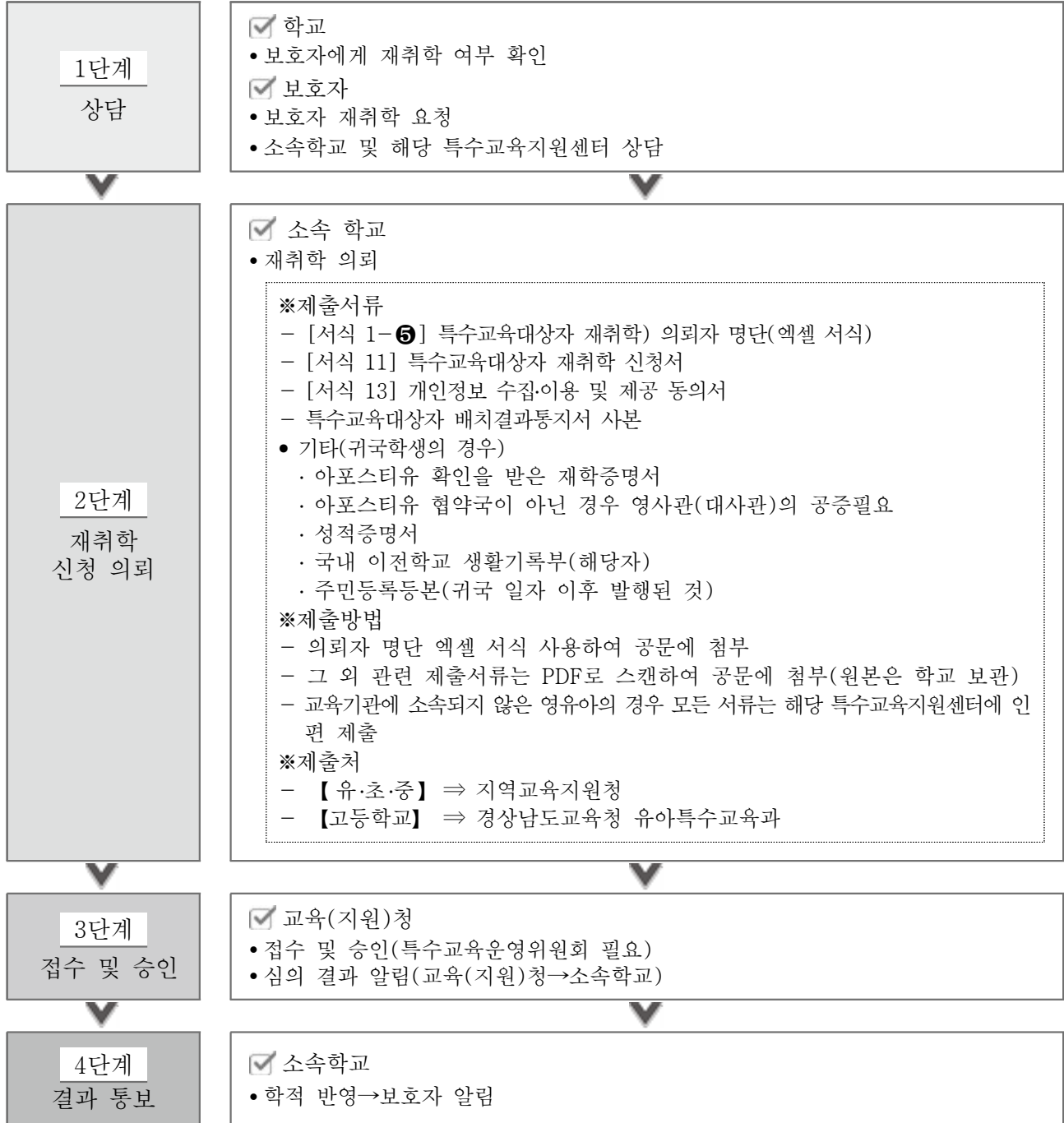
- 가.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 나. 이 영에 따른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사람으로서 해당 외국의 상용어(常用語)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 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였던 사람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 라. 고아,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마. 이 영에 따른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유학 또는 연수 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해당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다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 바.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받은 사람

5. 정당한 해외 출국자

- 가.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교수 등에 의해 부모가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 나.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1인과 출국하고 해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교환교수에 동행하는 경우로 제한하며, 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주기간(재외국민 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제 체류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 기간 등

자.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대상】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유예, 면제,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이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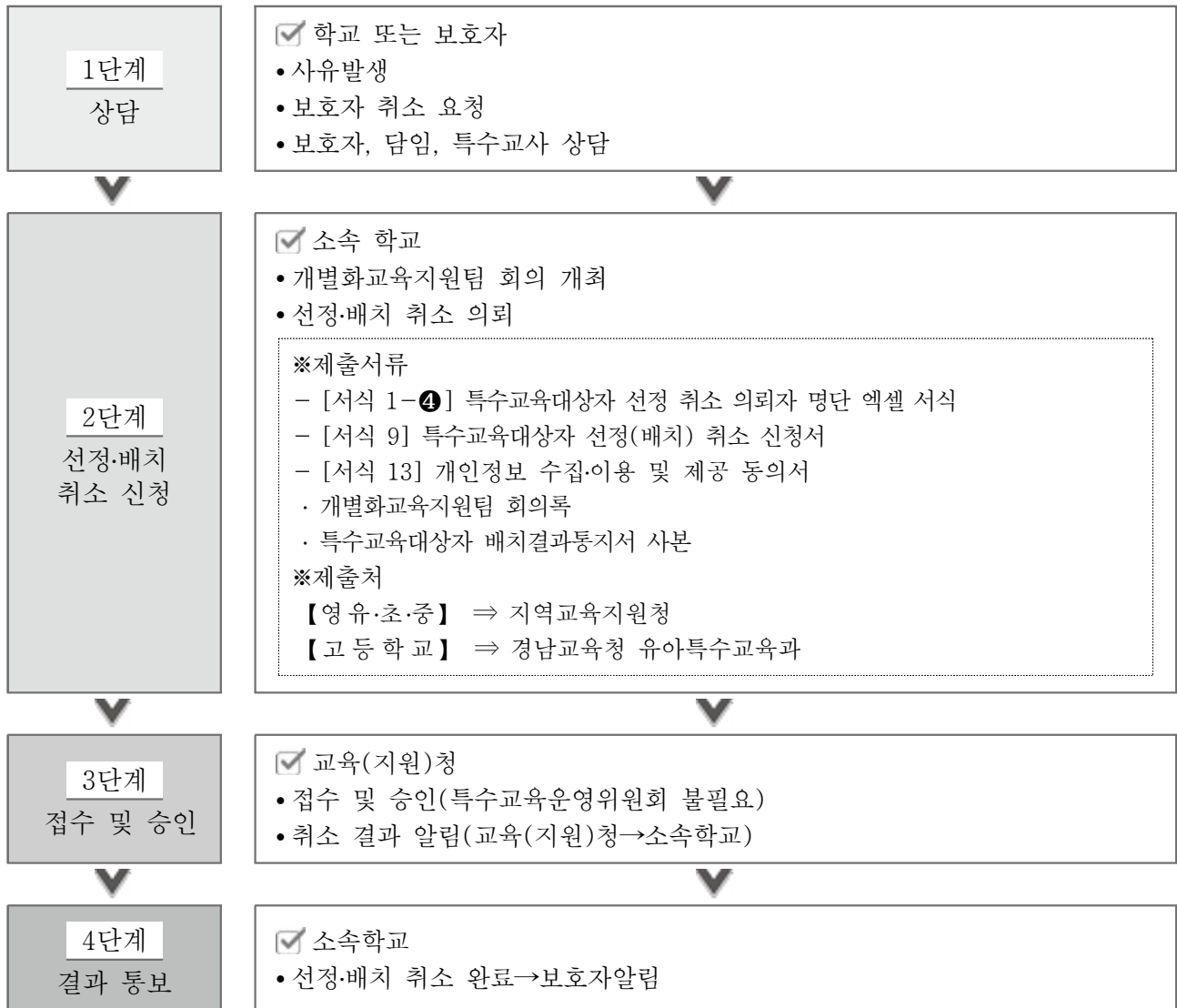
【유의사항】

- 재취학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중인 학생의 재취학에 따른 학년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2항에 의거 학교장이 결정함
- 재취학 시 재배치를 원하는 경우 재배치 절차를 거쳐야 함

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대상】

- 통합학급에서 학습과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특수교육대상자
- 진단·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발견 즉시 선정 취소)
- 학부모가 선정·배치 취소를 원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선정요건이 소멸한 특수교육대상자



【유의사항】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불필요함
- 학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선정·배치 취소 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이 종료됨을 사전에 안내하고 내용을 숙지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 희망에 따라 선정 취소되었으나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각종 편의 제공 철거

서식1-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자 명단(엑셀파일)

순번	배치희망학교						재학학교		성명	성별	도로명 주소	생년 월일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 장애영역	연락처		복지카드		의료적 처치 (편의 제공)	비고
	1희망		2희망		3희망		재학 학교 명	학년						보호자명 (연락처)	담당 교사명 (연락처)	영역	등급 (정도)		
	희 망 학 교 명	배 치 유 형 거 리	희 망 학 교 명	배 치 유 형 거 리	희 망 학 교 명	배 치 유 형 거 리													
1	00초등학교	특수학급 0km	00초등학교	일반학급 0km	특수학교 0km	00초등학교	3	홍길동	남	00시 00로 0길 0	2014-01-01	지적 장애			지적 장애	심한	휠체어		

- ※ 학교명은 공식명칭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등으로 정확하게 기재
- ※ 신입생(상급학교 진학생)은 희망학교명에 1희망, 2희망, 3희망 모두 기재(거주지 가까운 학교를 신청)
- ※ 배치유형은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 거리는 '거주지(집)와 학교간 거리' 뜻하며, 정확하게 기재
- ※ 생년월일은 '0000-00-00' 로 표기
- ※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장애영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의 장애영역을 참조
- ※ 복지카드 미소지 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장애영역'만 표기
- ※ 의료적 처치(편의제공)란은 학생에게 필요한 경우 편의제공이나 특이사항을 간략히 기재
- ※ 비고란은 학교장의견서 제출 시에만 기입할 것

서식1-②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재배치·배치변경) 의뢰자 명단(엑셀파일)

순번	배치 희망 학교						재학 학교			성명	성별	도로명 주소	생년월일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장애영역	연락처		복지카드		의료적 처치 (편의 제공)	비고
	1 희망		2 희망		3 희망		재학 학교명	배치 유형	학년						보호자명 (연락처)	담당 교사명 (연락처)	영역	등급 (정도)		
	희망 학교명	배치 유형	거리	희망 학교명	배치 유형	거리														
1	00초등학교	특수학급	0km	△△중학교	특수학급	0km	00초등학교	일반학급	6	홍길동	남	00시 00로 0길 0	2011-01-01	지적장애			지적장애	심하지 않은	워커	

- ※ 학교명은 공식명칭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등으로 정확하게 기재
- ※ 신입생(상급학교 진학생)은 희망학교명에 1희망, 2희망, 3희망 모두 기재(거주지 가까운 학교를 신청)
- ※ 배치유형은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 거리는 '거주지(집)와 학교간 거리' 뜻하며, 정확하게 기재
- ※ 생년월일은 '0000-00-00' 로 표기
-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장애영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의 장애영역 표기
(최초 선정 시 배부된 진단·평가결과 통지서 참조)
- ※ 복지카드 미소지 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장애영역'만 표기
- ※ 의료적 처치(편의제공)란은 학생에게 필요한 경우 편의제공이나 특이사항을 간략히 기재
- ※ 비고란은 '통지서사본' 표기

서식1-③ 특수교육대상자 유예(면제) 의뢰자 명단(엑셀파일)

순번	소속	배치 유형	성명	성별	학년	생년 월일	유예 (면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장애영역	도로명 주소	연락처		복지카드		비고
										보호자명 (연락처)	담당교사명 (연락처)	영역	등급 (정도)	
1														

- ※ 소속은 공식명칭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등으로 정확하게 기재
- ※ 배치유형은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현재 배치유형을 기재
- ※ 생년월일은 '0000-00-00'로 표기
- ※ 유예(면제)란은 유예 또는 면제 중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
-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장애영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의 장애영역 표기
(최초 선정 시 배부된 진단.평가결과 통지서 참조)
- ※ 복지카드 미소지 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장애영역'만 표기
- ※ 취학유예 및 재학 중 유예도 모두 본 양식 사용

서식1-④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의뢰자 명단(엑셀파일)

순번	소속	배치 유형	성명	성별	학년	생년월일	도로명 주소	연락처		비고
								보호자명 (연락처)	담당교사명 (연락처)	
1										

- ※ 소속은 공식명칭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등으로 정확하게 기재
- ※ 배치유형은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현재 배치유형을 기재
- ※ 생년월일은 '0000-00-00'로 표기

서식1-⑤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의뢰자 명단(엑셀파일)

순번	재취학 학교명	배치 유형	학년	성명	성별	도로명 주소	생년 월일	장애 영역	연락처		복지카드		비고
									보호자명 (연락처)	담당교사명 (연락처)	영역	등급 (정도)	
1													

- ※ 학교명은 공식명칭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등으로 정확하게 기재
- ※ 배치유형은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현재 배치유형을 기재
- ※ 생년월일은 '0000-00-00'로 표기
-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장애영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의 장애영역 표기
(최초 선정 시 배부된 진단.평가결과 통지서 참조)
- ※ 복지카드 미소지 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장애영역'만 표기

[서식3]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보호자용)

서식 3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보호자용)		※기초정보로 작성된 예시 작제 후 작성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보호자용)				
대 상 자	성명	성별	나이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소속	(연락처: 학교 제학년 유치원 만세		
	장애종류 현황	☐ 중복 (☐ 장애 정도) ☐ 미중복 ※ 중복 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일련, 뒷면 필수 첨부		
거 주 지 소 지 요 구	특수교육대상자 (신체(신장) 영역) (국학상태 안함)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뇌기능장애 ☐ 전신장애 ☐ 발달장애(언어장애미만) ☐ 기이체장애 ☐ 학습장애 ☐ 정서·행동장애 ☐ 자폐증장애		신경 영역 ☐ 동의 변경 동의 ☐ 동의하지 않음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이력	☐ 없음 ☐ 있음 (1회, 2회, 3회 이상)		
	심리평가 실시 여부	☐ 실시 ※ 1년 이내 실시한 심리평가 기재(재능검사와 겹쳐 검사도구 선택한 기재) (검사기관) 검사일자 실시결과		
	치료교육 이력	☐ 없음 (치료영역) 치료기간 : XXXX.XX.XX ~ XXXX.XX.XX ☐ 있음		
	약물 복용 이력	☐ 없음 ☐ 있음 (복용약품(종류)) 복용기간 : XXXX.XX.XX ~ XXXX.XX.XX		
내 용	발육 및 건강상태 발육 과정에 있어선 결박이나 구멍 치열 구멍 열림 등; 사후관리 중인 보호자가 유의사항, 진찰소견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기초 국어 학습 (영어) 수형 수학 능력 (수학)	초등학교 1학년과 동일하게 평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생활 적응능력	초등학교 1학년과 동일하게 평가		
	특수교육대상자 (신체(신장) 사후)	특수교육대상자로 회복하여 한 시기를 주당적으로 관리		
		년 월 일		
		보호자 (인)		
경상남도교육청(경상남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서식5]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학습장애)

서지 5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 (학습장애)		※기초임으로 작성한 예시 작성 후 작성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 (학습장애) (담임교사용)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소속	학교 세 학년 호차원 단 세												
담임교사	담임교사 연락처												
건강상태 및 거주환경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학습장애, 기타 장애 유무 본교에 입학한 후 거주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학업성취 진행결과	검사 도구			검사 일자	2000. 00. 00								
	검사 결과												
	평가 일자	2000. 00. 00											
	과목	국어	영	수학	도	미							
		도	달	미	달	도	달	미	달	도	달	미	달
초기 학습능력 평가 결과 (읽기 쓰기 수학)	국문 본 학습능력 평가 결과(초기 학습능력) 학교입학결과 결과 등												
중재 기간 및 지도 내용 (읽기 쓰기 수학)	중재 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중 10회)											
	지도 내용	지도교사											
	지도 내용	지도교사 학습내용이나 중재일지일기 결과											
중재 후 현황파악승진 (읽기 쓰기 수학)	국문 본 학습능력 평가 결과(중재후) 결과												
종합비고	학습장애 인정 정도에 대한 담임교사 의견 작성												
년 월 일 교사 (인)													
경상남도교육청(경상남도교육청지원교육청) 귀하													

■ 소속 교육기관이 없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작성

[서식6]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건강장애)

서식 6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건강장애) ※가용임으로 작성한 배치 상태 후 작성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건강장애)									
대 상 자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도로명주소	(연락처:)							
기 초 조 사 내 용	소속	학교 계 학년 유치원 만 세							
	장애등록 현황	□ 등록 (장애 정도:) □ 미등록 ※ 등록 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일련, 뒷면 필수 첨부 특수교육진흥법으로 인한 학교생활지 어려움을 등록 구직적으로 기재							
	별명 및 특성								
	의사 진단서 요약	출 생 연 도	수업 일수	학교출석 일수	미등록일수 (월력수업일수)				
	※3개월이내 발급	2026			()				
		2025			()				
		2024			()				
	예상치료 기간	희망수업 지원영역	□ 병행학교입급 □ 원격수업신청						
	학교생활 모습								
	보호자 의견	보호자 (인)							
담임교사 의견	교사 (인)								
년 월 일 학교장 (인)									
경상남도교육감(경상남도 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1) 건강장애 심정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학업수행 등에 있어서 교육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
※ 유의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학업에 문제가 있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대상
(예 : 심장병으로 3개월 이상 통원치료를 해야 하나 학업에는 지장이 없을 경우 대상자가 아님)
※ 출결사항 학교출석일수에는 실제 등교일 75%, 미등교일수에는 실제 미등교일 기재, 단 (월호기에는 월력수업
일수를 정확히 기재

[서식7]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서식 7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가용임으로 작성한 배치 상태 후 작성

()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소속	학교 유치원	계 만	학년 세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여
도로명주소				연락처		
희망지	희망 학교명	거주지(집)-학교간 거리 (Km)	배치유형(희망에 √)			
1희망		0.00 Km	□ 일반학교, □ 특수학교, □ 특수학교			
2희망		0.00 Km	□ 일반학교, □ 특수학교, □ 특수학교			
3희망		0.00 Km	□ 일반학교, □ 특수학교, □ 특수학교			
장애영역	복지카드 장애영역 ()장애	등급(정도)	구분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영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해당 영역 기재(필수)				
보호자 의 견						
위 희망 () 학교에 배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자(학생) (인) 보호자 (인)						
경상남도교육감(경상남도 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						

※ 신입생 : 희망학교 한에 1희망, 2희망, 3희망 모두 기재(거주지 가까운 학교를 신청)
※ 특수학교 배치희망자는 희망학교명만 기재

[서식8]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배치변경) 신청서

서식 8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배치변경) 신청서 ※가용임으로 작성한 배치 상태 후 작성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배치변경) 신청서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00.00.00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장애영역	지적장애		
도로명주소									
소속학교	학교 유치원	계 만	학년 세	(특수학교급, 일반학교급, 특수학교)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배치변경	희망(변경후)								
	현재(변경전)	희망지	희망 학교명	거주지(집)- 학교간 거리(Km)	배치유형				
	○○고등학교 (일반학교)	1희망	○○ 고등학교	0.00 Km	특수학교				
		2희망	○○ 고등학교	0.00 Km	일반학교				
		3희망	○○○○학교	0.00 Km	특수학교				
사유	자필로 기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인) 학교장 (인)									
경상남도교육감(경상남도 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의뢰자 명단(엑셀 서식), 배치변경 신청서,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배치결과통지서 등
관련서류 스캔하여 공문에 첨부
※ 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및 가려가 미표기된 등본을 제출
※ 반드시 보호자 자필 서명 및 날인

[서식9]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

서식 9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 ※가용임으로 작성한 배치 상태 후 작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00.00.00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장애영역	지적장애
도로명주소					선정배치 취소()	선정배치 취소()	
소속학교	학교 유치원	계 만	학년 세	(특수학교급, 일반학교급, 특수학교)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사유	보호자 자필로 기재						
관련서비스 지원 중단 안내	유예(면제)일 이후부터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이 종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산여부	확인 □	
배치()에 ()	□ 해당 소속교에 반납완료 하였음: 재요지원비 전자카드						
	□ 해당 소속교에 반납완료 하였음: 특기적성교육지원카드						
	□ 치료지원비전자카드와 특기적성교육지원카드 미발급확정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특수 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인) 학교장 (인)							
경상남도교육감(경상남도 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의뢰자 명단(엑셀 서식), 선정취소 신청서,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 배치결과통지서 등 관련서류
스캔하여 공문에 첨부
※ 반드시 보호자 자필 서명 및 날인

2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가. 운영 개요

【지원대상】 병·의원 및 치료지원 제공기관 치료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기관 및 영역】

- 병·의원(한의원제외):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 치료지원 제공기관: 언어재활, 미술·음악·놀이재활, 청능재활, 심리운동, 감각재활, 운동재활, 재활심리, 행동재활, 보행·시기능훈련

【지원 금액】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지원 방법】 치료지원 전자카드, 영수증 청구(병·의원에 한함)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과 중복 불가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 투자사업 등 타 기관 지원 서비스의 동일 영역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나. 치료지원 전자카드 지원

【발급대상 및 발급처】

- 발급대상: 치료지원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발급처: 20개 특수교육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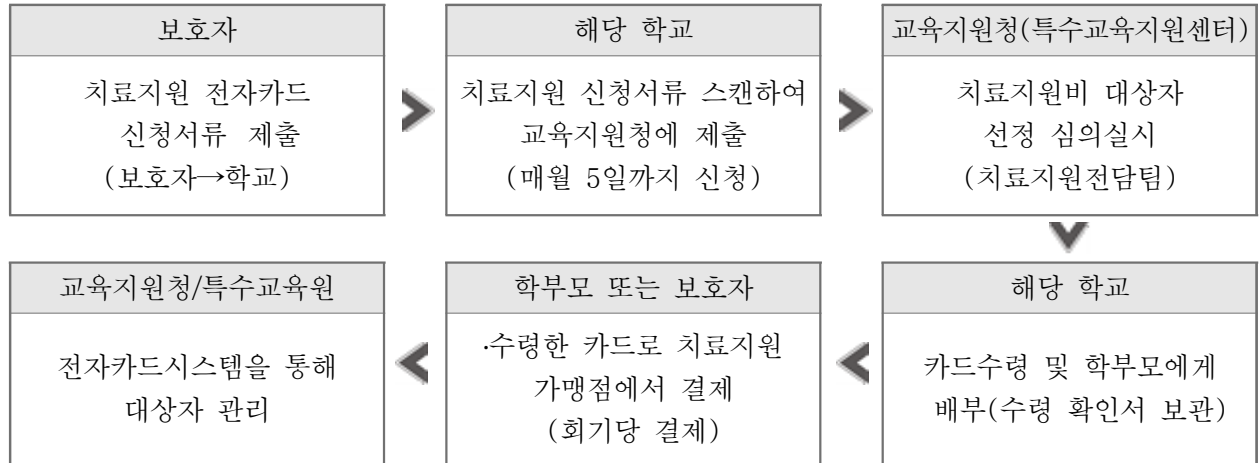
【치료지원 전자카드 누리집】

- 홈페이지 주소: <http://gnen.nhdream.co.kr>

【이용방법】

- 지원금액: 월 150,000원
- 이용장소: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미등록 가맹점은 이용 불가)
- 이용방법: 이용 한도 내에서 결제(신용카드 결제방식과 동일)
매월 1일 생성, 말일(24:00) 해당 월 잔여 한도 자동 소멸

【발급절차】



【치료지원 전자카드 이용 주의사항】

- 회기당 결제 원칙(수업 당일 1회차 치료비 결제)
- 치료지원 전자카드는 반드시 보호자가 소지하며, 제공기관에서 보관 불가
- 치료지원 전자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현금화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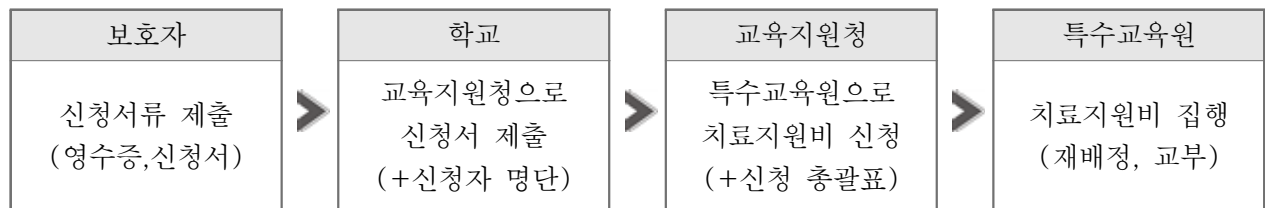
다. 치료지원비 영수증 청구

【신청대상】 전자카드 미가맹 병·의원에서 치료지원을 받는 치료지원 대상자

【이용방법】

- 지원금액: 월 15만원 이내
- 지급방법: 진료내역서를 기준으로 치료지원에 한해 지급(검사비, 약재비 등 지급불가)

【청구절차】



【청구기한】

구분	1분기 (2025.12~2026.2월)	2분기 (2026.3~6월)	3분기 (2026.7~9월)	4분기 (2026.10~11월)
학교→교육지원청	2026. 2. 5.(목)	2026. 7. 3.(금)	2026. 10. 14.(수)	2026. 12. 4.(금)
교육지원청→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2026. 2. 10.(화)	2026. 7. 9.(목)	2026. 10. 20.(화)	2026. 12. 10.(목)

라. 치료지원제공기관 행정점검

【점검주체】 시·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점검대상】 경상남도 18개 시·군교육지원청 관내 치료지원 제공기관

【점검방법】 지정기간 중 1회 이상 현장 점검

【점검내용】

- (기관현황) 기관 유형, 승인영역에 대한 치료사 보유 현황, 관리 방안 등
- (제공환경) 위치 적정성, 시설환경의 쾌적성,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시설 적합성 등
- (제공인력) 제공인력의 전문자격 소지, 범죄경력 조회(범죄경력부존재 서약서) 유무 등
- (기 타) 이용계획서 및 치료지원 제공 기록지 작성, 치료지원비 부정 사용 여부

[치료지원비 영수증 청구 지급 신청서]

20.년도 () 분기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급 신청서					
학 생 명			학 반		
보호자명		관계	수령계좌		
주 소			전 화		
치료지원 목적 <u>물리치료, 작업치료, 생활훈련(의양보호) 기타 ()</u>					
치료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보호자기재	신청액	월	원	분기액	원
		월	원		
		월	원		
※달입기재	지급액	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확인자(특수학급담당 또는 담당)				인	
() 학교장 귀하					
붙임서류		1. 영전 진료비 영수증 1부			

[치료지원 제공기관 현장 점검표]

3. 시설안전 현황					
기관명	작업자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2. 이용 현황					
제외업체					
제공 업체 수	성	서비스 제공방식	☐ 개별 프로그램 ☐ 그룹 프로그램		
3. 서비스 관리 실태점검 항목					
순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 (양호)	△ (미흡)	× (불량)
1	인력 기준	☐ 직회사의 자격증 소지 여부 ☐ 직회사의 소지 자격과 승인 영역으로 직회직원 일치			
		☐ 채용인력지 원자질리소지 필요사항은 영의경계 부주의 치당일 보온 여부			
2	세 조 관 점	☐ 지리지 지원 영역에 달맞은 시설 및 의료구비 현황 ☐ 열려라이비,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보 현황 ☐ 소파가 및 대피로 등 안전을 위한 관리 확보 현황 ☐ 의료지원 계층 공간 내부 출입 가능 여부(운영장 또는 CCTV 설치) ☐ 비상책임보원 및 화재보험 가입현황 공권 절차 확인)			
		☐ 비스 계층개회의 저원상 여원(이음개회의 및 계층개회의 확인) ☐ 치료지원비 상원 계층(이음) 관리 여부 - 이용계층시설은 통로 계층일 및 계층 관리 변경 사용을 확인			
3	역량 (1/3)	☐ 치료지원 계층시설 동일할 지원 여부(시설, 단거, 치료지 등) ☐ 비스 계층 내역과 계층 관리 일치 여부			
		☐ 승인 단거와 실제 단거가 일치 여부(실제 단거보다 전거라도 단거로 비자적 만지나 승인 단거 지 관리 필요 할지) ☐ 이 계층 비주치의 동일 영역 지원 여원(이음) 이용계층지 확인)			
가나다서					

3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가. 운영 개요

-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특수학교 교내강좌 운영,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 지원(영수증 청구)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 특수학교 학생(전공과 학생 제외, 특수교육 대상자 미선정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지원불가)

【지원과목】 예·체능 및 직업교육 관련 과목

【제외 대상】

-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 학생
- 특수학교 방과후 과정(돌봄) 참여 학생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수강 학생(유아학비 방과후 과정지원비 수혜 학생)
- 다문화학생 맞춤형교육 진로·적성 영역 지원비 수혜 학생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사업(방과후활동서비스)과는 중복 지원 가능

나.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수강기관(가맹점)】

- 예·체능 및 직업교육 관련 학원 또는 교습소, 장애관계기관 등

【수강 과목】 예·체능 및 직업교육 관련 과목(웅변, 공예, 컴퓨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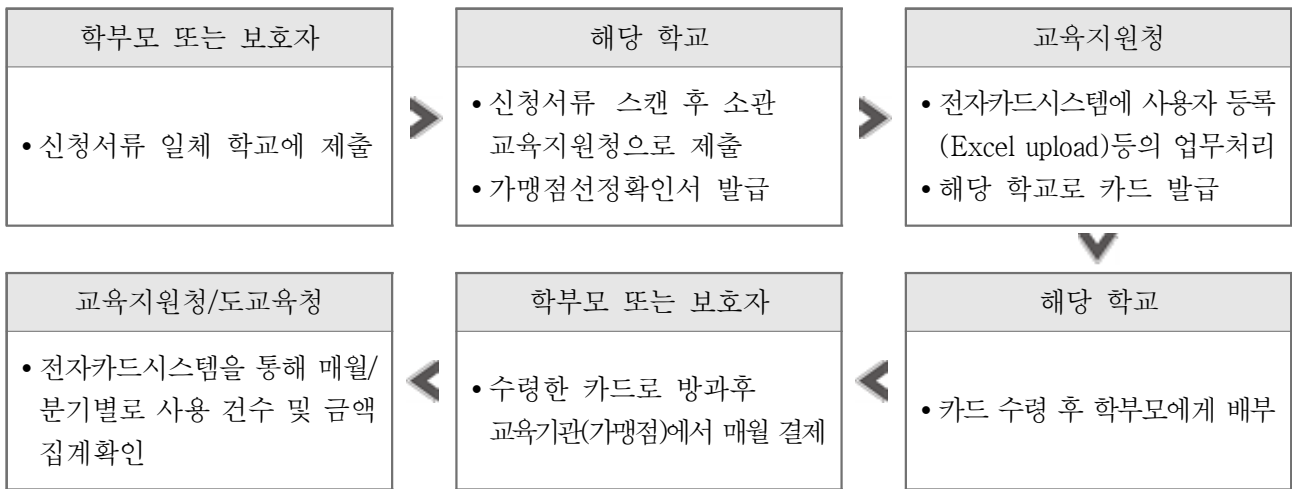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인 1강좌, 월 12만원 한도 내(미신청 및 결제 누락으로 인한 소급 지급 불가, 12만원 한도 내 다회결제 가능)
- 이용방법: 이용한도 내에서 결제(신용카드 결제방식과 동일)
- 이용한도: 매월 1일 12만원 생성, 말일 해당 월 잔여 한도 자동 소멸
- 이용장소: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가맹점(미등록 가맹점은 이용 불가)

【신청 방법】

학부모 또는 보호자→학교	학교→교육지원청	특기적성교육기관→농협
① 특기적성교육비신청서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특기적성교육비신청서 스캔 ② 특기적성교육비신청 자료	① 가맹점 선정 확인서 ② 가맹점 등록 및 제신고서
- 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는 학기 초 특기적성교육카드안내문을 학부모에 안내 - 기등록된 교육기관의 경우 농협 등록 절차 생략		

【전자카드 발급 절차】



- ✎ 학교에서는 선정취소, 유예, 고등학교 졸업 등 카드 탈퇴(정지) 사유 발생 시 소관 교육지원청으로 해당자 명단 및 탈퇴(정지) 사유를 제출하고, 반드시 해당 카드를 회수하여 폐기. 교육지원청에서는 경남특기적성교육지원카드 사이트에서 해당 학생 카드 탈퇴(정지) 처리
- ✎ 카드 분실, 승급, 졸업 등 변동 사유 발생 시, 경남특기적성교육지원카드 사이트에서 정지, 수정, 탈퇴 처리 후 재신고 사유를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카드 재발급
- ✎ 기존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수장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자동으로 가맹점에서 해지되므로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규 가맹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다. 특수학교 교내강좌 운영

【지원 방법】 시간당 강사료 30,000원 및 강좌당 연간 500,000원 운영비 지원

【제외 대상】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이용 학생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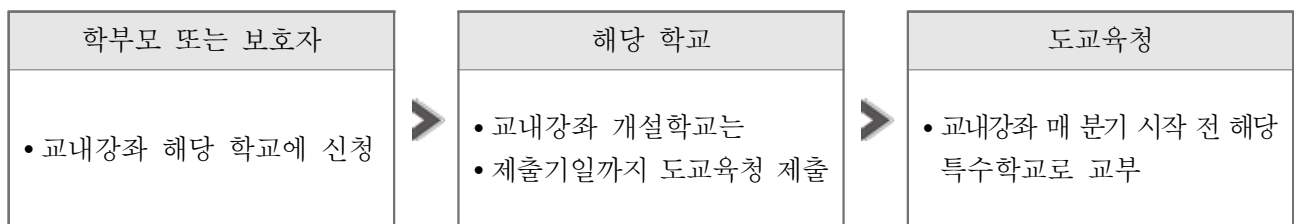
【운영 방법】

- 운영강좌 결정: 학부모 희망 조사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강좌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을 업무담당교사의 지도에 따라 지도강사가 작성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

- 운영시간: 정규수업 종료 후 2시간 내외(학교 실정에 따라 계획 수립)
- 강사계약: 강사자격기준, 강사료,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은 당사자(학교장과 강사)간의 계약으로 설정(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는 내부강사(교사)도 가능)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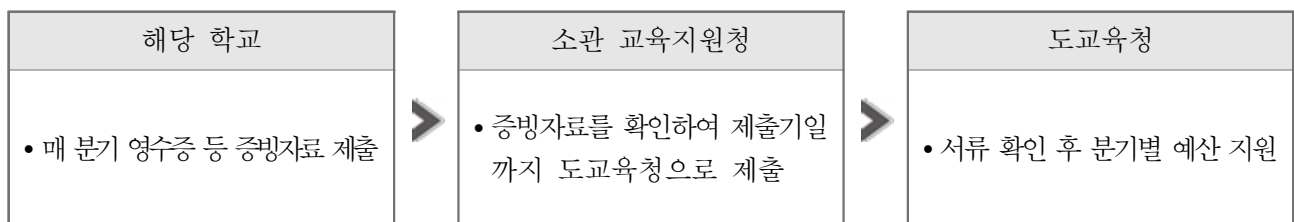


라.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지원 대상】 일반학교 방과후학교(예.체능, 직업 관련)수강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금액】 월 12만원 한도 내 분기별 지원(재료비 미지원)

【지원 방법】



[특기적성교육비 신청서]

(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신청서(신규, 변경)					
학 생 명	○○○	생년월일 (성별)	○○.○○.○○ (남 여)	학년, 반	○학년 ○반
보 호 자 명	○○○	관계		특수교육(방과 선정·배치일 (급별)	○○.○○.○○
주 소				전 화	
수 강 영 역			수 강 과 목		
교육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교육기관전화			대표자명		
위 특수교육대상자의 특기적성교육을 위해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확인자(특수학급담임 또는 담임) 인 ()학교장 귀하					
붙임서류	1. 주민등록등본(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최초 신청 시 2. 특기적성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초 신청 시				

[특기적성교육카드 안내문]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 특기적성교육카드」 안내문

경상남도교육청 '경남 특기적성교육 지원카드'란? (홈페이지 : http://gwr.eddream.co.kr)

- 대상 학생이 경남 도립학교 교육 지원카드 발행을 신청하고 발행하는 데 사용하는 카드
- 발급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월 1회 최대 1만원 이내
- 카드사용 가능

발급학교

대상학교

지원금액증명

경남 특기적성교육 지원카드 발급

대상 학생 안내사항

- 발급대상 : 일반 교육지원청 / 배부 : 일반 학교
- 신규 및 재발급(부실 및 도발)
- 지원대상 : 대상학생이 해당학교 신청한 특기적성 교육기관
- 지원방법 : 1인당 월 1회 10만원 이내 사용
- 재발 1인당 1회
- 발급 날짜 : 해당 월 1회까지 사용가능

가맹점 안내사항

- 발급 대상 : 경남 특기적성교육지원청에서 발행한 신청 절차
- 대상학생은 해당학교에서 발급받은 특기적성교육기관
- 사업자등록증 학교에 제출
- 학교는 가맹점 신청 후 '가맹점 선정 확인서' 배부
- 주 신청한 학교기관을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가지고
- 발급에 가맹점 등록(가맹점 등록 후 5일 이내는 농협에서)
- 농협 가맹점에서는 가맹점 등록일부 제외
- (농협에서 2일 이내로 발급 가능)
- 결제기간 : 1인당 월 1회 10만원 이내 사용
- 결제기간 : 1인당 월 1회 10만원 이내 사용
- 결제기간 : 1인당 월 1회 10만원 이내 사용

일반학교 및 일반 학생 안내사항

- 발급 대상 : 일반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 카드 신청 및 대상 학생의 등록
- 카드 사용 : 일반학교에서 사용
- 카드 사용 : 일반학교에서 사용
- 카드 사용 : 일반학교에서 사용

일반학교 및 일반 학생 안내사항

- 발급 대상 : 일반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 카드 신청 및 대상 학생의 등록
- 카드 사용 : 일반학교에서 사용
- 카드 사용 : 일반학교에서 사용
- 카드 사용 : 일반학교에서 사용

[특기적성교육지원 전자카드 가맹점 선정 확인서]

특기적성교육지원 전자카드 가맹점 선정 확인서	
경상남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기적성을 개발하고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가 해당 교육비를 신청하고 교육청에서 분기별로 영수증을 제출하여 후 지원받는 시스템에서 2016. 3월부터는 카드결제만으로 교육비 신청 및 지원까지 해결되는 교육지원전자카드제로 변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특기적성교육지원전자카드 가맹점을 희망하여 선정된 기관은 아래 선정결과에 따라 인근 농협에 방문하여 가맹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특기적성교육지원카드 가맹점 선정절차) ① 대상학생은 희망하는 특기적성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학교에 제출 ② 학교는 가맹점 선정 후 '가맹점 선정 확인서' 배부 ③ 선정된 제공기관은 확인서와 관련서류를 가지고 인근 농협에 가맹점 등록 (여러 학교에서 선정확인서를 받더라도 한 장만 농협에 제출) ④ 농협 영업점에서는 가맹점 등록업무 처리(등록처리 3일 후부터 결제 가능) [첨부서류] - 개인사업자 : 가맹점신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협)통장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법인사업자 : 가맹점신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협)법인 통장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원인감증명서(사원인감증명서 사인 제출) 각 1부	
신청기관명	
0000. 0. 0. 0 0 0 0 학교장	

[특기적성교육비(일반학교 방과후 수강자) 지급신청서]

()년 (/4분기)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급신청서			
학 생 명	학급(반)명 (급별)	학 반	
보 호 자 명	관계	수명제과	
주 소	전 화		
수 강 과 목			
교육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교육기관전화	대표자명		
■학부모기계	신청액	월액 :	원, 분기액 : 원
■담임기계	지급액 (/4 분기)	원	
위 특수교육대상자의 특기적성교육비를 위해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확인자(특수학급담임 또는 담임) 인 ()학교장 귀하			
붙임서류	1. 분기별 영수증 1부. (※ 간이세금영수증 사용 불가) 2.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초 신청 시 3.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초 신청 시		

4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및 순회학급 운영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 목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중 순회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

● 순회교육 지원 대상

- 유.초.중.고등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 설치교 포함)에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 순회학급이 없는 학교의 재택 또는 시설 학생 중 소속학교에서 순회교육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

재택순회교육대상자 지원

- 재택 순회교육: 해당 지역 순회학급 담당교사가 순회교육 실시
- 순회학급이 없는 경우: 해당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또는 소속학교 특수교사가 순회교육 실시

● 운영기준

- 순회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업 지원은 학생당 주 2회 이상, 교사당 12시간 이상으로 운영 권장(운영팀장의 경우 센터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운영 시간은 학교급별 시정에 따름

특수교육지원 순회교사의 역할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 1:1 수업(기초학습, 진로직업교육 등), 그룹수업, 상담활동,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지원

나. 통합교육 협력교사

● 목적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

● 대상자 선정

- 일반학급(특수학급 설치교 포함)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중 통합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
- 통합교육지원을 위한 대상자는 교육지원청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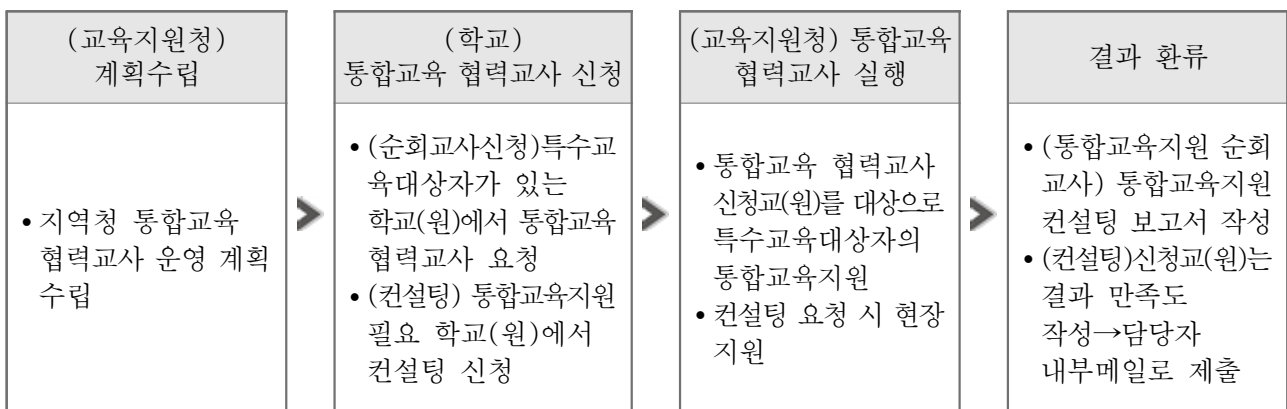
● 운영기준

- 소속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여건을 따라 횟수를 결정하되, 학생당 주 2회 이상 순회교육 실시
- 협력수업 및 교육과정 수정을 위한 사전 협의시간도 순회교육 시간으로 인정
- 운영 기간은 분기 단위, 학기 단위, 년도 단위 등 학교와 센터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
- 학교 급별 단위시간을 준하여 운영하되, 학생 및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통합교육 협력교사의 역할

- 보편적 학습설계를 통해 일반교사와 협력수업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일반학급 수업 참여 기회 확대
 - 통합학급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 및 협력수업, 개별화교육지원팀 참여
- 상담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교육 지원 및 상담활동,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통합교육지원단의 업무 지원

【지원절차】



다. 특수학급 결보강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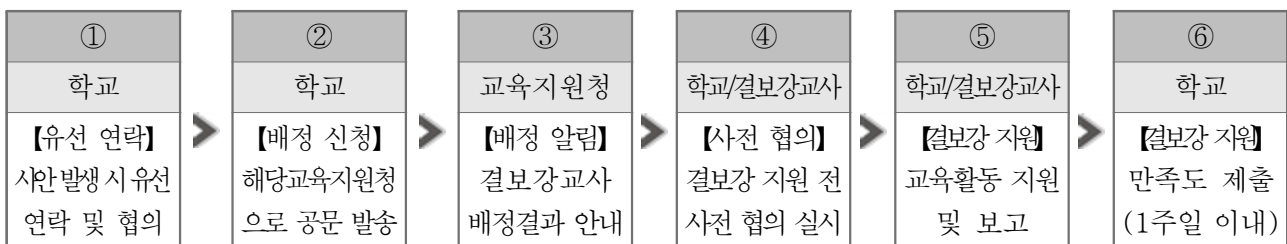
● 목적

- 특수학급 결보강교사를 상시적으로 확보하여 학교현장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도모
- 특수학급 결보강교사 운영을 통하여 수업결손을 예방함으로써 교원,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향상

● 운영기준

- 운영대상학교: 유.초.중.고 특수학급
- 지원내용: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수학여행 등)으로 인한 출장 및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에 따른 특수학급 수업 지원
- 특수학급 결보강교사 지원 기간: 사안별 3일 이내를 원칙으로 운영
(단,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라 운영 일수 및 횟수는 변경 가능)
- 교권침해 피해 교원 사안 발생 시 대상학교 우선 지원

● 신청 절차



※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결보강 지원을 위해 사전 협의 실시

※ 신청절차는 교육지원청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순회학급 운영

● 교육대상

- 중증장애로 인하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가정, 의료기관, 복지시설 거주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

● 운영기준

- 순회학급 편성은 한 학급당 5명 이내로 하고, 무학년제로 편성.운영
- 수업연한: 무상 또는 의무교육 실시 학년도부터 고등학교 과정 종료까지
- 순회교육 수업일수는 해당 학교 출석 일수와 동일하게 적용

 (순회교육 수업일수) 매 학년도 150일 기준으로 각급 학교장이 결정 가능하며, 30일 범위 내에서 학생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감축 가능(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

- 순회학급은 방문교육 이외에 통신교육, 가정교육, 출석교육 및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방문교육: 교사의 방문을 통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교육
- 통신교육: 이메일,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해 과제를 부여하고 확인하는 교육
- 가정교육: 사전계획에 의해 가정에서 학생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학습 과제를 부여하는 교육
- 출석교육: 재적 학교의 수업과 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교육
- 체험교육: 사전계획에 의해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하는 체험교육

- 한 학생당 방문 순회교육 횟수는 주당 2~3회로 하고, 1회 지도 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하며, 기타 재택 과제학습은 스마트러닝 지원 등을 이용하여 추가 지도
- 순회교사 주당 수업시수는 최소 20시간 이상으로 함
- 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순회교육 대상자는 그룹으로 지도할 수 있음
- 특수학교에서 순회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순회교육 지원 여부 결정
-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여비부지급) 처리 후 순회교육 실시

● 순회학급현황

순	지역	급별	학교	학급수
1	창원	특수학교	창원천광학교	5
2	창원	특수학교	경남혜림학교	5
3	진주	특수학교	진주혜광학교	3
4	통영	특수학교	통영잠포학교	2
5	김해	특수학교	김해은혜학교	5
6	양산	특수학교	양산희망학교	6
7	의령	특수학교	의령은광학교	1
8	거창	특수학교	거창나래학교	1
9	밀양	특수학교	밀양아리솔학교	1
10	창원	특수학교	창원동백학교	1
11	거제	특수학교	거제애광학교	4
합계				34

5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가. 전공과 교육 과정

● 목표

- 고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직업적 잠재력 개발 및 사회 적응 능력 신장
- 직업 생활과 관련된 지식 및 직무수행 기능 함양을 통한 성실한 직무 수행
- 직업 세계에 대한 탐색과 경험을 통한 자신의 진로 및 직업 방향 설정
- 지역사회 직무 능력 함양을 통한 직업적 자립 도모

● 전공과 교육과정 성격

- 학교 및 학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생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삶과 얹이 일치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학생의 특성, 학부모의 요구, 교사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나. 전공과 운영

● 운영 연한: 2년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4조 전공과의 설치·운영)

● 운영 전공과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 개별화전환교육(ITP)계획, 현장실습 계획 수립 및 평가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 직무역량제고, 취업 지원 및 추수지도 강화
-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 전공과 교육과정 운영 평가를 통한 개선점 도출 및 차년도 운영 계획 반영

다. 전공과 수익금 관리

● 전공과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수익 발생 시 관리

- 수익금 세입조치 시기 및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한 계획 수립
- 일자(품목)별 관리 대장으로 수익금 관리 및 징수 절차 준수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준」, 「세입업무편람」 참고

[전공과 판매상품 수익 관리대상 (예시)]

○○학교 전공과 판매상품 수익 관리대장

담당		

[illegible]

I

부록

1. 일반현황
2. 연간 주요 일정

1 일반 현황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가 특수학교 현황

[2026. 3. 1. 기준]

학교명	장애별	설립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전체 학급수
			일반 학급	일반 학급	순화· 파견 학급	일반 학급	순화 학급	일반 학급	순화· 파견 학급	일반 학급	
창원천광	지적장애	공립	1	19	2	13	1	12	2	6	56
경남혜림	지적장애	공립	0	17	2	12	1	13	2	8	55
진주혜광	지적장애	공립	0	13	2	13	1	12	1	6	48
통영잠포	지적장애	공립	0	9	1	7	0	8	1	4	30
김해은혜	지적장애	공립	1	23	3	16	1	14	1	6	65
양산희망	지적장애	공립	0	18	5	18	1	12	2	5	61
의령은광	지적장애	공립	0	5	0	4	0	4	1	4	18
거창나래	지적장애	공립	0	7	1	6	0	4	0	4	22
밀양아리솔	지적장애	공립	1	10	0	7	0	6	1	4	29
창원동백	지적장애	사립	2	12	0	7	1	5	0	2	29
거제애광	지적장애	사립	2	11	1	8	2	7	1	2	34
계			7	144	17	111	8	97	12	51	447

나 특수학급 현황

[2026. 3. 1. 기준]

순	지역	학교수	학교급별 특수학급수				
			유	초	중	고	계
1	창원	185	19	162	62	42	285
2	진주	75	10	61	24	14	109
3	통영	29	2	29	11	6	48
4	사천	33	4	23	13	8	48
5	김해	102	16	94	34	23	167
6	밀양	29	3	16	10	8	37
7	거제	58	9	56	19	13	97
8	양산	72	19	67	22	15	123
9	의령	15	1	8	3	3	15
10	함안	27	2	18	6	6	32
11	창녕	17	1	12	5	4	22
12	고성	23	2	16	7	3	28
13	남해	19	1	8	7	5	21
14	하동	21	2	10	7	5	24
15	산청	13	0	8	5	4	17
16	함양	17	1	11	4	4	20
17	거창	13	3	10	4	4	21
18	합천	24	2	14	6	4	26
계		772	97	623	249	171	1,140

유치원

지역	학교수	학급수	설치 학교명(학급수)
창원	17	19	대방초병설유,창원남산유치원,용호유치원,창원진달래유치원(2),토월유치원,중동초병설유,창원숲유치원,무동꿈유치원 -2 (감: 2(무동꿈유치원,상북초병설유))
			양덕솔빛유치원(2),월영초병설유,한사랑유치원,회원초병설유,현동숲유치원
			곰내유치원,진해유치원,경화초병설유,진해중앙초병설유
진주	8	10	예하초병설유,진주누리유치원(2),진주유치원(2),은하수초병설유,신진초병설유,햇살가득유치원,가람별유치원,금성초병설유
통영	2	2	광도유치원,두룡유치원 -1(신설:1, 감: 2(두룡초병설유, 유영초병설유))
사천	3	4	사천유치원(2),선진유치원,삼천포유치원
김해	14	16	계동초병설유,김해구지초병설유,김해내동초병설유,김해울산초병설유,삼계초병설유,삼문초병설유,삼방초병설유,석봉초병설유,우암초병설유,장유유치원(2),주동유치원(2),진영유치원,진영금병초병설유,진영대흥초병설유 +2 (신설: 2)
밀양	3	3	밀양초병설유, 밀양유치원, 예림초병설유 +1 (신설: 1)
거제	6	9	국산초병설유,거제양정초병설유(2),거제용소초병설유,용산유치원(2),장평초병설유,거제유치원(2) -1 (신설: 2, 감: 3(거제유치원, 용산초병설유,신현초병설유))
양산	14	19	가촌초병설유,덕계초병설유,동면유치원(2),물금유치원(2),북정초병설유,사송유치원(2),삼량초병설유,석산초병설유,신양초병설유(2),양산유치원(2),양산초병설유,오봉유치원,중부초병설유,회야초병설유 +2 (증설: 2)
의령	1	1	부림초병설유
함안	1	2	함안유치원(2)
창녕	1	1	남지초병설유 (신설:1, 감: 1(창녕유치원))
고성	1	2	고성유치원(2)
남해	1	1	남해유치원 -1 (감: 1(이동초병설유))
하동	2	2	옥종초병설유,하동유치원
산청	0	0	
함양	1	1	천령유치원
거창	2	3	창남초병설유,거창유치원(2)
합천	1	2	합천유치원(2)
계	78	97	공립 97 1(신설: 6, 증설: 2, 감 7)

초등학교

지역	학교수	학급수	설치 학교명(학급수)
창원	99	162	감계초(2),남양초(2),남정초(2),내동초,대방초(2),대산초,대암초(3),대원초,도계초(2),명곡초(2),명도초(2),명서초(2),무동초(3),반송초(2),봉강초,봉림초(2),북면초(2),사파초(2),사화초(2),삼정자초,상북초(2),성주초(1),소답초(2),신방초,안민초,양곡초(2),운천초(2),용남초(2),용지초(2),용호초(2),용남초(2),유목초,의창초(2),자여초(2),창원남산초(3)창원상남초,창원신월초,창원초(2),창원한들초,토월초(2),평산초,중동초,하천초 +2 (증설: 3, 감: 2(도계초,안민초))
			가고파초(3),가포초,감천초,광려초,교동초,교방초(2),구암초(2),내서초,마산고운초(2),마산신월초,마산중앙초,봉덕초(2),북성초,산호초,삼계초,상일초(2),석전초(2),성호초,안계초(2),양덕초(2),완월초(2),용마초,우산초,월성초,월영초,월포초(2),전안초,중리초,진동초,진전초,팔룡초(2),하북초(2),합성초,합포초,해운초,현동초(3),호계초,회원초(2) (신설 1, 증설: 2, 감: 3(가포초,호계초,회원초))
			경화초(2),대야초,덕산초(3),도천초,동부초(2),안골포초(2),안청초(3),웅동초,웅천초(3),자은초(2),장북초,장천초(2),제황초,진해남산초,진해냉천초(3),진해신항초(2),진해중앙초(2),석동초
진주	44	61	진주교대부설초(국립),가람초(2),가좌초(2),갈전초(2),관봉초,금곡초,금빛초,금산초(2),금성초(2),금호초,남강초(2),내동초,대곡초,도동초,동진초(3),망경초,명석초,무지개초,문산초(2),미천초,반성초,배영초(2),봉곡초,봉래초,봉원초,선학초,수곡초,수정초,신안초,예하초(3),은하수초,이반성초,장재초(2),정촌초(2),주약초,지수초,진성초,진주초(2),집현초,천전초(2),초전초,축석초,충무공초,평거초(2) 2(신설:3, 증설: 2, 감: 3(금산초,남강초,내동초))
통영	17	29	광도초,남포초,두룡초(2),벽방초,사랑초,육지초연화분교,원평초,용남초(2),유영초(3),인평초,제석초(2),죽림초(4),진남초(3),충렬초,충무초,통영초(2),한려초(2) (증설: 1, 감: 1(충무초))
사천	16	23	곤명초,곤양초,남양초,노산초,대성초,동성초(2),문선초,사남초(2),사천초(2),삼성초(2),삼천포초,서포초,수양초(2),용산초(2),용현초,정동초(2) -2(감: 2(대방초,문선초))
김해	49	94	관동초,계동초(2),구봉초(3),구산초(2),김해가야초(2),김해구지초(3),김해내동초,김해대곡초,김해동광초(2),김해모산초(3),김해봉황초(2),김해부곡초,김해삼성초(2),김해신명초(2),김해신안초,김해외동초,김해율산초(3),김해합성초(2),김해활천초(3),내덕초,능동초(3),대동초,대청초(2),덕정초(3),봉명초(2),분성초(2),삼계초(3),삼문초(2),삼방초(2),석봉초(2),수남초(3),신문초,신어초(2),어방초(2),영운초,우암초,월산초,율하초(2),임호초,장유초(2),주석초(2),주촌초(3),진례초,진영금병초,진영대창초(3),진영대흥초(3),진영중앙초(2),한림초,화정초(2) +5 (신설: 3, 증설: 3, 감: 1(김해봉황초))
밀양	11	16	미리벌초(2),밀성초(3),밀양초,밀주초(2),부북초,사포초,산동초,산외초,수산초,예림초(2),무안초(1)

지역	학교수	학급수	설치 학교명(학급수)
거제	34	56	거제고현초, 거제상동초(3), 거제양정초(3), 거제용산초(3), 거제용소초(3), 거제중앙초(2), 거제초, 계룡초(2), 국산초(3), 기성초, 내곡초(2), 능포초, 동부초, 마전초, 사등초, 삼룡초, 송정초, 수월초, 송덕초, 신현초(3), 아주초(2), 양지초, 연초초, 옥포초(2), 외간초, 외포초, 일운초, 장목초, 장승포초, 장평초(3), 제산초(2), 중곡초(2), 진목초(2), 창호초 +2 (증설: 2, 감: 1(능포초))
양산	36	67	가남초(3), 가양초(2), 가촌초(3), 금송초, 금오초, 대운초(2), 덕계초(2), 동면초(2), 동산초(2), 물금초(2), 백동초(2), 범어초(2), 사송초, 삼성초(3), 삼량초(2), 상북초, 서남초, 서창초(2), 석산초(3), 성산초(2), 소토초, 신기초, 신명초(3), 신양초(2), 양산초(2), 양주초(2), 어곡초, 오봉초(3), 용연초, 웅상초(2), 중부초(2), 증산초(2), 천성초(2), 황산초(2), 회야초, 평산초 +3 (증설: 5, 감: 2(덕계초, 삼량초))
의령	8	8	남산초, 대의초, 부림초, 유곡초, 의령초, 지정초, 칠곡초, 화정초
함안	16	18	가야초, 군북초, 대산초, 문암초, 범수초, 산인초, 아라초, 예곡초, 외암초, 월촌초, 유원초, 중앙초(2), 칠서초, 칠원초, 함안초, 호암초(2)
창녕	10	12	길곡초, 남지초, 대합초, 동포초(2), 명덕초, 부곡초, 영산초, 유어초, 이방초, 창녕초(2)
고성	14	16	거류초, 고성초(3), 구만초, 대성초, 대흥초, 동해초, 방산초, 삼산초, 상리초, 율천초, 철성초, 하이초, 하일초, 회화초
남해	8	8	고현초, 남해초, 도마초, 성명초, 이동초, 지족초, 창선초, 해양초 -1(감: 1(해양초))
하동	8	10	갈옥초, 고전초, 공향초, 옥종초, 적량초, 진교초(2), 하동초(2), 화개초 (신설: 1, 감: 1(악양초))
산청	7	8	금서초, 단계초, 단성초, 덕산초, 도산초, 산청초(2), 신안초 -1(감: 1(산청초))
함양	10	11	금반초, 마천초, 병곡초, 서하초, 수동초, 안의초, 위림초, 위성초(2), 지곡초, 함양초 +1 (신설: 1)
거창	6	10	거창초(2), 아림초, 율천초(2), 창남초(2), 창동초, 셋별초(2), 사림)
합천	13	14	가회초, 남정초(2), 대병초, 대양초, 묘산초, 봉산초, 삼가초, 쌍책초, 쌍백초, 야로초, 조계초, 합천초, 합천가야초
계	406	623	국립1, 공립 620, 사립2 +17(신설: 9, 증설: 18, 감: 18)

중학교

지역	학교수	학급수	설치 학교명(학급수)
창원	45	62	감계중,경원중,남산중(2),대방중,도계중(2),명서중(2),반림중(2),반송중,봉곡중(2),사파중(2),삼정자중,안남중,안민중,양곡중(2),웅남중,창덕중,창북중,창원동중,창원중앙중,토월중,팔용중(2),창원대산중(사립) -1 (감: 1(봉림중)) 광려중(2),구산중,구암중(2),내서중,마산동중(2),마산서중,마산여중(1),마산중,양덕여중,양덕중(1),합포중(3),진전중(1),해운중,호계중,마산삼진중(사립) +1 (증설: 2, 감: 1(마산서중)) 동진중,석동중(2),안골포중(2),용원중,웅천중,진해냉천중(2),진해신항중,진해중(2) (신설: 1, 감:1(진해여중))
진주	15	24	경상사대부설중(국립),개양중(2),금곡중,대곡중,명석중,문산중(2),반성중,진명여중(2),진주남중(2),진주봉원중(2),진주여중(2),진주제일중(2),진주중앙중(2),진주중(2),진주동중(사립) +2 (신설: 1, 증설: 1)
통영	7	11	도산중(2),산양중,충무여중,충무중(2),통영중앙중(3),통영중,사랑중(1)
사천	9	13	곤양중,사천여중,사천중(2),삼천포제일중(2),삼천포중앙여중(2),서포중,남양중(사립),삼천포중(사립),웅남중(2,사립)
김해	25	34	경운중(2),관동중,구산중(2),김해대곡중,김해대동중,김해모산중,김해삼계중,김해서중(1),김해여중,김해중,내덕중,내동중,능동중(2),대청중(2),분성중,삼정중(2),수남중(2),신여중,영운중,월산중(2),율하중,임호중(2),진영중(2),활천중,진례중(사립), (신설:1, 감:1,(김해서중))
밀양	8	10	밀양중(3),밀양여중,밀성여중(사립),밀성중(사립),세종중(사립),삼랑진중(사립),밀양동강중(사립),동명중(사립) +1 (신설: 1, 증설: 1, 감1(밀양여중))
거제	12	19	거제고현중(2),거제상문중,거제장평중(2),거제제일중,거제중앙중(2),성포중,수월중(2),신현중,연초중,옥포성지중(2),옥포중(2),지세포중(2) +2 (신설:1, 증설:1)
양산	13	22	금송중,금오중,물금중(3),범어중(2),사송중,삼성중(2),서창중(3),신주중,양산중앙중(3),양주중,웅상여중,웅상중(2),증산중 -2(감: 2(신주중, 웅상중))
의령	3	3	의령중, 신반중, 의령여중(사립)
함안	6	6	함안중,호암중,칠원중(사립),함안여중(사립),군북중(사립),함성중(사립) -2(감:2(함안중,칠원중))
창녕	3	5	영산중(2),창녕중(2),창녕여중(사립) -1 (감:1(영산중))
고성	7	7	고성동중,고성여중,고성중,동해중,소가야중,영천중,회화중 -1 (감:1(소가야중))
남해	6	7	꽃내중,남해여중,남해중(2),이동중(사립),창선중(사립),해성중(사립) 1(신설:1)
하동	6	7	금남중,악양중,진교중(2),하동중앙중,한다사중,하동중(사립) 1(신설:1)
산청	3	5	단성중(2),덕산중,산청중(2) -1(감:1(신등중))
함양	4	4	함양중,함양여중,수동중,안의중(사립)
거창	3	4	거창여중,거창중,셋별중(2,사립)
합천	6	6	삼가중,초계중,합천중,대병중(사립),합천여중(사립),해인중(사립)
계	181	249	국립1, 공립220, 사립28 (신설: 7, 증: 5, 감: 12)

고등학교

지역	학교수	학급수	설치 학교명(학급수)
창원	24	42	창원남산고(2),창원대암고(2),창원명곡고(2),창원명지여고(2),창원봉림고,창원사파고,창원북면고(2),창원신월고(2),창원용호고(2),창원토월고,경상고(2,사립),경남관광고(2,사립) <u>+2 (증설: 2)</u>
			마산고(2),마산구암고(2),마산내서여고,마산여고(2),마산용마고(2),합포고(2),마산제일고(2,사립),마산삼진고(사립) <u>(증설:1, 감:1(마산내서여고))</u>
			웅천고,진해고(3),진해여고,진해용원고(2)
진주	8	14	경상사대부고(국립),명신고,진양고(2),진주고(3),진주여고(2),진주중앙고(2),진주제일여고(2,사립),진주외국어고(사립) <u>+2 (신설: 1, 증설: 1)</u>
통영	3	6	충무고(2),통영고(3),통영여고 <u>+1 (증설: 1)</u>
사천	5	8	경남자영고(3)삼천포중앙고(2),사천여고(사립),삼천포고(사립),용남고(사립)
김해	14	23	김해가야고(2),김해경원고(2),김해고(1),김해대청고(3),김해생명과학고(3),김해수남고,김해여고,김해영운고,김해분성고(2),김해분성여고,김해삼방고(1),장유고(2),진영고(2),진영제일고 <u>+1(증설:2, 감:1 (김해분성여고))</u>
밀양	7	8	밀양고(2),밀양여고,밀성고(사립),밀성제일고(사립),밀양동명고(사립),삼랑진고(사립)세종고(사립) <u>+1 (신설: 1)</u>
거제	6	13	거제상문고,거제옥포고(4),거제제일고(2),거제중앙고(3),경남산업고(2),연초고 <u>+2 (신설: 1, 증설: 1)</u>
양산	9	15	물금고(2),범어고,사송고,서창고(2),양산고,양산남부고(2),양산인공지능고,웅상고(3),증산고(2) <u>+2 (신설: 1, 증설: 1)</u>
의령	3	3	신반정보고,의령고,의령여고(사립)
함안	4	6	함안고,명덕고(사립),칠원고(3,사립),군북고(사립) <u>(증설:1, 감:1(함안고))</u>
창녕	3	4	영산고,창녕슈퍼텍고(2),창녕여고(사립) <u>(증설:1, 감:1(영산고))</u>
고성	1	3	고성중앙고(3)
남해	4	5	남해정보산업고(2),남해제일고,남해고(사립),창선고(사립)
하동	5	5	금남고,옥종고,진교고,하동고,하동여고(사립)
산청	3	4	단성고,덕산고,산청고(2) <u>(증설:1, 감:1(신등고))</u>
함양	2	4	안의고,함양제일고(3) <u>+1 (증설: 1)</u>
거창	2	4	아림고(2),대성일고(2,사립)
합천	4	4	삼가고,야로고,합천고,합천여고(사립)
소계	107	171	국립1, 공립140, 사립30 <u>+12(신설: 4, 증설: 13, 감: 5)</u>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2026. 3. 1. 기준]

순	특수지원센터명 (지역 표기)	순회교사				일반직	치료사	스페셜 코디네이터	합계	거점지원센터 운영
		유	초	중	계					
1	경남특수교육지원센터		1	1	2				2	행동중재 시·청각장애
2	창원	3	5	6	14	1	8	1	24	시·청각장애 장애영아 전환교육지원
3	마산	1	5	5	11		4		15	
4	진해	1	3	2	6		4		10	
5	진주	2	5	5	12		4	1	17	전환교육지원
6	통영	2	4	3	9		3		12	
7	사천	1	2	3	6		4	1	11	전환교육지원
8	김해	2	6	4	12	1	5	1	19	시·청각장애 장애영아 전환교육지원
9	밀양	1	2	3	6		3		9	
10	거제	1	5	5	11		4	1	16	장애영아 전환교육지원
11	양산	2	5	5	12		7	1	20	전환교육지원
12	의령	0	1	1	2		2		4	
13	함안	1	3	1	5		2	1	8	시·청각장애 전환교육지원
14	창녕	1	3	2	6		2		8	
15	고성	1	3	2	6		3		9	
16	남해	1	2	2	5		2		7	
17	하동	1	2	2	5		2		7	
18	산청	1	2	2	5		3		8	
19	함양	1	2	1	4		3		7	
20	거창	1	2	3	6		4	1	11	전환교육지원
21	합천	1	2	2	5		2		7	
합계		25	65	60	150	2	71	8	231	

2 연간 주요 일정(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포함)

월	내용
1월	• 2026 특수학교 및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지원인력 수요조사 • 2026 초등돌봄교실 및 거점통합돌봄센터(늘봄)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알림 • 2026 학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교육과정 승인 • 2026 신·증설 특수학교(급)환경개선 및 교재교구비 지원계획 알림 • 2026 특수교육대상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운영계획 알림 • 2026 동계 교원 및 특수교육실무원 연수 운영 • 2026 행동중재 전문교사 양성[기초 이론]과정 운영 • 2026 동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스페셜코디네이터 연수 • 2026. 동계 특수통학차량탑승보호자 및 특수통학차량운전원 역량 강화 연수
2월	• 2026 경남특수교육 운영계획 설명회 • 2026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협의회 • 2026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처리 지침 안내 •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유아 이음교육 안내 • 2026학년도 특수학교 돌봄·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안내 • 2026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계획 안내 및 위탁교육 신청 • 2026 특수교육실무원 운영계획 알림 • 2026 1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2026 1분기 치료지원비 청구 • 2026 2/4분기 특기적성교육비(교내강좌) 청구 • 2026 1/4분기 특기적성교육비(일반학교 방과후 수강자) 청구 • 2026년 체험 및 수련활동 운영계획 및 급식 신청(매월, 해당 학교 및 기관) • 장애인의 날 유공교원 표창 대상자 추천
3월	• 특수학교(급) 순회학급 운영비 지원계획 알림 •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특기적성교육비 계획 알림 •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계획 알림 • 2026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계획 수립 • 2026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계획 알림 •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계획 안내(체육분야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 2026학년도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지원 강화 시범사업 계획 안내 •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위촉 결과 보고 • 특수교육지원센터장 협의회

월	내용
4월	• 2026 특수교육통계조사 • 2026 2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2026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지원 알림
5월	• 2026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경남, `26.5.12.~5.15.) • 2026 가족 캠프 개최 •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현황 조사 • 2026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조사 실시(주관: 광주광역시교육청)
6월	• 2026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작성 자료 제출 • 2026 전국 장애영유아교육 워크숍 실시(6월 중) • 2026 안전·진로·공학·찾아가는 체험, 장애공감 체험 실시(6~12월 중) • 2026 경남장애학생 정보경진 대회 및 e스포츠 대회(경남예선) • 2026 여름방학 희망나눔학교 운영계획 알림 • 2026 3/4분기 특기적성교육비(교내강좌) 청구 • 2026 2/4분기 특기적성교육비(일반학교 방과후 수강자) 청구
7월	• 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 설명회 • 2026 여름방학 희망나눔학교 운영 • 2026 3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2026 여름방학 중 방과후 과정 참여 특수교육대상학생(유아) 지원 알림 • 2026 2분기 치료지원비 청구
8월	• 2026 하계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특수교육실무원, 치료사) 연수 • 2026 베트남 특수교육 지원 사업단 단기 파견 • 2026 희망나눔학교 운영 기관 공모 • 2026 행동중재 전문교사 양성[심화]과정 운영 • 특수학교(급)종일반강사 역량강화 연수 • 2026. 하계 특수통학차량탑승보호자 및 특수통학차량운전원 역량 강화 연수 • 특수교육 교원 배움중심 수업 국외 탐방 연수(뉴질랜드, 17명)
9월	• 2026 3분기 치료지원비 청구 • 2026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본선) • 2026 4/4분기 특기적성교육비(교내강좌) 청구 • 2026 3/4분기 특기적성교육비(일반학교 방과후 수강자) 청구 • 특수교육 관련 교육부장관 표창계획 알림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장애인학대,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및 결과 보고('26. 9월 이후)

월	내용
10月	• 2026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제(제11회 슈퍼스타 YOU!) • 2026 4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상급학교 진학 포함) • 2026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제주, 발달장애) • 2026 경상남도교육감기 장애학생체육대회 • 2026 특수교육 수업나눔한마당 • 2026 특수교육활동 유공 교육감 표창 계획 알림
11月	• 2027학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입학전형 • 2026 겨울방학 희망나눔학교 운영 계획 알림 • 2027학년도 체험 및 수련활동 운영 계획 알림 및 신청 접수 • 2026 경남특수교육 만족도 조사 • 2026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 조사 • 특수교육실무원 정원 배치 조정계획 안내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성과 나눔 공유회 • 통합교육지원단 성과나눔회
12月	• 2027학년도 특수학교 및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개설 수요조사 • 경상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권역별 연수 • 2026 겨울방학 희망나눔학교 운영 • 2027학년도 체험 및 수련 활동 선정 결과 알림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치료지원 운영 만족도 조사 • 일반학교 특수학급 편성 및 신증설 요구자료 제출 • 2026 5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현황 조사 알림('26.12.) • 2026 4분기 치료지원비 청구 •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경력자 점검 결과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보고 • 2026 4/4분기 특기적성교육비(일반학교 방과후 수강자) 청구 • 2027 1/4분기 특기적성교육비(교내강좌) 청구

※ 위 일정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추후 공문으로 안내

2026년 경남특수교육 운영계획(안)

총괄

김정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

기획

이민애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복희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함영희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장
이정림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

집필

심은정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조혜진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이은영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최진성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임유정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천인현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이가연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주무관
김미주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주무관
김상현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한경화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윤정원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김미숙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김희은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배상휘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송성희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주무관